

정부간행물 등록번호

11-1541000-000013-01

# 국제수산물실 업무편람

2008

농림수산물자료실



0015561



농림수산물식품부

# 일류 농림수산식품

돈버는 농어업 · 살맛나는 농어촌

---

긍정적 현장농정

---

신뢰받는 농식품산업

---

희망찬 농어촌

---

창조적 농어업인

---

소통하는 조직문화

---

농어업에 희망의 밑물시대를 열자



# 국제수산물실 업무편람

2008

농림수산식품부



# - 목 차 -

<b>I. 국제수산물실 일반현황</b> .....	<b>1</b>
1. 조직 및 정원 .....	3
2. 과별 세부기능 .....	4
3. '08년도 예산 .....	5
4. 소관법령 현황 .....	6
<b>II. 국제수산정책 추진 방향</b> .....	<b>7</b>
1. 추진현황 .....	9
2. 비전 및 전략 .....	10
3. 중점 추진과제 .....	11
4. 주요 과제 .....	18
5. 현안 사항 .....	22
<b>III. 과별 업무추진 현황</b> .....	<b>25</b>
<b>국제기구과</b> .....	<b>27</b>
1. 국제기구에서의 수산협력 추진 .....	29
2. 국제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추진 .....	31
3.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추진 .....	33
<b>《참고》</b>	
《1-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국제행동계획(IPOA-IUU) .....	53
《1- 2》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개요 .....	6
《1- 3》 OECD 수산물위원회 개요 .....	7
《1- 4》 FAO 수산물관련 위원회 개요 .....	8
《1- 5》 APEC 수산물실무그룹 개요 .....	8
《1-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4
《1- 7》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현황 .....	4
《1- 8》 '08년도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 참석 계획 .....	34
《1- 9》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 개요 .....	4
《1-10》 어업협정 체결 및 입어현황 .....	5
《1-11》 연안국과의 인사 교류 주요 현황('05-'07) .....	16

**수산통상과 ..... 63**

1. FTA 수산분야 협상 추진(총괄) .....	6
2. 한-EU FTA .....	76
3. 한-캐나다 FTA .....	96
4. 한-인도 CEPA .....	17
5. 한-아세안 FTA .....	27
6. 한-멕시코 FTA .....	37
7.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	47
8. 한미FTA 대비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강구 .....	76
9. WTO/DDA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	78
10.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	81

**《참고》**

《2- 1》 FTA 협상 동향(총괄) .....	33
《2- 2》 한-중 수산물 수출입 현황 .....	58
《2- 3》 한-EU 수산물 수출입 현황 .....	68
《2- 4》 한-인도 수산물 수출입 현황 .....	78
《2- 5》 한-멕시코 수산물 수출입 현황 .....	88
《2- 6》 한-캐나다 수산물 수출입 현황 .....	98
《2- 7》 수산업·어촌 종합대책(2005) .....	109
《2- 8》 수산진흥종합대책 .....	9
《2- 9》 한·미 FTA 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 .....	29
《2-10》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주요내용 .....	39
《2-11》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 .....	49
《2-12》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	69
《2-13》 수산분야 FTA '08~'17 예산(안) 현황 .....	79
《2-14》 도입 가능 수산 보전제 .....	89
《2-15》 우선도입 수산보전제 .....	99
《2-16》 어업협정 체결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황 .....	10
《2-17》 자유무역협정 체결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11
《2-18》 주요 민감품목 .....	12
《2-19》 WTO-DDA/FTA 협상 동향 .....	13

**원양산업과 ..... 105**

1. 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 구축 .....	107
2. 수산분야 해외 진출 활성화 .....	108
3. 원양어업 관련회사 제도도입 추진 .....	110
4. 해외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	111
5. 노후 원양어선 중고선 도입 지원 .....	113
6. 원양어선 등 연료비 절감시스템 개발 추진 .....	114
7. 해외 신어장 개발지원 및 자원조사 .....	115
8. 러시아수역 명태 등 어획쿼터 확보 추진 .....	117
9. 한·러간 불법수산물 교역방지 협정체결 추진 .....	119
10.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	121
11.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 관리 .....	124

**《참고》**

《3- 1》 원양참치어업 생산·수출현황 .....	18
《3- 2》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황 .....	19
《3- 3》 해외 수산펀드 조성의 타당성 .....	11
《3- 4》 해외 진출 수요(설문) 조사 결과 .....	12
《3- 5》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조업 실적 .....	13
《3- 6》 다랑어의 분류 및 형태적 특징 .....	14
《3- 7》 연도별 조정관세율 현황 .....	17
《3- 8》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	18
《3- 9》 원양어업 생산 추이 .....	11
《3-10》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	12
《3-11》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	13
《3-12》 원양업체 현황 .....	14
《3-13》 원양어업 업종별·톤급별 현황 .....	16
《3-14》 원양어업 선령별·업종별 현황 .....	17
《3-15》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	18
《3-16》 원양업체별 선박 보유 현황 .....	19
《3-17》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	10
《3-18》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	11
《3-19》 수산물 표준품명 및 필수규격(45개 품목) .....	152
《3-20》 한국원양산업협회회원사 현황 .....	14



**어업교섭과** ..... 165

1. 남북수산협력 활성화 ..... 167
2. 한·일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 169
3.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 171
4. 한·중·일 어업인 자율적 민간어업협력 강화 ..... 173

**《참고》**

- 《4-1》 북한산 수산물 반입현황 ..... 14
- 《4-2》 우리 수산물 대북 반출 현황 ..... 15
- 《4-3》 한·일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 16
- 《4-4》 한·중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 17
- 《4-5》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 18
- 《4-6》 중국어선 조업위반 단속 현황 ..... 19
- 《4-7》 일본EEZ 입어 한국어선 입어규모 ..... 11
- 《4-8》 한국EEZ 입어 일본어선 입어규모 ..... 12
- 《4-9》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 피납현황 ..... 13
- 《4-10》 한·중 양국 EEZ내 조업현황 ..... 15
- 《4-11》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16
- 《4-12》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18
- 《4-1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19
- 《4-1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22

<b>IV. 주요 수산통계</b>	<b>213</b>
1. 어업별 생산량(총괄)	215
2. 품종별 생산량(총괄)	216
3. 품종별 세부 생산량(일반해면)	217
4. 품종별 천해양식 생산량	224
5. 시·도별 해면어업 생산량	229
6. 시·도별 양식어업 생산량	231
7. 품종별 내수면어업 생산량	233
8.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235
9.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239
10.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240
11. 수산물 수입 현황	241
12.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244
13. 주요 품종별 중국 수입 현황	245
14. 주요 품종별 일본 수출 현황	246
<b>V. 소관법령</b>	<b>247</b>
1. 원양산업발전법	249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262
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70
<b>VI. 수역도</b>	<b>28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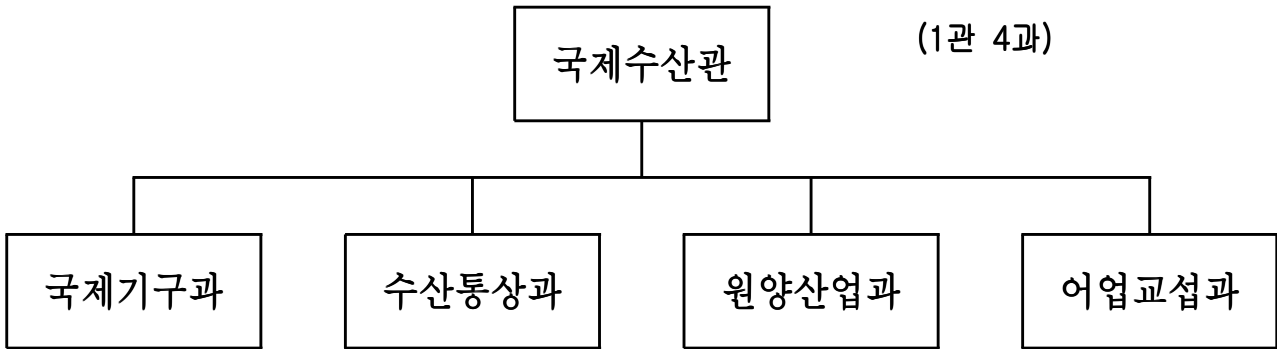
# I. 일반현황



# 일 반 현 황

## 1. 조직 및 정원

### □ 조 직



### □ 정 원

(단위 : 명)

과 별	구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 지도직	기능직
계	정원	43	1		4	3	16	12	2	1	4
	현원	43	1	2	2	1	18	10	3	2	4
	증감	-		2	△2	△2	2	△2	1	1	
국제기구과	정원	12	1		1	1	4	2	1	1	1
	현원	12	1	1			5	1	1	2	1
수산통상과	정원	11	-		1	1	4	3	1	-	1
	현원	11			1		5	2	2		1
원양산업과	정원	11	-		1	1	4	4	-	-	1
	현원	11			1	1	4	4			1
어업교섭과	정원	9	-		1		4	3		-	1
	현원	9		1			4	3			1

## 2. 과별 세부기능

구 분	기 능
국제기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총괄</li> <li>◦ 수산관련 국제법규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주재공무원의 업무관련 사항</li> <li>◦ 외국정보자료의 수집·전파에 관한 사항</li> <li>◦ 어업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을 제외)</li> <li>◦ 어업협정의 실무협상에 관한 사항(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을 제외)</li> <li>◦ 고래 등 희귀동식물 및 고도 회유성 어종에 관한 업무</li> <li>◦ 기타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li> </ul>
수산통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DDA의 수산분야 협상 및 협정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의 수산분야 협상 및 협정에 관한 사항</li> <li>◦ WTO/DDA 및 자유무역협정 협상자문회의에 관한 사항</li> <li>◦ 수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수산물 무역자유화와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li> <li>◦ 대외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li> </ul>
원양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양산업발전법령 및 제도운영</li> <li>◦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li> <li>◦ 원양어업 진흥 및 정책자금의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원양산업협회지원육성에 관한 사항</li> <li>◦ 원양어업의 합자투자에 관한 사항</li> <li>◦ 해외어장개발에 관한 사항</li> <li>◦ 한·러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원양어업 생산계획의 수립 및 통계에 관한 사항</li> <li>◦ 원양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li> <li>◦ 원양어업의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항</li> <li>◦ 수산물수출입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수산물의 수출진흥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li> <li>◦ 수산물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수산물관세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li> </ul>
어업교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분야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li> <li>◦ 남북수산실무회담 개최 및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li> <li>◦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한·일, 한·중 실무협상 및 공동위원회에 관한 사항</li> <li>◦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획쿼터 배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협상국간 상호 EEZ내 조업허가 등 입어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인접 연안국과의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에 관한 사항</li> </ul>

### 3. '08년도 예산

####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비 고
합 계(A+B+C)	151,833	170,942	19,109	
기본사업비(A)	315	340	25	
o 국제협력관실 기본경비(총액) (직접수행, 7011-207)	77	109	32	
o 국제협력관실 기본경비(비총액) (직접수행, 7011-257)	238	231	△7	
주요사업비(B)	9,185	12,232	3,047	
일 반 회 계	6,832	5,918	△914	
o 어업협정이행(직접,간접수행, 3132-300)	409	508	99	
o 연안국협력사업(직접수행, 3531-301)	662	-	△662	농특이관
o WTO/DDA 협상대응 (직접수행 3532-300)	720	820	100	
o 원양어업신어장개발(직접수행 3533-300)	2,046	-	△2,046	농특이관
o 원양어업경영자금이자보전 (직접수행 3532-544)	2,995	4,590	1,595	
농 특 회 계	2,353	6,314	3,961	
o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직접, 보조 3540-300)	1,903	2,354	451	
o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지자체) (보조 3540-301)	450	500	50	
o 원양어업활성화 (직접수행, 3542-300)	-	2,576	2,576	
o 연안국협력사업(직접수행, 3531-301)	-	884	884	
수산물발전기금(C)	142,333	158,370	16,037	
o 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융자, 3465-307)	5,733	2,400	△3,333	
o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융자, 3765-301)	136,600	136,600	-	
o 수산물 공매납입금부과징수 (직접수행, 보조, 8076-301)	-	150	150	
o 관리회사제도 도입(융자, 3466-300)	-	5,000	5,000	한미FTA 대책
o 원양어업설비현대화(융자, 3466-301)	-	1,000	1,000	“
o 활어수출확대를위한 특수차량등 구입지원 (보조, 3466-303)	-	120	120	“
o 소득보전직불금(보조, 3466-300)	-	5,100	5,100	“
o 폐업지원금(보조, 3467-301)	-	8,000	8,000	“

#### 4. 소관법령 현황

##### 법 률

- 원양산업발전법

##### 시행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고시(개정중)

- 국제수산기구의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 원양어선표지크기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
- 원양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 원양어획물반입신고조사확인에관한요령
- 원양어업선용품무환반출확인사무취급요령
- 남방참다랑어수출입확인요령
- 황다랭이수입확인요령
- 황새치수출입확인요령
- 합작및공동수산물관세감면추천요령



## Ⅱ. 국제수산정책 추진 방향



# 국제수산정책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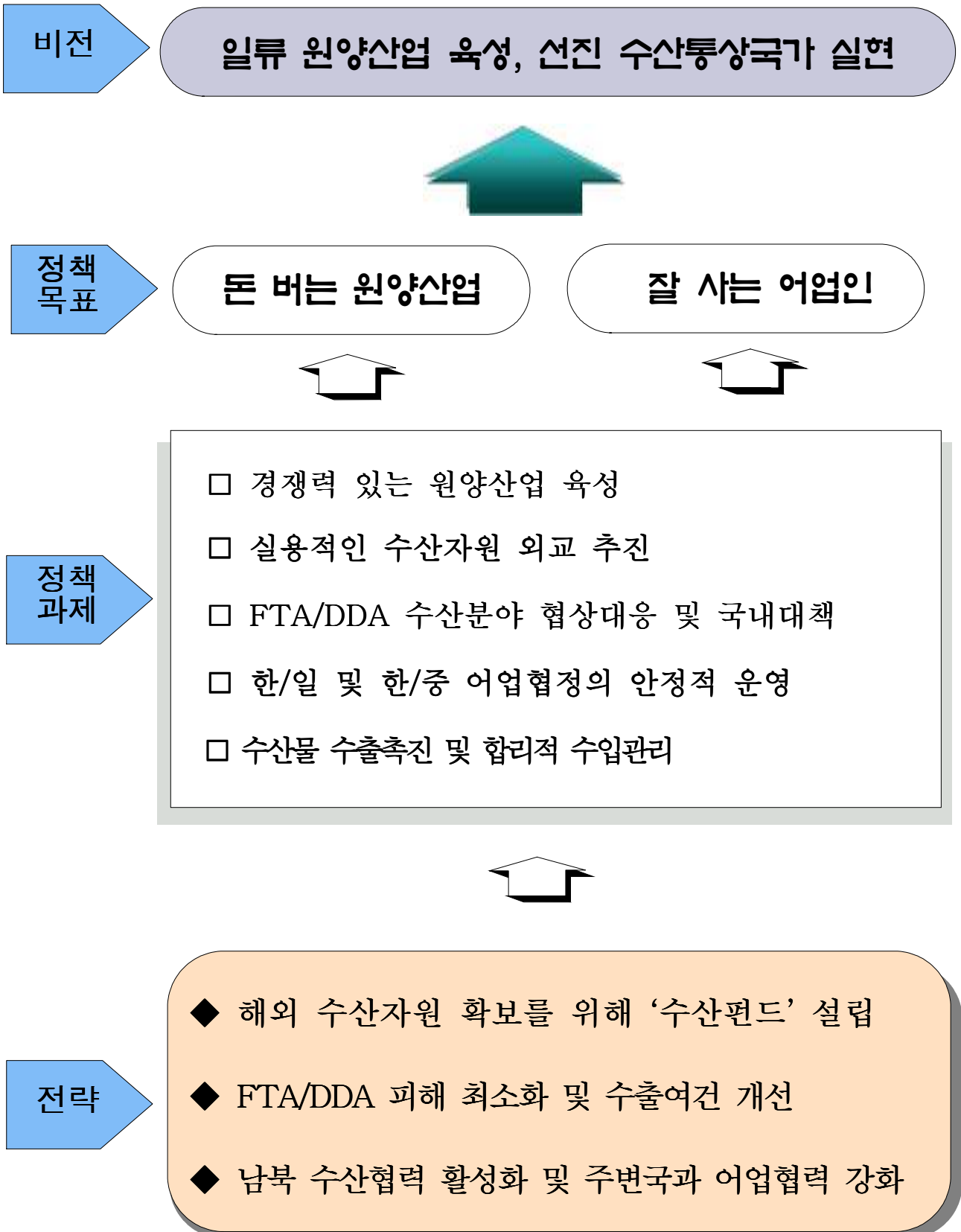
## 1. 추진현황

---

- 적극적인 수산외교로 해외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확보
  -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국제적인 수산자원의 관리 강화로 인해 연안국 수역 및 공해 수역에서의 원활한 조업에 애로
  - 향후 연안국의 자원보호정책과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공해 조업 규제는 더욱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
  
- '07년부터 원양산업은 생산량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 어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
  - 생산량(만톤) : ('96) 72 → ('00) 65 → ('05) 56 → ('07) 71
  - 수출액(백만불) : ('96) 531 → ('00) 535 → ('05) 410 → ('07) 470
  
- 한-미 FTA,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등 시장개방 가속화
  - 수산물에 관세가 높고 보조금도 많아 수세적 입장
  - 수산물 관세가 인하되고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축소/폐지 될 경우 어업인 경영여건 악화 우려
  
- 남북정상선언('07)을 계기로 정체상태에 있는 남북수산협력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의한 불확실성 상존
  - 남북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 후속조치 마련 계획

## 2. 비전 및 전략



### 3. 중점 추진과제

#### 가 경쟁력있는 원양산업 육성

- ◇ 단순생산 중심의 원양어업을 복합 원양산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 제고
  - 해외에서의 양식·가공·유통 등 사업영역의 다각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 ◇ 5년단위의 원양산업발전계획 마련을 통해 원양산업기반 구축

#### 현황 및 평가

- 원양어업은 명태 등 국민 대중성 어류의 지속적·안정적 공급 및 수출효자산업으로서의 중요한 기능 수행
  - 명태 등 국민 대중성 어류 전체 공급 중 원양산 비중 90% 이상
    - \* 원양산 비중 : 명태 99.9%, 민어 94.5%, 꽁치 90% 등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공해상 조업규제강화 및 후발 주자인 중국, 대만의 저비용구조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음
  - \* 110개사 중 1~2척의 어선보유업체 74개사(67%)
  - \* 조업어선 387척중 21년이상 노후선 264척(68%)
  - \* 어선 척수 : ('90) 810(최고) → ('07) 387척(감 53%)

## 향후 추진계획

### □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원양산업 육성

○ 「해외수산 펀드」를 조성(5천억원~1조원),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보관시설(냉동창고)과 유통망이 열악한 태평양 도서국 등의 특성을 활용한 양식·가공·유통업 진출

\* 해외수산펀드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08.5~10)

○ 원양산업협회내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를 구축, 해외투자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주요 연안국의 교민을 명예 해양수산관으로 위촉

### □ 영세한 원양선사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력 있는 업종에 대한 원양어업관련회사 운영 지원으로 돈버는 원양어업 육성기반 마련

- 한·미 FTA 발효 등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 여부 검토

\* 원양어업관련회사 : 원양선사가 어획한 수산물을 수집, 가공·판매 등을 전담

○ 500톤급 참치선까지 보급이 가능한 유류비 절감시스템 추가 개발('08)

\* 1차 시스템 개발효과 : 200-300톤급 기준 1척당 연간 2억원 절감

### □ 국제적인 조업규제 강화, 연안국 자원 자국화 정책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에 대응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 등 지속 추진

○ 연안국규제에 대비한 대체어장, 틈새어장, 기존어장 재개발 추진

□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지원을 통한 원양어업 생산성 향상 추진

○ 원양어선 건조단가 부담으로 인한 신조대체 사업 부진에 따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적 저 선령 중고선 도입 추진('08~)

\* 참치어선의 노후화로 업체 생산성 저하 및 대만 등과 경쟁력약화에 따라 '03년부터 신조대체 사업 추진 중

○ 한미 FTA 발효시 1개사 1척을 대상으로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여건을 감안, 점차적으로 확대추진여부 검토

□ 원양산 수산물과 수입산 수산물의 차별화를 통한 원양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 확대

○ 원양산과 저질 수입수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원양어획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원산지표시규정 개정('09)

\* 원산지 표시 규정 개정 : (현행) 수입산, 원양산, 국내산 → (개정) 수입산, 국내산

	2008	2009	2010~2012
실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수산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08.5~10)</li> <li>·관련 회사 지원 (한·미 FTA발효시)</li> <li>·원양산업발전계획 마련 ('08.하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양수산물 원산지표시 제개정('09~)</li> <li>·연안국 협력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수산펀드 프로젝트 투자단 구성('09.6) 및 해외수산펀드 조성 '10.1)</li> <li>·연안국 협력강화</li> </ul>



## 나 | 실용적 수산자원 외교 추진

- ◇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강화
- 공해 어업자원 확보를 위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활동 강화
- 외국 EEZ 어업자원의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자원보유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 현황 및 평가

- 주요 상업어종의 자원상태 악화에 따라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공해조업 규제 강화 추세
  - UN, FAO(유엔 식량농업기구)를 중심으로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쏘대양의 어업자원관리 촉구
    - 저층어업 규제 및 승선검색,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관리 강화 등에 대한 국제수산규범 마련 중
  -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해 경계왕래어종 및 고도회유성 어종을 관리토록 하고 있는 유엔공해어업협정 가입('08.3.2)
  -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진출하고 있는 모든 지역수산관리기구에 가입(7개) 및 가입추진(2개), 설립협상 참여 중(2개)
-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자원관리 강화
  - 전세계 152개 연안국 중 125개(82%) 연안국 EEZ 선포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어획쿼터 확보 등을 위한 협상력 강화
  - 국별 어획쿼터 논의 및 신설기구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원양업계의 이익 보호
    - ※ '08년도 어획쿼터 확보량(WCPFC 등 5개 지역기구) : 39,347톤
    - ※ 신설 기구(2개) :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북서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 원양자원 보호 기여금 국제기구 기여를 통한 책임있는 어업 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강화(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5개년간 20억)
  - 매년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수산자원외교 강화
- UN, FAO 등에서 논의되는 수산규범 제·개정예 적극 참여
  - 참치연승 및 저층트롤 조업규제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업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 강구
- 연안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사업 확대
  - 태평양 도서국(키리바시, 솔로몬 등) 및 아프리카 연안국(기니, 기네비소 등)에 수산업 관련 물자 및 인프라 무상 지원
    - ('08) 4 → ('09) 8 → ('10) 10 → ('11) 12 → ('12) 14억원

	2008	2009	2010 ~ 2012
실천계획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 국내 개최(12월)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설립회의 국내 개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국내개최
	·국제기구회의 참석(30회)	·북서태평양 저층어업 관리 기구회의 국내 개최	·국제회의참석(120회)
	·상어·바다새 어획능력 국내행동계획 수립(10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연례회의 국내 개최	·WCPFC 표지방류사업 지원(12억원)
	·OECD 수산위원회 부의장직 진출 추진(부경대 이상고 교수)	·국제회의참석(40회)	·연안국 물자지원(36억원)
	·연안국 물자지원(4억원)	·WCPFC 표지방류사업 지원(3억원)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가입
		·OECD와의 협력사업 추진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 가입

다

## FTA/WTO 수산분야 협상대응 및 국내대책

- ◇ 관세인하 및 수산보조금 축소 등 국제협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되, 수출 여건 개선의 기회로도 활용
- ◇ 직접적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FTA/WTO를 수산업이 거듭나는 계기로 적극 활용

### 현황 및 평가

- WTO/DDA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및 수산물 관세감축 논의
  - 면세유 등 민감 보조금 금지시 국내 어업에 큰 충격 예상
  - 수산물 관세 대폭 감축 예상(평균 18% → 5.5%)
-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중
  - 향후 일본과의 협상 재개 및 중국과의 협상 개시도 가능
    - 일본 및 중국과의 FTA는 국내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력대응 필요
- 한미 FTA 수산부문 국내대책 수립('07.6.28)
  - 직접피해 보전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향후 10년간 7,262억원)
  - 한-미 FTA 국회비준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WTO/DDA 협상으로 인한 충격 최소화
  - 금지대상 수산보조금의 범위 최소화
    - 특히 면세유 규제 최소화에 전력
  - 수산물 관세 인하 최소화
    - 주요 수산물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감축을 축소
  
- FTA 수산분야 협상에서 국익 최대화
  - 고등어, 갈치, 꽃게 등 우리측 민감품목 최대한 보호
  - 김, 굴, 참치 등 유망품목의 수출여건 개선
  
- 한-미 FTA 국내대책 추진
  - FTA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등 직접피해 지원계획 수립
  - 국회 비준동의 대비 추가대책(안) 마련

	2008	2009	2010~2012
실천계획	·WTO/DDA 협상 대응 ·한-EU, 한-인도, 한-캐나다 FTA 타결 ·한-멕시코, 한-GCC FTA 협상 대응 ·한-미 FTA 국내대책 추진 및 관련법령 개정 ·WTO/FTA 국내홍보	·WTO/DDA 협상 이행 ·한-일, 한-중 등 신규 FTA 논의 대응 ·FTA 국내대책 집행/관리 ·수산보전제 확대 협의	·WTO/DDA 협상 이행 ·한-일, 한-중 등 신규 FTA 논의 대응 ·FTA 국내대책 집행/관리 ·수산보전제 확대 협의

## 4. 주요 과제

### 가 |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 ◇ 일측의 규제강화 대상 업종에 대한 우선 감척 실시 및 일본 수역 조업의존도 점진적 축소로 동등한 협상여건 조성
- ◇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조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입어규모 감축 및 조업조건 강화

### 현황 및 평가

-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이후 일본 EEZ내 지속적인 조업을 통해 한정된 우리 어장에서의 경쟁조업 완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우리측이 어획량 1.6배, 조업척수 2.6배로 양호
    - 총 조업척수('99~'07) : 한국 7,269척 / 일본 2,817척
    - 총 어획량('99~'07) : 한국 228,498톤 / 일본 146,954톤
    - \* 일측은 자국 어업인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우리어선에 대해 매년 조업 규제 강화 추세
- 한·중 어업협정 체결이후 중국어선의 입어규모 감축을 통해 우리 EEZ수역의 자원관리 기여
  - 협정체결 전 우리수역에 입어했던 중국어선 약 12천척이 현재 1,859척으로 대폭 감소
    - 협정전 어획량 : 한국 1,900척, 89천톤 / 중국 12,000척, 441천톤
    - '07말현재 어획량 : 한국 198척, 3천톤 / 중국 1,917척, 5천톤

## 향후 추진계획

### □ 2009년도 입어협상 대응전략 수립

- '99년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이후 '09년도 입어협상이 최대 고비로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규제업종에 대한 감척사업 확대, 불법 조업어선에 대한 허가 배제 및 할당량 최소화, 민간간 협의를 통한 연승어구규제 협의 추진 등
- '09년도 한·중 협상시 “양국어선의 실질적 입어균형 및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도입”에 전력
  - 어업공동위 실무회의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여 양국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

### □ 입어협상 제고를 위해 일측의 규제강화 업종에 대한 우선 감척 실시('07~'12)

- 연승어업의 경우 일본 EEZ 조업의존도가 80%이상이며, 매년 일측의 조업규제 강화로 경영애로 및 어업인들의 불만 가중
  - '12년까지 총 495척의 52%인 257척 감척

	2008	2009	2010~2012
실천계획	·'09년도 입어협상 전략 수립 ·한일/한중 어업공동 위원회 개최	·한일/한중 어업협정평가 및 미래대응전략 연구용역 ('09~'10) ·'10년도 입어협상 전략 수립 ·한일/한중 어업공동 위원회 개최	·'11~12년도 입어협상 전략 수립 ·한일/한중 어업공동 위원회 개최 ·동북아 수산자원관리기구 설립 추진

## 나

## 수산물 수출촉진 및 합리적 수입관리

- ◇ 수산물 수출 진흥을 통한 잘사는 수산업·어촌 실현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 ◇ 국제적인 교역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수산물 수입관리를 위하여 제도보완 및 수산물 민감성 반영을 위한 관세정책 수립

### 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국내외 수출환경 및 여건 변화로 인하여 '00년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 수출액(백만\$) : ('00) 1,504→('02) 1,160→('04) 1,279→('05) 1,193→('06) 1,089→('07) 1,225
-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수산물 수출액 점유율 급감으로 '07기준 총 수출액(317,489백만\$)의 0.3%에 불과
  - \* 점유율(%) : ('81) 4.4→('90) 2.3→('01) 0.8→('02) 0.7→('03) 0.6→('05) 0.4→('06) 0.3→ ('07) 0.3
- 수산물 신흥 수출국의 일본시장 잠식으로 우리 수산물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중국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
- 수산물 수입은 '92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01년을 기점으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국 전환
  - WTO/FTA 추진 등에 따라 저가 수산물 수입급증 및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저가로 수입 신고하여 국내 시장질서 교란증가
    - \* 수입액(백만\$) : ('02) 1,184→('02) 1,160→('04) 2,261→('05) 2,384→('07) 3,056

## 향후 추진계획

### □ 수산물 가공·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 수산물 물류·무역기능의 ONE-STOP 처리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 \* 생산, 포장까지 일관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용 패류 대외경쟁력 제고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Road Show 등 별도의 마케팅 활동과 병행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 □ 건전한 수입질서 확립으로 국내 시장 및 소비자 보호

-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근절 추진 및 어류부산물 수입관련 위생 기준 마련, 양자간 약정체결로 국민 위생 확보 및 업계 보호
  - \* 특히, 부산물의 다량수입으로 원양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메로 및 참치에 대하여 우선 기준설정 추진
- 관세율할당 및 탄력관세 운영으로 국내 수산업 경쟁력 확보
  - '09년도 조정·할당관세 운영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기재부 실무 협의 추진

	2008	2009	2010~2012
실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기본계획 수립</li> <li>- 국제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12회) 및 로드쇼 개최개최</li> <li>- 수산물 탄력관세 운영</li> <li>-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류물류센터 2개소 완공</li> <li>-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li> <li>- 수산물 탄력관세 운영</li> <li>-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조사</li> <li>- 어류부산물 위생기준 식품공전 반영 (은민대구, 메로, 참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완공</li> <li>- 수산물 탄력관세 운영</li> <li>-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조사</li> <li>- 어류부산물 위생기준 식품공전 반영 (기타 어류)</li> </ul>



## 5. 현안 사항

---

### 가 |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

---

#### 현황 및 문제점

- WTO/DDA 협상에서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규제 가시화
  - 수산보조금은 수산자원 남획의 원인이므로 금지하자는 것이 WT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큰 흐름(한, 일, 대만 등 반대)
  - 수산보조금이 논의되는 규범(Rules) 협상그룹 의장이 대부분의 수산보조금(면세유, 영어자금, 어선건조, 어항건설 등)을 금지 대상으로 분류한 의장안 발표
    - 우리나라의 면세유 지원은 약 8천억원('07년 기준)으로 전체 수산보조금 1조7천억원의 47%
    - 면세유 지원 중단시 대부분 어선 출어 곤란 예상
- \* 일본은 유가 중 세금비중(40%)이 우리나라(65%)에 비해 낮아 충격이 적음

#### 향후 추진계획

- 수산보조금 규제에 따른 충격 최소화
  - '08년 상반기: WTO/DDA 협상에서 일본, 대만 등과 공조하여 보조금 금지 범위 최소화 노력
  - '08년 하반기: WTO/DDA 협상 타결에 대비, 보조금 금지 또는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 나

##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중국어선 입어배제를 위해 우리어선이 북측 동해수역에 입어 대가를 지불하고 진출하는 방안 추진
  - \* 북측 동해수역 중국어선 조업실적 :('04) 100척 → ('05) 939 → ('06) 582 → ('07) 497
  
- 증가하는 남북 수산물 교역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해 북한의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 \* 남북수산물 교역액 :('04) 70백만\$ → ('05) 83백만 → ('06) 101백만 → ('07) 125백만
  
- 남북 수산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회담 일정 미확정으로 주요 협력사업 추진 지연
  - \* '08년 중 우리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추진 및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양식협력사업 현지실태 조사 합의('07. 남북총리회담/농수산협력분과위)

### 향후 추진계획

- 남측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 추진
  - 북측 동해수역 입어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 현지실태 조사('08. 상반기)
  - 입어수역 설정 및 조업조건, 추진일정 협의('08.)
  - 남북 동해어로 합의서 체결 등('08.)



### Ⅲ. 과별 업무추진 현황



# 국제기구과

1.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수산협력 추진 ..... 29
2. 국제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추진 ..... 31
3.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추진 ..... 33

## 《참고》

- 《1-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국제행동계획(IPOA-IUU) ... 35
- 《1- 2》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개요 ..... 36
- 《1- 3》 OECD 수산위원회 개요 ..... 37
- 《1- 4》 FAO 수산관련 위원회 개요 ..... 38
- 《1- 5》 APEC 수산실무그룹 개요 ..... 39
- 《1-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40
- 《1- 7》 지역수산관리기구 현황 ..... 42
- 《1- 8》 '08년도 지역수산관리기구 회의 참석 계획 ..... 34
- 《1- 9》 지역수산관리기구별 개요 ..... 44
- 《1-10》 어업협정 체결 및 입어현황 ..... 45
- 《1-11》 연안국과의 인사 교류 주요 현황('05-'07) ..... 1· 6



## 가. 현 황

- 공해조업 규제 및 조업국의 합리적 자원 이용의 의무 강화 추세
  - 공해와 일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왕래성(대구, 명태 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참치류 등) 보존 관리를 위한 공해상 승선검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공해어업협정 채택('95.8.4) 및 발효('01.12.11)
  - UN 및 FAO 등에서의 저층어업 등 국제수산 규범 이행의무 강화
    - 저층어업 규제 및 승선검색, 불법·비보고·비규제(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 관리 강화 등에 대한 국제수산규범 마련 중
  -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연승어업시 발생하는 상어, 바다거북, 바다새의 혼획(bycatch)에 대한 규제 강화

## 나. 추진실적

- 유엔공해어업협정 가입
  - 당초 원양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준에 반대('96.6)하였으나, 국제규범에 따른 합법조업이 국제적 대세인 점을 감안하여 비준찬성으로 의견 조율
  - 협약가입안의 주요내용이 기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07.8)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비준없이 가입서 기탁('08.2.1) 및 발효('08.3.2)
- 국제수산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 참여 및 강화추세에 대한 대응
  -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결의안 채택('05.11.29)
    - 해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저층트롤어업의 즉각적 모라토리움을 주장하는 내용의 수정 수산결의안 논의('06년 제61차 유엔총회)
      - ※ 조업국의 반대로 지역수산기구에서 예방적·생태적 접근방법에 합치된 이행조치를 채택·이행('08.12.31까지)하고 제64차 총회시('09) 재검토



- 제25차 FAO 수산위원회('03.3)에서 저층트롤 조업으로 인한 저층 생태계 파괴와 어류자원 고갈에 대한 국제적 우려 제기
  - '07년 9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를 위한 국제 지침 초안 수립 및 '08.2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문구 조정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국제수산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어업이익 보호 및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라. '08 추진계획

- 국제수산규범 논의 적극 참여 및 국제규범의 국내이행 조치 강구
  - UN, FAO에서 논의 중인 참치연승 및 저층트롤 조업규제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
    - 제63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채택 비공식 회의(10, 11월) 및 IUU근절을 위한 항만국 통제와 저층어업 규제를 위한 기술자문회의(6,8월)에 적극 대응
  - 책임있는 조업국 이행을 위한 상어(IPOA-Shark), 바다새(IPOA-Seabirds) 및 어획능력관리(IPOA-Capacity) 국가행동계획 이행 수립
- 기타 국제수산기구에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제수산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 APEC 및 OECD 등 국제수산관련 제반 노력에 적극 협력
    - 제19차 APEC 수산실무그룹회의(4.14-18) 및 제101차 OECD 수산위원회(4.28-30), 제30차 APFIC 총회 참석(8월중), 제23차 CITES 동물위원회 참석(4.19-24) 등
    - 제101차 OECD 수산위원회에 부의장으로 출마(부경대 이상고 교수)

## 국제 I - 2 국제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추진

### 가. 현 황

-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공해를 포함한 원양어업관리의 주체로 기능
  - 유엔공해어업협정의 비준('08. 2월)으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가입을 하여야만 동 기구 관리수역에서 조업가능
  - 우리나라는 10개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가입, 2개 기구가입 추진중, 2개 신설기구 협상 참여중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관리수역에서 어획량('07): 340천톤(원양생산량 711의 48%)
-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한 원양어업규제 강화추세
  - 자원고갈에 따른 어획능력관리 강화
  -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공해상 승선검색제도 등 각종 어업관리제도 강화
  - 해산 등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저층어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저층어업관리를 위한 협약 협상중 : 북서태평양, 남태평양

### 나. 추진실적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협상을 통해 어획쿼타 확보('08)

	총 계	WCPFC	IATTC	ICCAT	CCSBT	NAFO
쿼터량(톤)	39,347	21,449	12,576	2,930	1,140	1,252

\* 중서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대서양참치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위원회(CCSB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북서대서양수산물위원회(NAFO)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 참석 활동('07) : 28회

○ 우리나라 개최 : 2회

-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 신설회의(2월, 부산)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어업단속회의(3월, 부산)

○ 국제회의 참석 : 23회

#### 다. 증장기 정책방향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 적극 대응으로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 도모

○ 관련 국제회의 대응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민간 전문가의 적극 활용 등

○ 우리 관심의제 뿐만 아니라 공통의제에 대하여도 기여함으로써 국위선양

□ 국제회의 국내유치를 통한 수산외교 강화 및 지역경제 기여

○ 매년 1개 이상의 국제수산회의 유치

#### 라. '08 추진계획

□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12월, 부산)

○ 25개 회원국 등 약 350명 참석예정

○ 중서부태평양수역은 우리나라 참치 어획량의 90%이상('06. 27만톤)을 어획하는 최대어장으로 2004년 설립이래 각종 어업관리제도 수립 중

○ 어업제도 설립과정에서 주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우리입장 반영토록 노력

□ 여타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입장 반영

○ 남태평양지역관리기구 설립회의 등 23회

## 가. 현 황

- 주요연안국의 자원관리 강화로 주요 어장의 축소
  - 주요연안국들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자원관리를 강화하며 어업협정 등 체결요구
  - 연안개발도상국은 자국수역에 입어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요구
- 해외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 나. 추진실적

- 연안국 경제협력(물자공여) 사업 추진
  - 감척어선 무상지원('02년) : 5개국 27척(약81억원 지원 효과)
  - 나우루 스쿨버스 지원('05년) : 버스 및 학용품, 버스 정비 등
  - 주요 연안국 물자공여 사업('06년 이후)
    - 예산 규모 : ('06) 246백만원 → ('07) 350백만원
    - 지원 대상 : ('06) 5개국 1국제수산기구 → ('07) 5개국
    - 지원 물품 :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비상발전기, 무선통신기 등
- 연안국 수산관련 주요인사 초청사업
  - 기니 수산장관 초청 등('05)
  - 우루과이 항만청장, 솔로몬 수산장관 초청 등('06)
  - 알제리 수산어로자원부 장관 초청 및 수산협력MOU 체결('07)
-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 약정
  - 어업협정체결(13개국) : 러시아, 일본, 중국, 솔로몬 등
  - 수산협력약정 체결(4개국) : 노르웨이, 베트남, 아르헨티나, 알제리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연안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어선의 안정적 입어 유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연안국 경제협력(물자공여) 예산 반영계획
    - ('07)350백만원 → ('08) 400 → ('12) 1,400
  - 고위인사 및 전문가 초청·교류를 확대하여 우호적인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우호세력화
  - 중동 및 중남미 국가와의 수산협력을 위한 협정(약정) 체결 추진

## 라. '08 추진계획

- 연안국 경제협력(물자공여) 사업
  - 지원규모 : 400백만원
  - 지원대상 국가
    - 태평양 도서국(3개국 / 총 2억 5천만 원)과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2개국 / 총 1억 5천만 원) 중에서 선정
  - 지원물품 : 세부 품목 및 수량은 수원국과 협의 후 결정
    - ※ 세부 품목(안): 차량, 사무용품, 통신장비, 안정장비 등
- 연안국 수산관련 인사 초청
  - 우리어선의 입어협상을 계기로 태평양 도서국 수산장관 초청 (5~9월중)
- 수산협력 약정체결 추진
  - 한·인도네시아 수산협력 양해각서 재 체결 추진
  - 중남미 국가(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와 수산협력약정 체결 협의

## 《 참고 1-1 》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국제행동계획(IPOA-IUU)**

#### 가. IUU 개념

-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해상의 불법어업규제를 목적

※ IPOA-IUU(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 나. IUU 논의 배경 및 경과

- 지속가능한 자원보존 및 관리에 역행하는 모든 활동, 즉 불법어업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제기
- '01. 3월 FAO 제24차 수산위원회에서 「책임수산업 규범」을 근거로 IPOA-IUU 채택(각 회원국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
- 현재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EU 등 11개 국가(기구)에서 행동계획(NPOA) 수립완료(우리나라 NPOA-IUU 수립 : '05. 2월)

#### 다. 법적 성격(강제성 여부)

- IUU 국가행동계획은 국가가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여 시행하는 자발적 계획으로 강제성 없음(비강행규범)

#### 라. 주요 내용

- 모든 국가의 책임, 기국의 책임, 연안국의 책임, 항구국 조치, 시장조치,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등의 각 영역별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규정

#### 마. 국내의 IUU 어업형태

- 원양어업 : 최근 2-3년내 IUU어업으로 보고된 경우 없음
- 연근해 어업
  -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과 같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법으로 조업하는 무허가어업과 허가받은 어선이 어법을 변경하여 조업하는 업종위반, 허가이외의 장소에서 조업하는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이 있음

#### 바. 향후 추진계획

- NPOA-IUU 이행사항 점검 및 미비점 개선('08)
- NPOA-IUU 검토보고서 제출('09) : 보고서 수립후 4년마다 검토를 의무화

## 《 참고 1-2 》

###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개요

#### 가. 개요

- 상기 2개의 국제행동계획(IPOA)은 1999년 2월 FAO 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은 아니나,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작용. 각국은 이 국제행동계획에 따라 바닷새 및 상어보호 관련 국내행동계획(NPOA; National Plan of Action)을 수립하여 국내법에 수용하여야 함

※ 연승어업에 의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 감소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IPOA-SEABIRD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reducing incidental catch of seabirds in longline fisheries)

※ 상어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SHARK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harks)

#### 나. 주요 내용

- IPOA-SHARKS : 상어의 보존과 관리, 장기간 지속적 이용 보장 모든 국가의 상어 관리 참여, 예방적 접근 등
- IPOA-SEABIRDS : 연승어업으로 인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 감소 노력, 포획완화조치, 국제협력, 국내이행 조치 마련 등

#### 다. 추진 경과

- 2006. 5. 24 ~ 2006. 11. 23(6개월) :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 방안 연구

#### 라. 향후계획

- 2008. 5-6월 : 관련 기관 및 실국 의견 수렴
- 2008. 10월 : NPOA-SHARKS, NPOA-SEABIRDS 수립 및 FAO 제출

## 《 참고 1-3 》

### OECD 수산위원회 개요

#### 가. 명 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원회
  - OECD COFI(Committee for Fisheries)
    -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세계 주요선진 30개국으로 구성되어,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협력기구

#### 나. 설립연혁

- 1961. 09. 30. OECD 설립과 동시 분과 위원회로 설립
  - ※ 우리나라는 1994. 10. 27 수산위원회 옵서버로 최초 참가한 이래 '96년 OECD 가입 후 동시에 가입

#### 다. 회원국

- 28개국
  - 30개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2개국 제외
  - 옵서버 : 아르헨티나, 러시아, 태국, 대만, FAO 등

#### 라. 주요기능

- 회원국간 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 각 회원국의 수산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외국과의 협정체결현황 등 제출
- 국제 수산물교역자유화에 대한 분석틀 제공 등 연구지원
- 수산자원관리체제에 대한 분석
- 수산분야 통계·지표 작성
  - ※ 동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FAO 등 국제수산계에 이를 적극 권고함으로써 세계수산의 새로운 질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음

#### 라. 우리나라 활동사항

- 우리 나라의 수산정책동향을 매2년마다 OECD에 보고
- 각종 수산회의 참석, 국제수산 규범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 참고 1-4 》

### FAO 수산관련 위원회 개요

#### 가. FAO 수산위원회

- 정식명칭 : FAO Committee on Fisheries
- 설립 : 1965년(제13차 FAO Conference)
- 설립목적 :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통해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
- 주요기능
  - 2년 마다 회의 개최('75년까지 년 1회)
  - 수산관련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최근 2년간 FAO의 수산 및 양식분야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 논의
  - 전 세계 수산업의 현황과약 및 대응책 강구
  - FAO 사무총장 및 UN총회의 위임사항 수행
  - 산하에 수산물교역·양식소위원회 운영
- 회의장소 : 이태리 로마 FAO 본부

#### 나. FAO 양식소위원회

- 정식명칭 : FAO COFI Sub-Committee on Aquaculture
- 설립배경 및 목적
  - '01년 제24차 FAO COFI에서 회원국 대부분이 찬성하여 설립
  - 양식업의 관리체계 등 제반 현안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
- 회의일정 : 2년 주기를 원칙

## 《 참고 1-5 》

### APEC 수산실무그룹 개요

#### 가. 개 요

-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을 목표로 1991년 SOM에 의해 창설
  - ※ SOM(Senior's Officers' Meeting) :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협의기관으로 APEC 산하 4개의 위원회와 실무그룹 등의 논의사항을 검토하여 정상 및 각료들에게 보고·건의하고, 정상·각료회의의 결정사항을 이행함

#### 나. 설립목적

- 수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과 서식지 보전
- 수산자원관리 문제 해결
- 수산물 품질 및 안전 강화
- 수산분야 무역 및 투자 자유화

#### 다. 활동내역

- '02년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 서울해양선언' 후속 이행 조치
  - 해양수산자원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
  -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 해양자원관리 문제에 관한 논의 및 관리법 개선
  - 수산식품 품질과 안전을 포함한 어획 후 과정 개선
  -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촉진을 위한 사업
- '05년 제2차 APEC 해양장관회의 발리행동계획' 후속 이행 조치
  - 해양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해양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

## 《 참고 1-6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 1. 협약개요

##### 가. 목 적

-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
- 야생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

##### 나. 채택 및 발효경위

- 1972. 6월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회의개최 결정
- 1973. 3월 워싱턴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전권회의 개최, 협약채택
- 1975. 7월 발 효 (81개국)

##### 다. 가입현황

- '08. 4월 현재 172개국 가입
- 우리나라는 '93. 7. 9 협약에 가입하여 '93. 10. 7일 협약 발효

##### 라. CITES 구성

- 당사국총회 : 2년마다 개최, 전체 회원국이 모여 투표에 의해 협약 및 부속서를 개정하고 협약의 이행을 위한 결정문과 결의문을 채택함
- 상임위원회 : 6대주(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대표로 구성, 협약의 이행, 사무국 예산관리 및 총회위임 사항
- 동·식물위원회 :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된 6대주 대표와 교체대표로 구성되며,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에서 Observer로 참여
-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 기술적 지원, 교육훈련세미나 구성, 협약의 이행 상황 모니터링, 협약의 이행관련 사항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연구, 연례 보고서 작성, 당사국총회 및 각 위원회의 개최준비, 협약의 이행에 관한 권한 등의 업무를 수행
- TRAFFIC, UNEP-WCMC, IUCN
  - CITES 각 위원회에 Observer로 참여중인 대표적인 환경단체

## 2. 협약내용

### 가. 규제내용과 주요대상 동·식물

구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부속서 분류 기준	멸종위기에 처한 중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 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 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 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 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 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 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지정한 종
규 제 내 용	상업목적의 국제거 래는 금지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 거래 가능
주 요 대 상 종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등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염인삼 등	바다코끼리(카나다), 북방살모 사(인도) 등

## 3. 부속서주요 수산생물 등재 현황

### 가. 주요수산생물 등재(우리나라에 분포하거나 양식하는 종만 한정함)

수산생물명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우리나라 관련 종
고래류	21종	전종	-	- 향고래, 상괭이, 귀신고래, 밍크고래, 보리고래, 브라이드고래, 대왕고래, 참고래, 흑등고래(9종) 부속서 I
상어류	-	3종 (고래상어, 돌묵상어, 백상아리)	-	- 백상아리 식용으로 일부 수입 - 모로·청·악·꼬리·노랑상어 등이 원양어선에서 부수어획되고 있음
철갑상어류	2종 (단비, 발틱)	30종	-	- 양식종(시베리아, 스텔렛), 부속서 II
어류	7종	33종	-	- 우리나라 비서식
실고기목 (해마류)	-	<i>Hippocampus</i> 전종	-	- 일부 종 우리나라 서식
이매패류	26종	5종	-	- 우리나라 비서식
산호류	-	푸른산호과, 관산호과, 각산호목, 돌산호목 전종	-	- 일부 종 우리나라 서식
히드라충류	-	의공산호과, 의산호과 전종	-	- 일부 종 우리나라 서식

《 참고 1-7 》

**지역수산관리기구 현황**

구분	기구명	회원국	주요현안
참치관리 기구 (5개)	전미열대참치위원회 (IATTC)	일본 등 15개국	다랑어 어획능력 감축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EU 등 42개국	해상전채 등 MCS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일본 등 5개국	전자 어획증명제도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 (IOTC)	인도 등 23개국	어획쿼타 설정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중국 등 25개국	어획능력관리, 옵서버, IUU
비참치 관리기구 (5개)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캐나다 등 14개국	미조업, 협약개정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CAMLR)	호주 등 24개국	옵서버, IUU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 (NPAFC)	일본 등 5개국	미조업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 보전관리협약(CCBSP)	일본 등 6개국	미조업, 시험조업문제
	국제포경위원회(IWC)	일본 등 77개국	미조업
가입검토 필요기구 (2개)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EC, 나미비아 등 4개국	가입여부, 우리 어선의 IUU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미 발효	가입여부
신설중인 지역기구 (2개)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 (SPRFMO)	호주 등 25개국	설립협약안 협상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 구(NWPBFO)	미국 등 4개국	설립협정안 협상

《 참고 1-8 》

**‘08년도 지역수산관리기구 회의 참석 계획**

연번	회 의 명	시기	장소
1	북태평양소하성어족 위원회 (NPAFC) EECM회의	2.27-29 (3일)	캐나다 밴쿠버
2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특별회의	3.5-7 (3일)	미국 라호야
3	IWC 장래에 관한 회기간 회의	3.6-8 (3일)	영국
4	제5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설립 정부간 회의	3.10-14 (5일)	에콰도르
5	제4차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 설립 정부간 회의	4월 중 (5일)	러시아
6	국제포경위원회(IWC) 비공식회의	4월 중 (5일)	동경
7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지역오퍼저버프로그램 (ROP) 작업반 회의	5월 중 (3일)	미정
8	제12차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연례회의	5.26-30 (5일)	세이셸
9	남인도양수산협약(SIOFA)	6. 2-4 (3일)	세이셸
10	제77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6.16-27 (12일)	파나마
11	제60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	6.17-27 (11일)	칠레 산티아고
12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4차 과학위원회 회의	8.11-22 (12일)	파푸아 뉴기니
13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4차 북방위원회 회의	9.9-11 (3일)	일본 동경
14	제6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설립 정부간 회의	9월 중 (5일)	미정

15	제13차 중부베링해명태보존협약(CBSPC) 회의	9월중 (4일)	러시아
16	제30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 (NAFO)연례회의	9.22-26 (5일)	캐나다 다트머스
17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4차 기술이행위원회 회의	9.25-30 (6일)	마이크로네시아
18	제15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	10.14-17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19	제27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10.20-31 (12일)	호주 호바트
20	제5차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 설립 정부간 회의	10월 중 (5일)	미정
21	남동대서양수산위원회(SEAFO) 제5차 연례회의	10.6-9 (4일)	나미비아
22	제16차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 연례회의	11.17-21 (5일)	미국 시애틀
23	제16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특별회의	11.17-24 (8일)	EC
2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5차 회의	12.8-12 (5일)	한국

《 참고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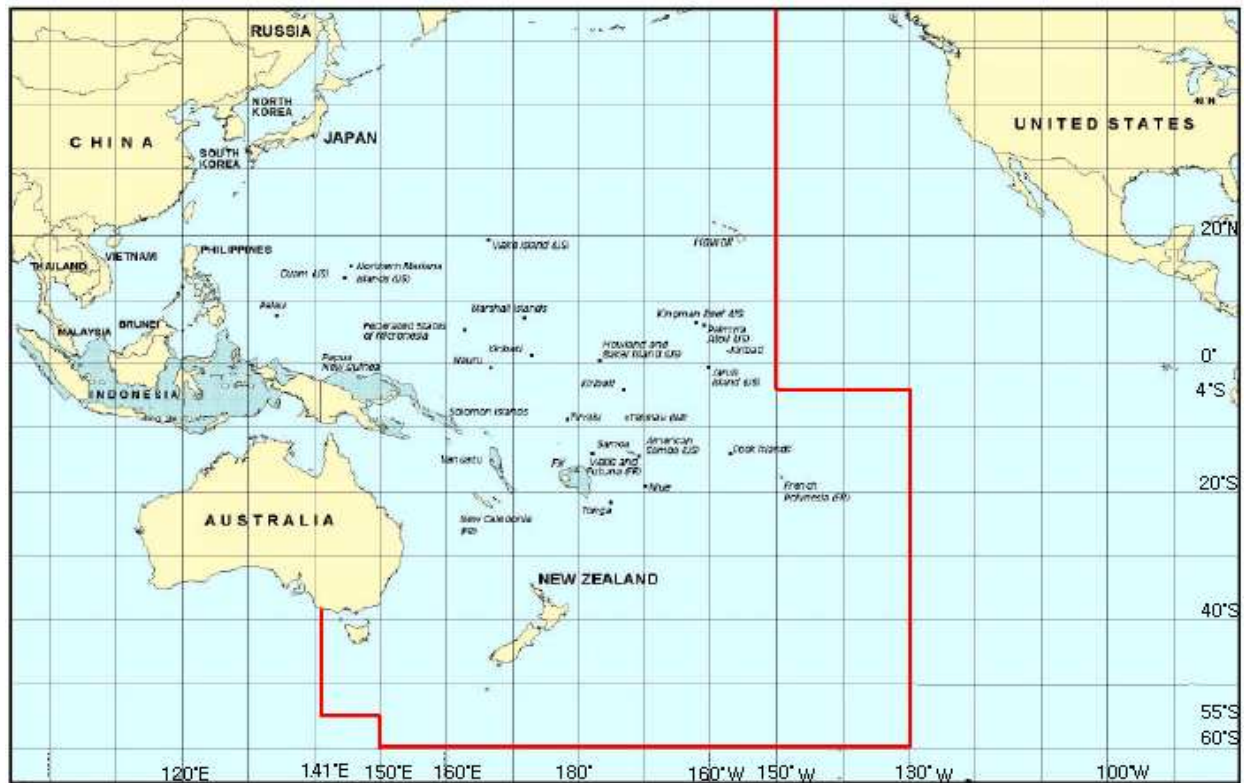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 개요

**중서부태평양양수산위원회**  
(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04. 6. 19.(04. 11. 25)
  - 목 적 :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
  - 사무국 :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 회원국 : 호주, 일본, 캐나다, 대만 등 25개국
- ※ 2007년도 어획실적 : 285,938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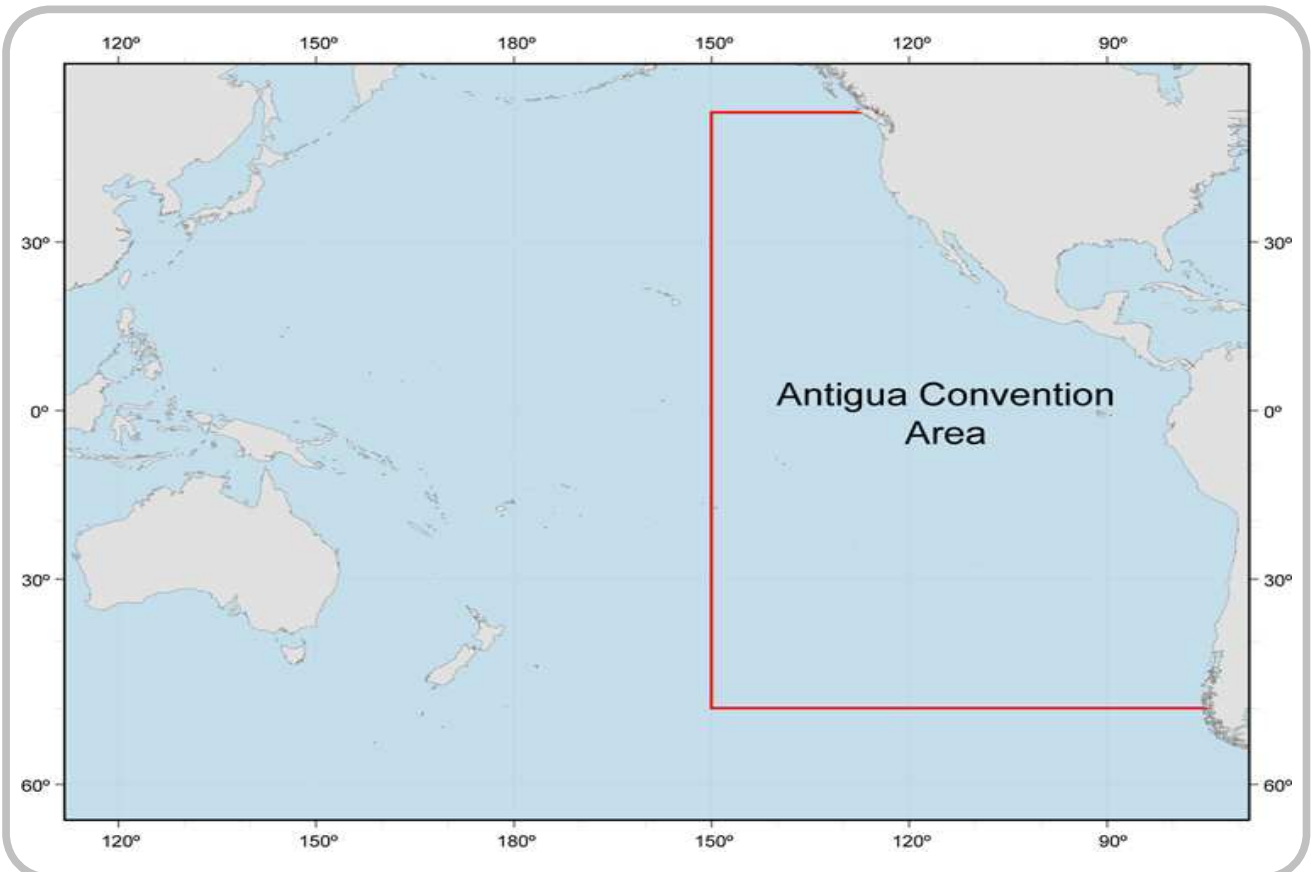
# 전미열대참치위원회

(IATTC :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50. 3. 3.( '05. 12. 13)
  - 목 적 : 동부태평양 수역 참치자원관리 및 돌고래 관리기능 병행
  - 사무국 : 미국 LA - La Jolla
  - 회원국 : 한국, 미국, 일본, 멕시코 등 15개국
- ※ 2007년도 어획실적 : 5,611톤

##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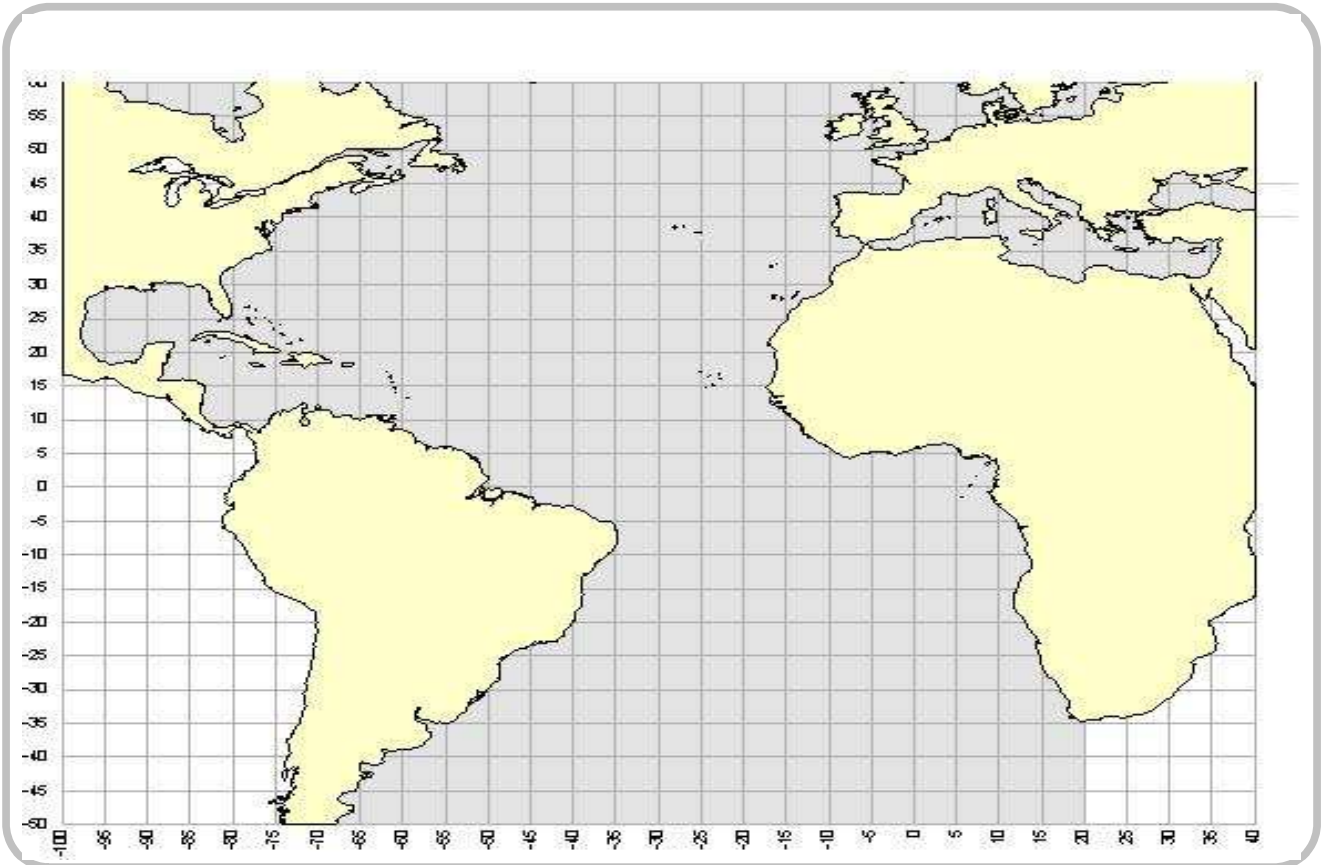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69. 3 ('70. 8)
  - 목 적 : 대서양 참치 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사무국 : 스페인 마드리드
  - 회원국 : 미국, 일본, 중국, EC 등 43개국
- ※ 2007년도 어획실적 : 3,437톤

##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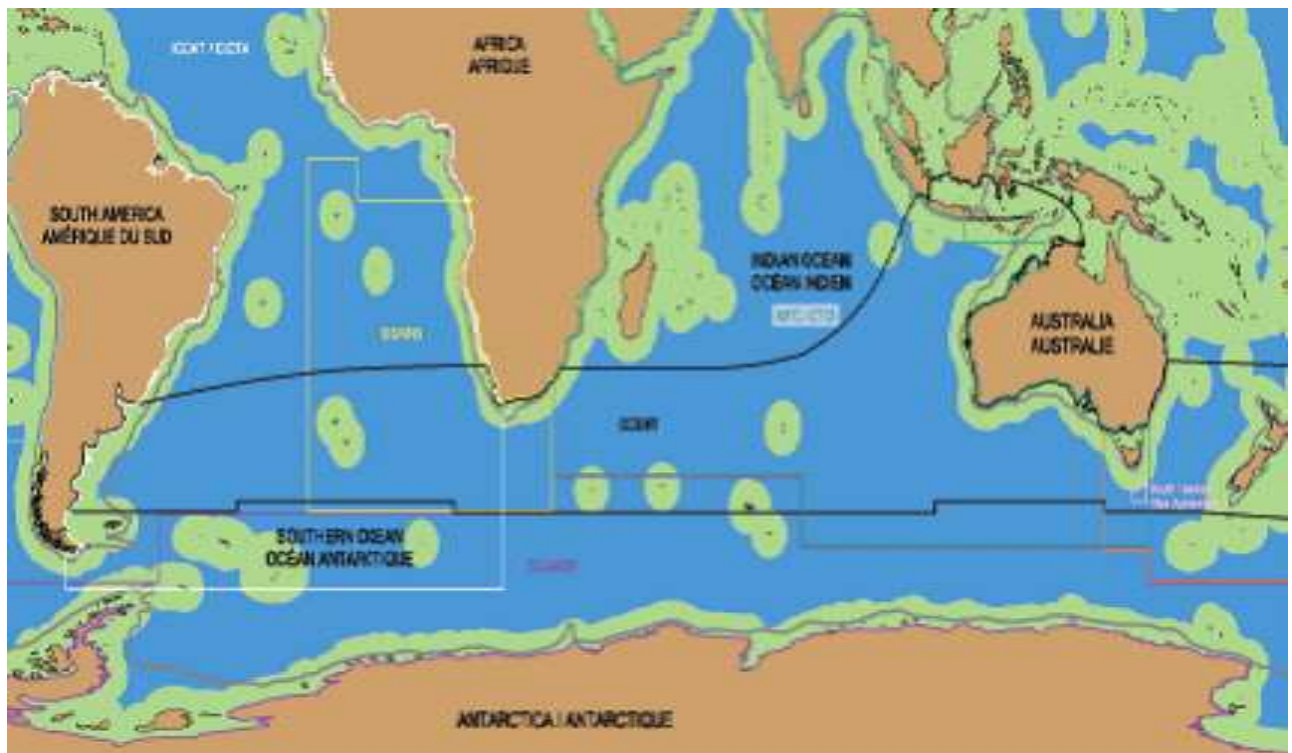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94. 5. ('01. 10. 17.)
  - 목 적 :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사무국 : 호주 캔버라
  - 회원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및 대만(어업실체)
- ※ 2007년도 어획실적 : 456톤

##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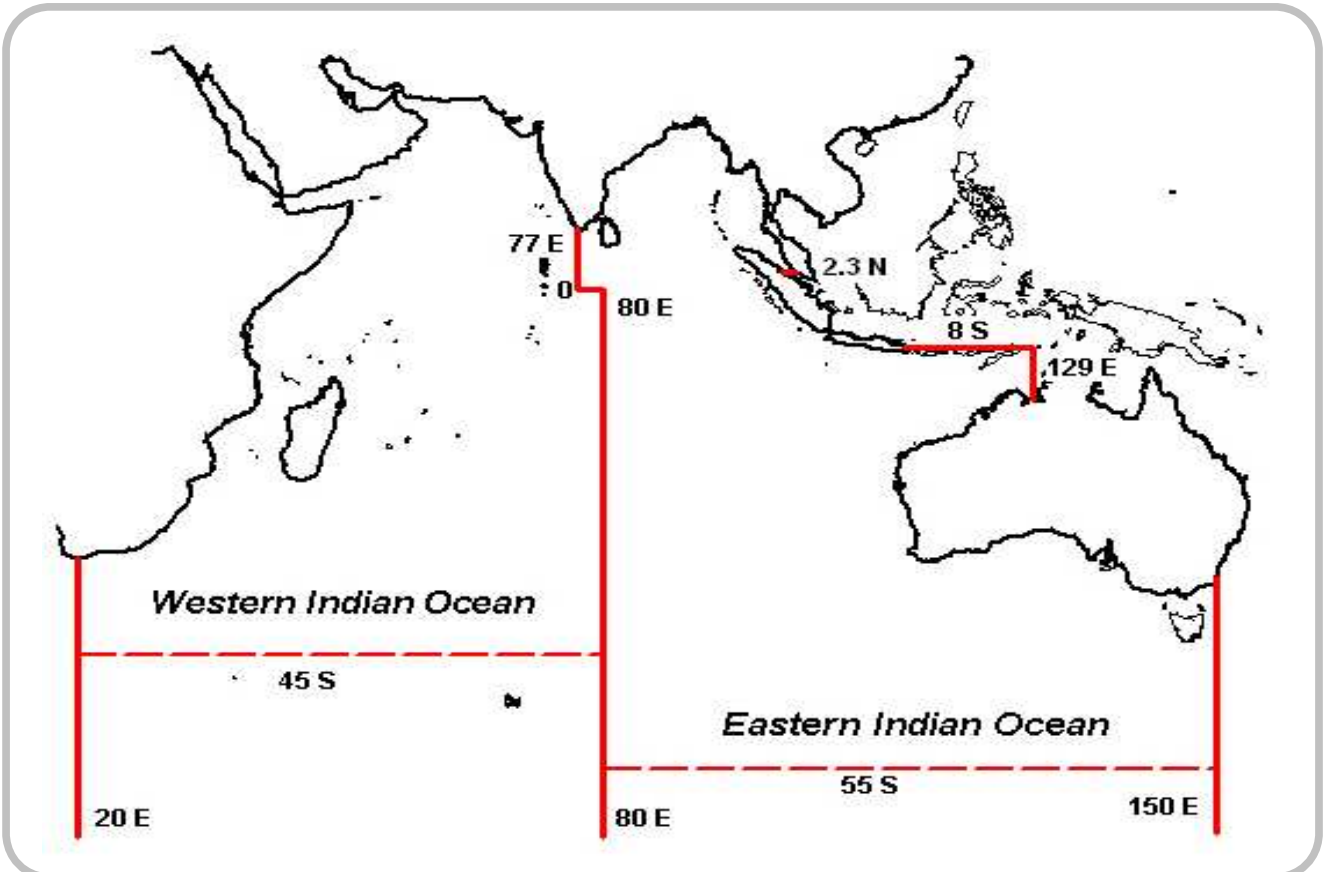
#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96. 3. 27('96. 3)
  - 목 적 :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사무국 : 세이셸 빅토리아
  - 회원국 : 한국, 일본, 호주, EC 등 27개국
- ※ 2007년도 어획실적 : 5,860톤

##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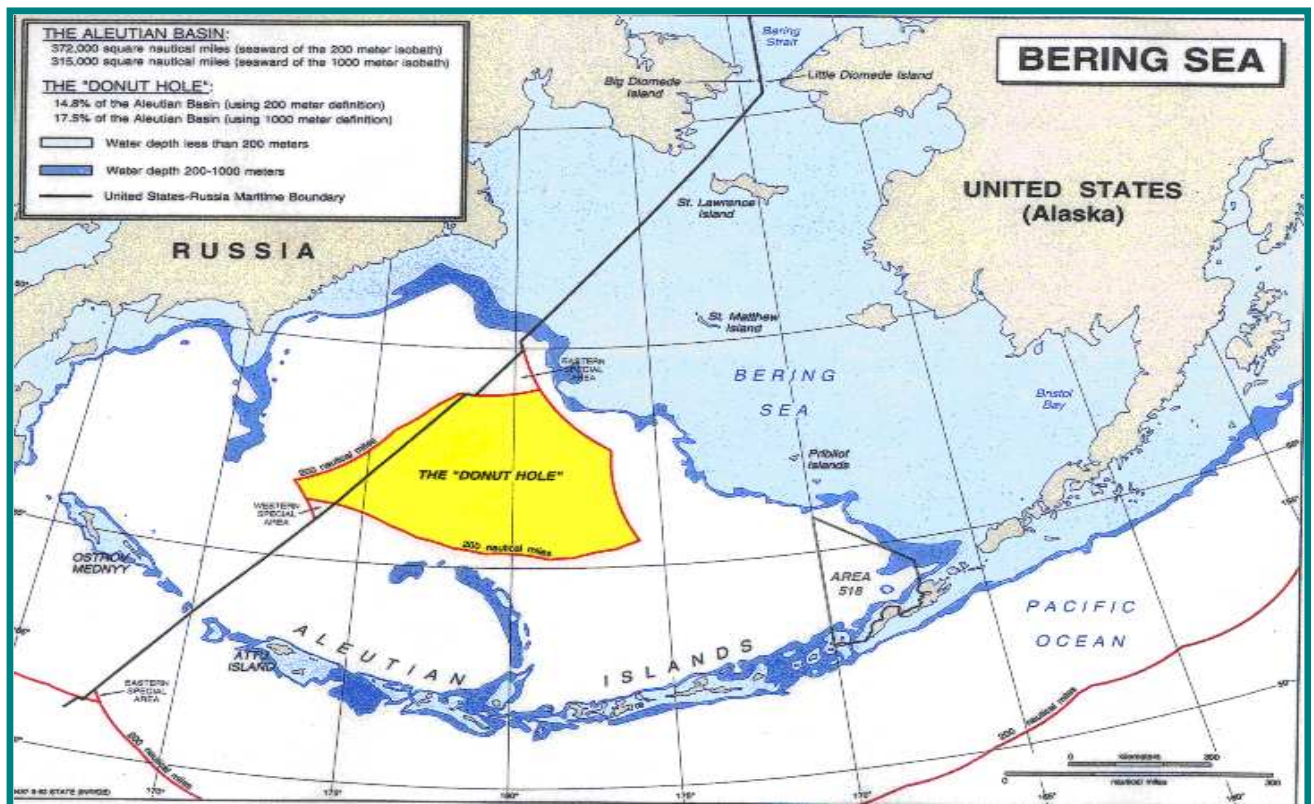
# 중부베링해명태보존관리협약

(CBSPC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 in the Central Bering Sea)

## 협약 개요

- 협약발효(비준일) : '95. 12. 8('96. 1. 4)
- 목 적 :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도모 및 정보교환
- 당사국 :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폴란드 6개국
  - ※ 1993년 모라토리움 선언이후 조업중단 중

## 협약 수역도



# 국제포경위원회

(IWC :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46. 12. 2.( '78. 12. 29)
- 목 적 : 고래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
- 사무국 : 영국 캠브리지
- 회원국 :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79개국

## 조업 현황

- '86년도부터 포획금지(부속서)
  - 우리나라는 IWC 결정에 따라 '86년도 포경어업전면 금지
- 과학조사포경은 국가의 고유권한사항(협약 제8조)
  - ※ 우리나라는 현재 과학조사포경 미실시

## 금지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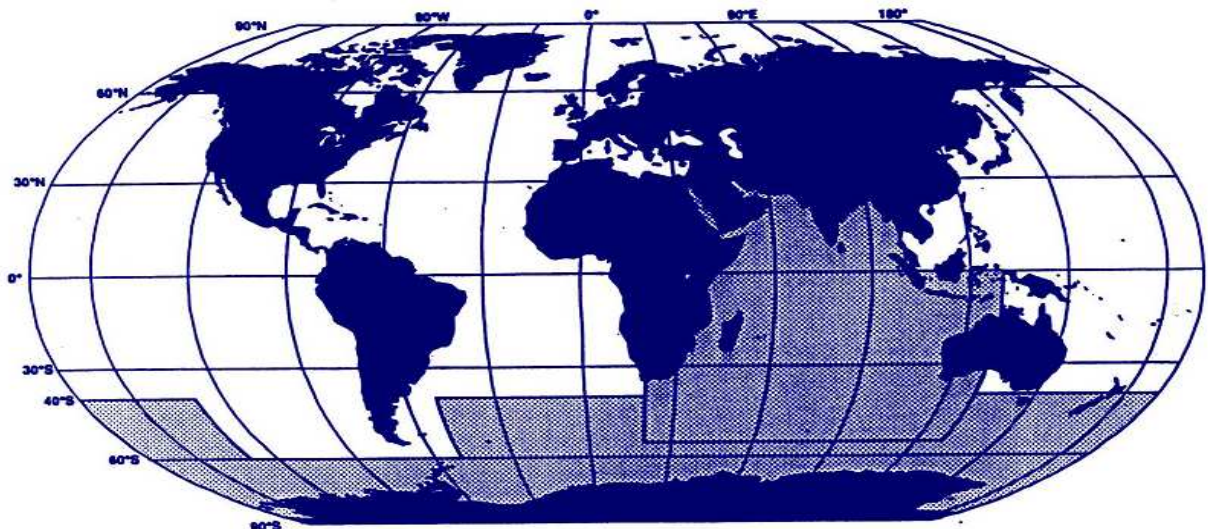


Figure. Boundaries of the Southern Ocean and Indian Ocean Sanctuaries.

#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CAMLR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80. 5('85. 4. 28)
  - 목 적 :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합리적 이용
  - 사무국 : 호주 호바트
  - 회원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뉴지, EC 등 24개국
- ※ 2007년도 어획실적 : 39,811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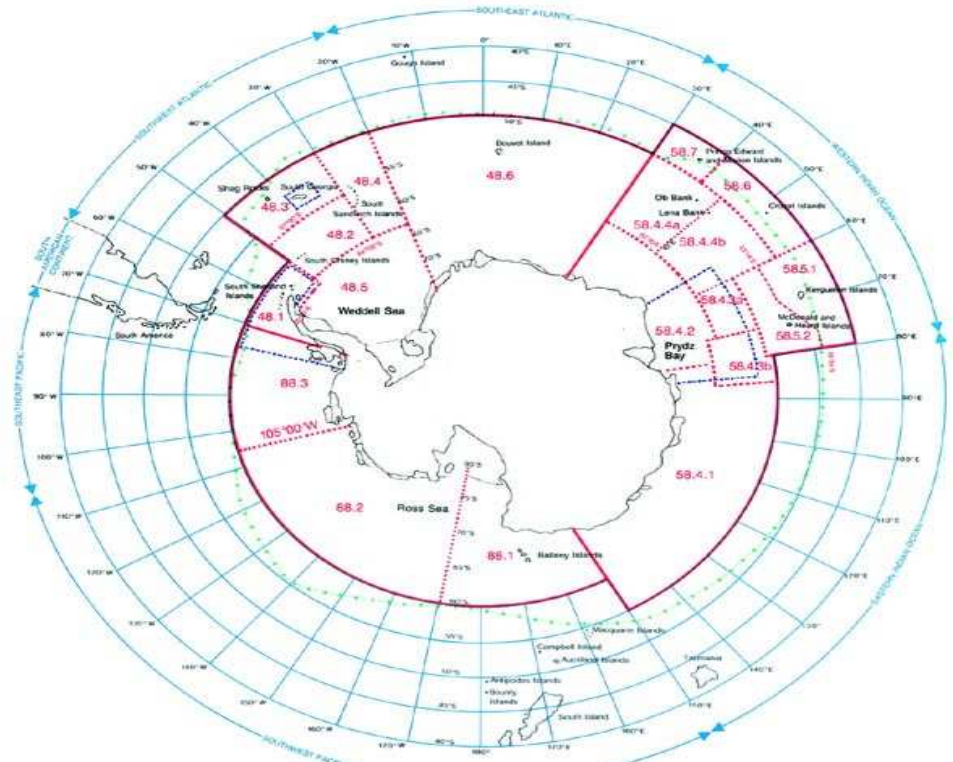
## 협약 수역도



Boundaries of the Statistical Reporting Areas in the Southern Ocean

**LEGEND**

- STATISTICAL AREA  
ZONE STATISTIQUE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РАЙОН  
AREA ESTADISTICA
- STATISTICAL SUBAREA  
SOUS-ZONE STATISTIQUE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ПОДРАЙОН  
SUBAREA ESTADISTICA
- ANTARCTIC CONVERGENCE  
CONVERGENCE ANTARCTIQUE  
АНТАРКТИЧЕСКАЯ КОНВЕРГЕНЦИЯ  
CONVERGENCIA ANTARCTICA
- CONTINENT, ISLAND  
CONTINENT, ILE  
МАТЕРИК, ОСТРОВ  
CONTINENTE, ISLA
- INTEGRATED STUDY REGION  
ZONE D'ETUDE INTEGREEE  
РАЙОН КОМПЛЕКСИВ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REGION DE ESTUDIO INTEGRA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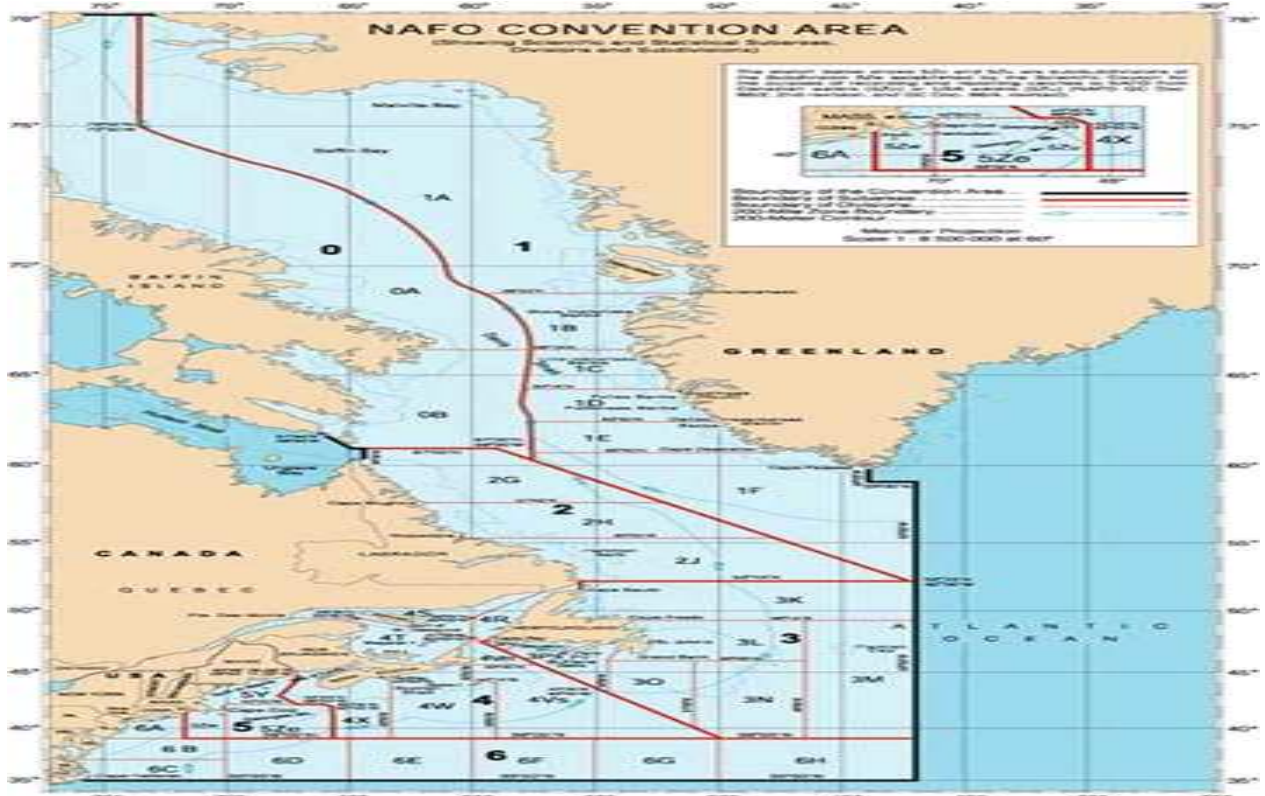
# 북서대서양수산기구

(NAFO :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78. 10('93. 12)
  - 목 적 : 북서대서양 어업자원의 합리적 보존과 최적이용 촉진
  - 사무국 : 캐나다 다트마우스
  - 회원국 : 캐나다, EC, 한국, 일본, 미국, 쿠바, 러시아 등 14개국
- ※ '08년도 우리나라 쿼타 : 1,285톤

##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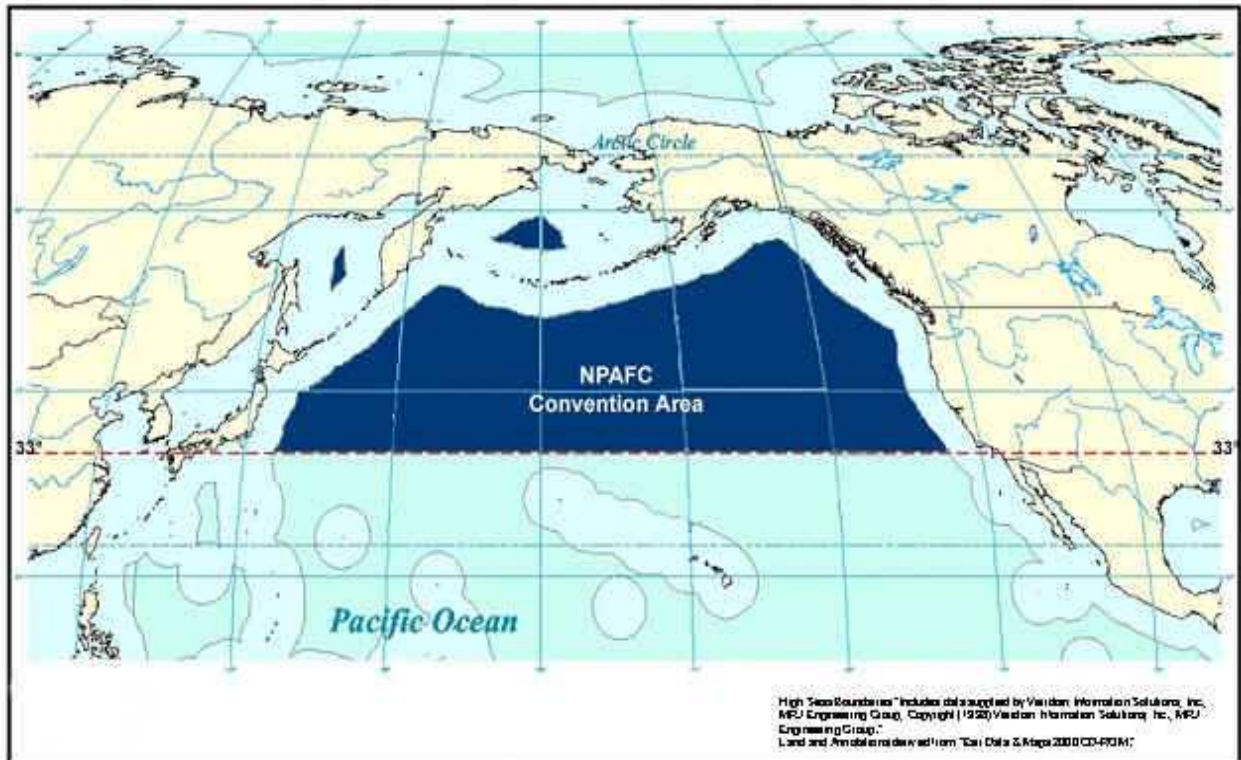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NPAFC :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93. 2('03. 5)
- 목 적 : 협약수역내 소하성 자원의 포획 금지 및 자원보존
- 적용대상 : 연어 6종 및 송어 1종
- 사무국 : 캐나다 밴쿠버
- 회원국 : 우리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5개국
- ※ 협약수역에서는 연어조업이 전면금지

##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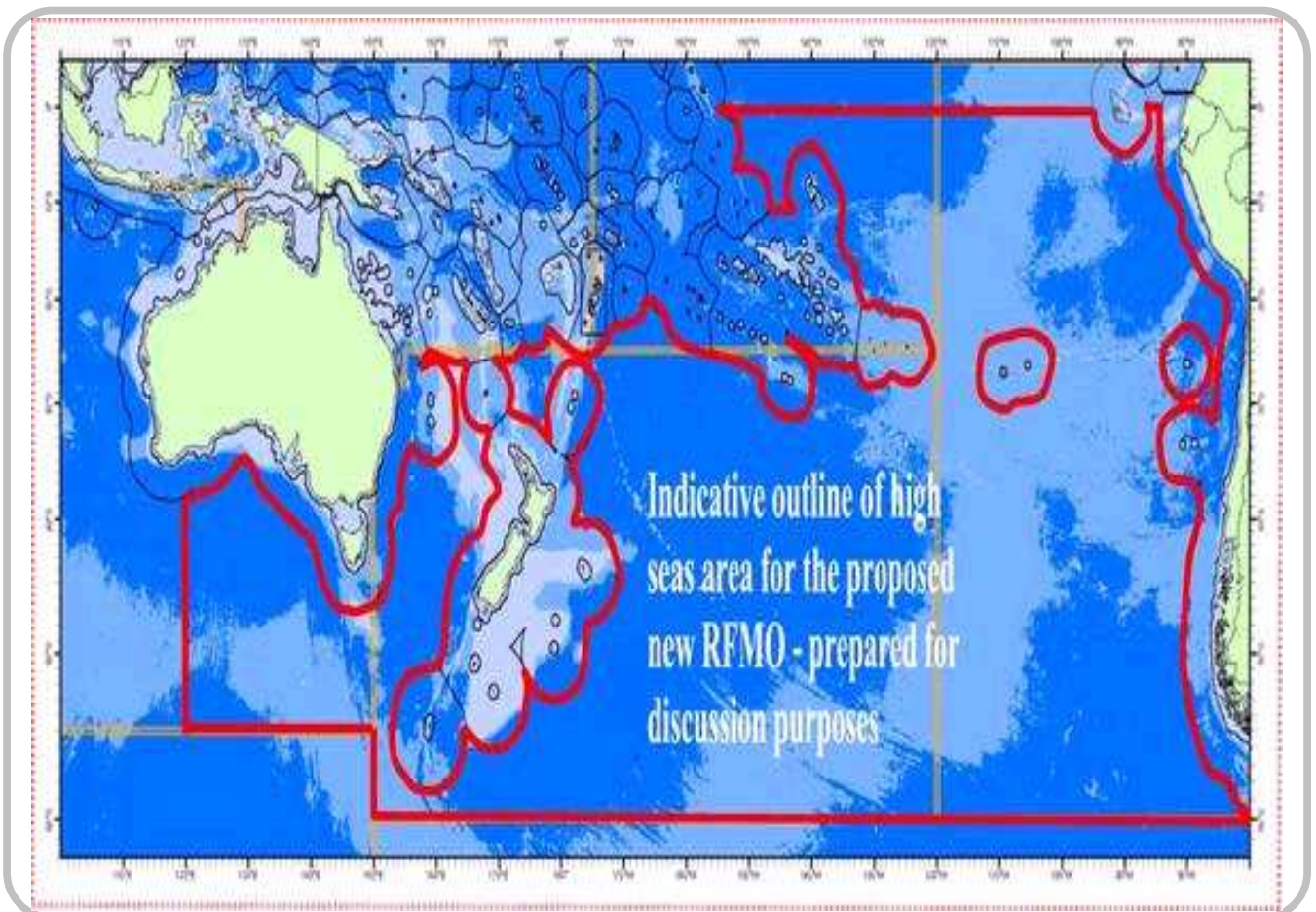


#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설립중) (SPRFMO :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기구 개요

- 관리대상 : 전갱이, 오렌지러피 등 비참치어종
- 임시 사무국 : 뉴질랜드 웰링턴
- 설립 협상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EC 등 약 25개국
- ※ 2007년도 어획실적 : 전갱이 12,180톤, 오렌지러피 77톤

##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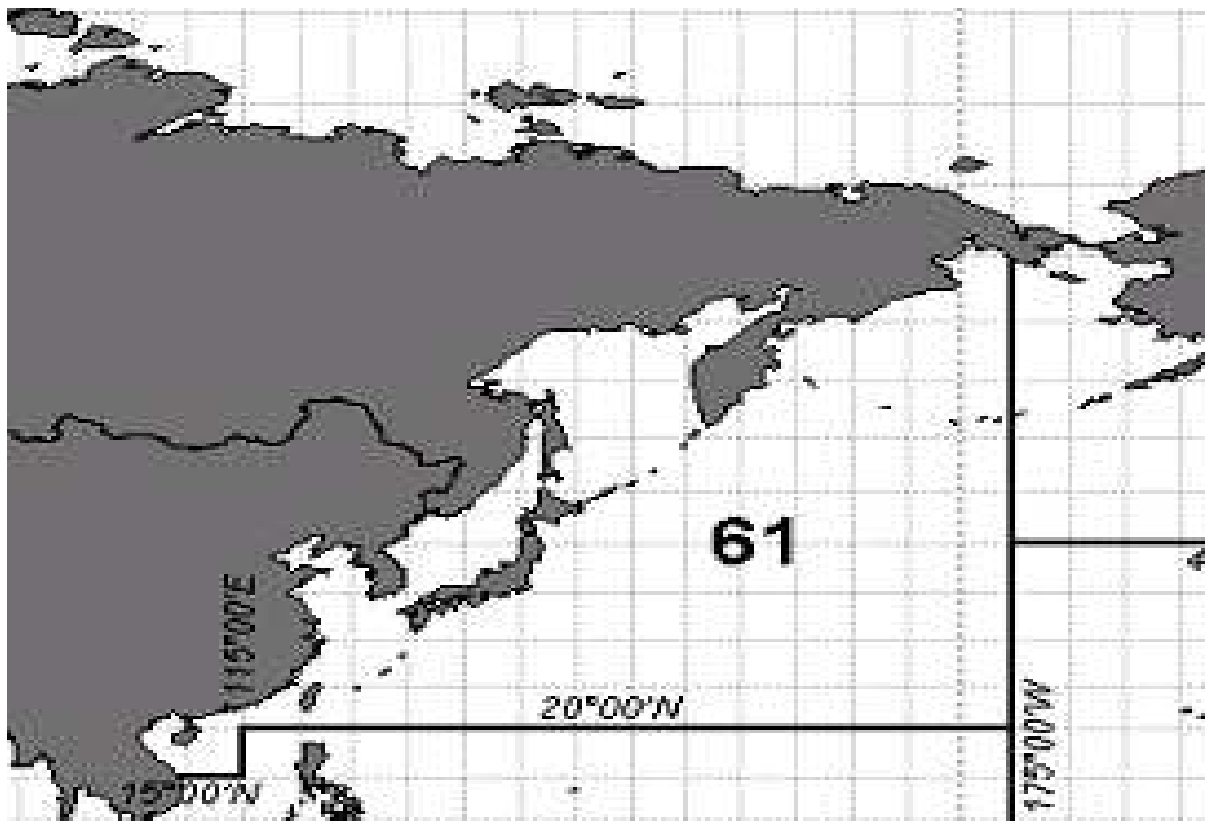


#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설립중) (NWPBRFMO : North West Pacific Bottom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기구 개요

- 관리대상수역 : FAO 통계수역 제61해역 중 공해
  - 관리대상 : 저층어업
  - 임시 사무국 : 일본
  - 설립 협상국 :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4개국
- ※ 2007년도 어획실적 : 781톤(1척)

##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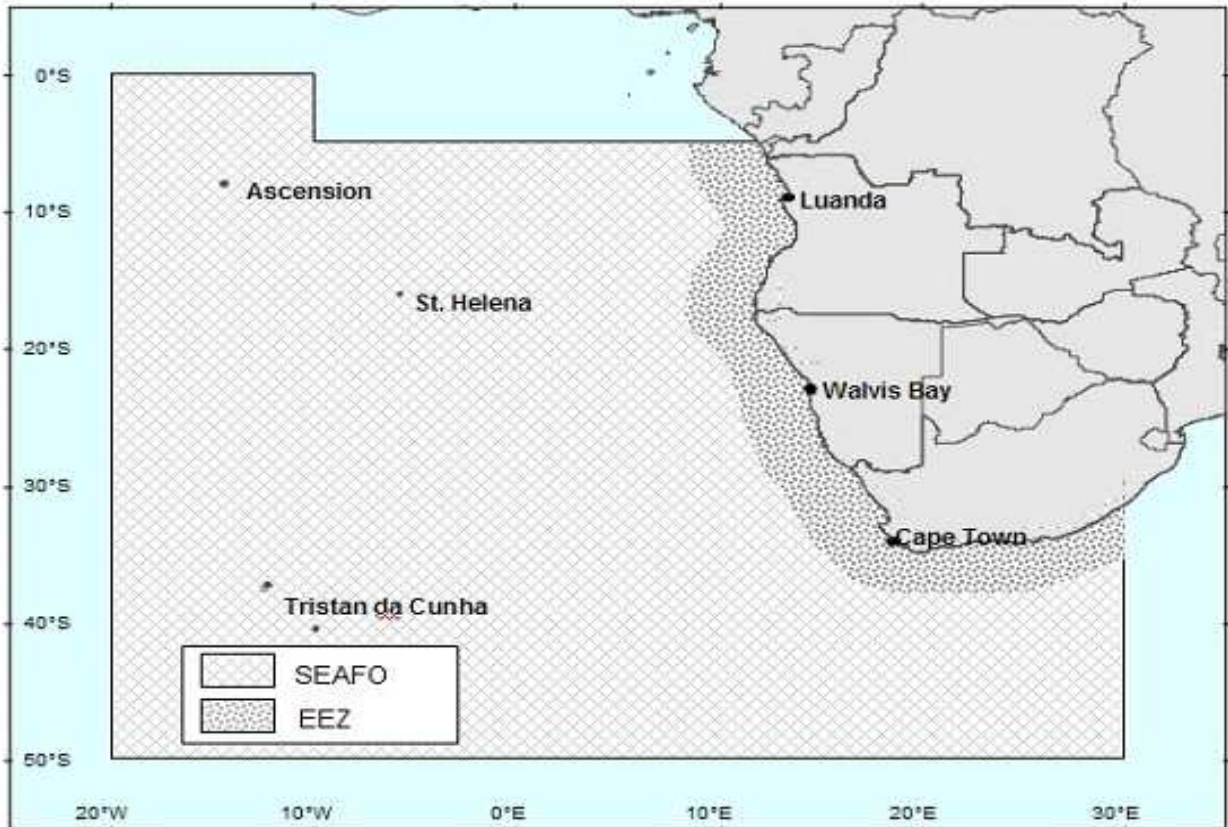


# 남동대서양수산기구(가입검토중) (SEAFO :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 기구 개요

- 설립일(협약발효일) : '01. 4. ('04. 4)
  - 목 적 : 어업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 확보
  - 적용대상 :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정착성어류 (참치제외)
  - 사무국 : 나미비아 왈비스 베이
  - 회원국 : EC, 나미비아, 노르웨이, 앙골라 등 4개국
- ※ 2007년도 어획실적 : 241톤 (3척)

##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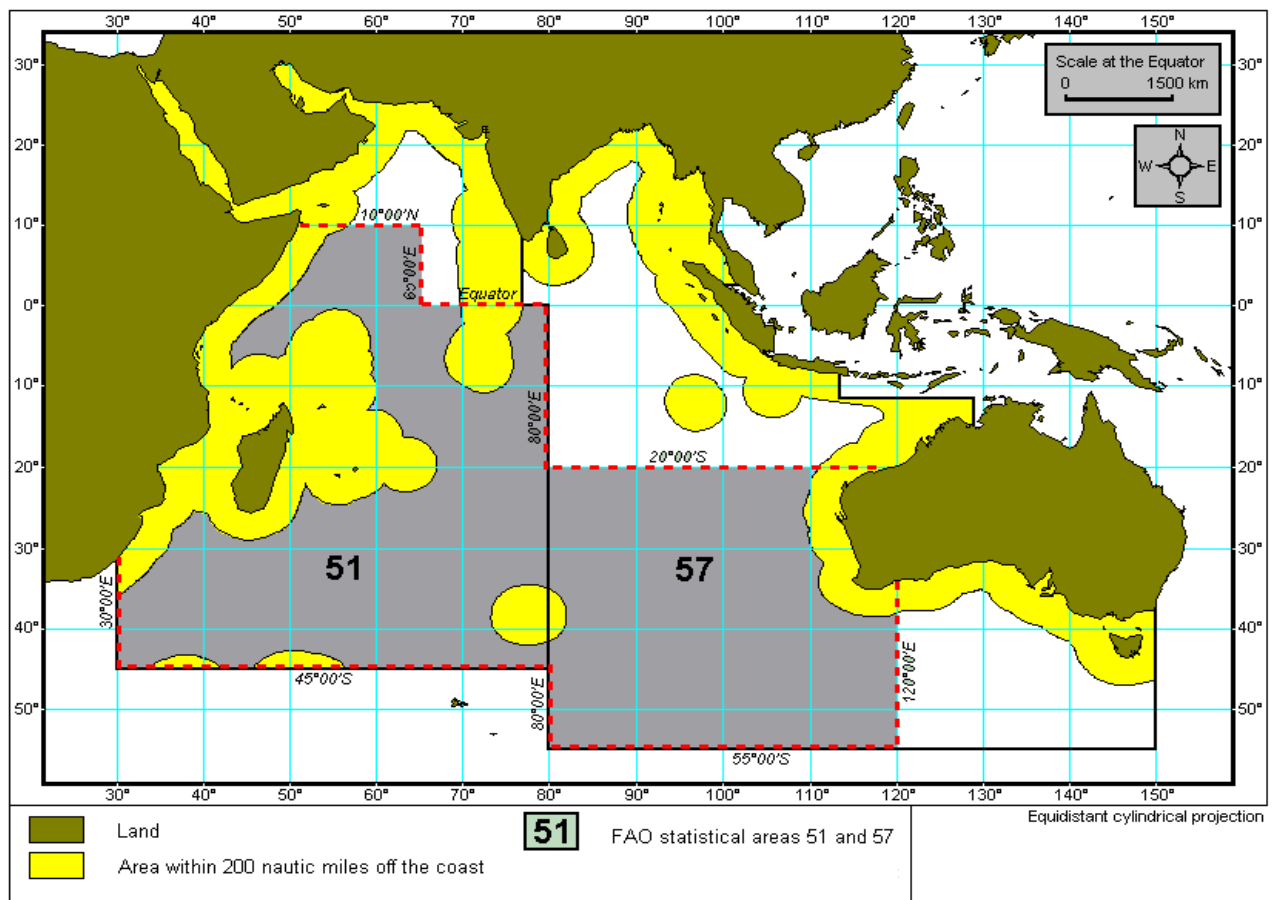
# 남인도양수산협정 (가입검토중)

## (SIOFA :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

### 협정 개요

- 협정채택 : 2006. 7. 7. (미발효)
  - 목 적 : 협정수역의 다랑어류 외 어업자원관리
  - 사무국 : 현재 IOTC(인도양참치위원회)에서 대행
  - 서명국 : EC, 호주, 뉴지, 프랑스, 세이셸 및 주요 연안국 10개국
- ※ 2007년도 어획실적 : 12톤(1척)

### 협정 수역도



FAO, III-2001

《 참고 1-10 》

**어업협정 체결 및 입어현황**

□ 입어국(2007)

체약국 (협상주체)	서명일 (발효일)	2007년 조업실적	2008년 입어조건	협정 주요내용
러시아 (정부)	'91.9.16 ( '91.10.22)	명 태: 5척/20,200톤 오징어: 104척/4,632톤 꽂 차: 12척/2,494톤 대 구: 2척/2,648톤 가오리: 2척/797톤 가자미: 2척/300톤 청 어: 5척/79톤 복 어: 104척/ 0.15톤	명 태: 20,500톤 오징어: 7,000톤 복어: 115톤 대 구: 2,650톤 꽂 차: 5,000톤 가오리: 800톤 청어: 250톤 가자미: 300톤	-양국수역내 상호입어 허용, 한·러 어업위원회 설치 -수산연구협력등 9개 수산협력실시 -어로, 양식, 가공등에서 합작사업 장려 -6개월전 통고시 조율
일 본 (정부)	'98.11.28 ( '99.1.22)	우리어선: 675척/23,819톤 일본어선: 137척/ 24,335톤	우리어선: 1,000척/60,000톤 일본어선: 1,000척/60,000톤	-배타적경제수역 상호입어허가 -중간수역설정, 기국주의 조업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3년간 유효, 6월전 통고시 종료
중 국 (정부)	'00.8.3 ( '01.6.30)	우리어선: 198척/ 2,821톤 중국어선: 1,843/51,016톤	우리어선: 1,600척/68,000톤 중국어선: 1,859척/71,000톤	-배타적경제수역 상호입어허가 -잠정조치수역·과도수역 설정, 기국주의에 의한 조업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5년간 유효, 1년전 통고시 종료
투발루 (민간)	'80.6.18 ( '80.6.18)	참치연승: 67척/2,984톤 참치선망: 27/21,595톤	참치연승: 67척 ※ 07년 조건 참치선망: 28척	-투발루수역내 어로행위 허용 -어업합작 장려 및 최혜국대우 -어선과 선원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6개월전 통고시 종료
솔로몬 (민간)	'80.12.12 ( '80.12.12)	참치연승: 35척/1,978톤 참치선망: 28척/48,350톤	참치연승: 35척 ※ 07년 조건 참치선망: 28척	-솔로몬 어업수역내 조업허가 -어선과 선원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12개월전 통고시 종료
키리 바시 (민간)	'80.12.18 ( '80.12.18)	참치연승: 123척/9,171톤 참치선망: 28척/57,351톤	참치연승: 123척 ※ 07년 조건 참치선망: 28척	-키리바시 200해리 어업수역내 조업허가 -어족자원보존 및 최적이용 목적 증진 -6개월전 통고시 종료
파푸아 뉴기니 (민간)	'92.1.25 ( '92.4.15)	참치선망: 28척/59,605톤	참치선망: 28척	-파푸아뉴기니 경제수역내 조업허가 -합작사업 장려 및 최혜국대우 -12개월전 통고시 종료

□ 입어중단 및 미입어국(2007)

체약국 (협상주체)	서명일 (발효일)	과년도 조업실적	입어중단(미입어)사유	협정 주요내용
쿡 (민간)	'80.8.25 ('80.8.25)	<1998년> 참치연승: 6척/107톤	1990년대 후반 사모아 기지선의 완전철수로, 원격지가 됨에 따라 입 어중단	-쿡 경제수역내 조업허가 -해양생물자원 관리·보존·이용 협력 -어선과 선원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3개월전 통고시 종료
불란서 (정부)	'80.9.19 ('80.12.19)	<2000년> 참치연승: 78척/2,437톤	협상결렬로 입어중단 (척수·입어로 입장차 이) 이후, 우리 독항 선이 주로 키리바시 (어황이 가장 좋음) 위 주로 조업	-불령수역 협정적용범위 설정 -입어로 사전지불 조건, 협정수역내 조업허가 -선박의 나포, 선원체포시 통보의무 -3개월전 통고시 종료
이 란 (정부)	'77.5.11 ('78.4.1)	<1992년> 트롤: 3척	이란혁명 이후 입어중단	-어로, 수산분야 상호협력강화 -전문가, 훈련생, 수산과학기술협력 -수산물 가공등 합작사업 장려 -6개월전 통고시 종료
호 주 (정부)	'83.11.23 ('83.11.24)	<1985년> 오징어채낚기: 8척	포클랜드 호어장 발견으로 입어중단	-호주 200해리수역내 입어허용 -선박, 선원 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과학적 조사에 협력, 통계·생물학적 자료제공 -12개월전 통고시 종료
모리타 니아 (정부)	'84.1.7 ('84.1.7)	입어실적 전무	국내법에 의거 외국어선 단순입어 불허 미입어	-모리타니아 200해리 경제수역내 조업허용 -어로장비, 선박수리 등 합작사업 장려 -어선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및 나포시 통보 조치 -6개월전 통고시 종료
에쿠아 도르 (정부)	'84.5.22 ('84.9.19)	입어실적 전무	국내법에 의거 외국어선 단순입어 불허 미입어	-상호 타방어선 조업, 편의제공 -합작사업등 자본협력 장려 -양국어선의 타방국 항구이용 허용 -6개월전 통고시 종료

《 참고 1-11 》

**연안국과의 인사 교류 주요 현황('05-'07)**

일시	행사명	주요 인사명	주요내용	
'07	10.21-26	알제리 수산어로자 원부 장관 방한	알제리 수산어로자 원부 장관외 3명	▪수산협력약정(MOU) 체결 및 수산현장 시찰
	10.9	차관보면담	솔로몬 수산부 장관 면담	▪양국간 협력 및 여수박람회지원
	7.4	장관면담	주한노르웨이 대사	▪양식박람회 및 제5차 한-놀 수 산협력회의 장관 초청
	4.16	장관면담	주한노르웨이 대사	▪노르웨이 왕세자부부 방한 관련 협조 요청
'06	11.13-17	알제리 경제사절 단 방한	알제리 수산자원부 대외협력담당관	▪수산협력약정(MOU) 문안 및 알제리 장관 초청건 협의 ▪현장시찰(부산항, 과학원 등)
	09.27	장관면담	호주 농림수산부 장 관 외 6명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방안 에 대한 의견교환
	09.23-27	차관면담	우루과이 항만청장	▪차관 만찬 ▪부산청장 및 부산항만공사장 면담 외 부산시찰
	09.14	차관보면담	솔로몬 장관	▪차관 오찬 ▪장기입어약정 체결 당부
	07.21	차관보면담	베트남 수산차관 외 16명	▪차관보 오찬 ▪양국간 수산물 교역 협의
'05	12.07	장관면담	기니 수산장관 외 7명	▪양국 장관간 합의의사록 작성
	09.21	주한대사 설명회	중남미 15국 주한대 사 참석	▪우리 해양수산 정책 설명 및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방안 협의
	05.20	장관면담	멕시코농업부장관 외 2명	▪양국간 어업협력 증진방안 및 양국 FTA 체결 관련 의견 교환





# 수산통상과

1. FTA 수산분야 협상 추진(총괄) .....	6
2. 한-EU FTA .....	76
3. 한-캐나다 FTA .....	96
4. 한-인도 CEPA .....	17
5. 한-ASEAN FTA .....	27
6. 한-멕시코 FTA .....	37
7.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	47
8. 한-미FTA 대비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강구 .....	75
9. WTO/DDA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	78
10. WTO/DDA NAMA 보조금 협상 .....	81

## 《참고》

《2- 1》 FTA 협상 동향(총괄) .....	38
《2- 2》 한-중 수산물 수출입 동향 .....	58
《2- 3》 한-EU 수산물 수출입 동향 .....	68
《2- 4》 한-인도 수산물 수출입 동향 .....	78
《2- 5》 한-멕시코 수산물 수출입 동향 .....	88
《2- 6》 한-캐나다 수산물 수출입 동향 .....	98
《2- 7》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	90
《2- 8》 수산진흥종합대책(2005) .....	19
《2- 9》 한·미 FTA 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 .....	92
《2-10》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주요내용 .....	93
《2-11》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 .....	94
《2-12》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	69
《2-13》 수산분야 FTA '08~'17 예산(안) 현황 .....	7. 9
《2-14》 도입 가능 수산 보전제 .....	8
《2-15》 우선도입 수산보전제 .....	9
《2-16》 어업협정체결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황 .....	10
《2-17》 자유무역협정 체결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11
《2-18》 주요 민감품목 .....	12
《2-19》 WTO-DDA/FTA 협상 동향 .....	16



## 가. 현 황

### □ 동시다발적 FTA 지속 추진

- 한·EU FTA 상반기 중 타결 예상
  - 자동차, 돼지고기, 고등어 등 핵심쟁점 합의 필요
- 한·캐나다, 한·인도 FTA도 상반기 중 타결 가능성 높음
- 한·멕시코 FTA 본격화
- 기타 MERCOSUR, GCC 등과의 FTA 협상개시 예정

### □ 중국과의 FTA 본 협상 가시화

- '08. 2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후 협상개시 여부 논의 예상
  - 농림수산물 민감성 확보 여부가 주요 변수
  - \* 중국과의 FTA는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 (수입수산물의 약 40%가 중국산)

### □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 움직임

- 새 정부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 \* 일본으로부터의 고급 신선냉장수산물(명태, 꽁치, 고등어 등)의 수입이 증가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자원고갈에 따라 감소 추세. 따라서 한·일 FTA 체결시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것이라 예단하기 어려움

### □ 기타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수산강국과의 FTA 논의 예상

## 나. 추진실적

### □ 한·미 FTA 수산분야 협상 타결

- 명태, 민어 등 민감품목은 10년이상 장기관세철폐 등으로 보호
- 활넙치 체장제한 완화로 대미 수출 확대의 획기적 전기 마련

- EU, 캐나다, ASEAN, 인도, 멕시코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 고등어, 갈치, 꽃게 등 민감품목 최대한 보호 노력
  - 기국주의, 선박선원 요건 등 원산지 쟁점에 우리입장 반영
- 중국 등 신규 FTA 추진에 대비, 철저한 사전 대응방안 수립
  - 민감성 보호장치(예: 농림수산물 10% 양허제외)를 본 협상 개시 이전 확보하는 방안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에 반영 추진
  - 한·중 FTA 체결시 영향 분석(KMI), 협상전략 수립에 활용

#### 다. '08 추진계획

-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동시다발적 FTA에 적극 대응하여
  - (1) 부정적 영향 최소화; (2) 우리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 수입증대시 어업인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품목은 장기간 양허 및 TRQ 등으로 최대한 보호
  - 참치, 굴, 김 등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에 철저 대비
  - 협상시 우위 선점을 위한 디딤돌을 공동연구단계에서 마련
    - \* 한·중 FTA 협상 개시 이전에 양허제외 등 보호장치 마련을 적극 추진
  - 연구용역 및 업계의견 수렴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협상준비
    - \* 한·중 FTA 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KMI, '06-'08)

## 가. 현황

- “FTA 추진 로드맵”상 EU를 중장기 FTA 대상국으로 선정('03. 8)
- 한-EU FTA 협상 출범 선언('07. 5. 6)
- 한-EU FTA 협상 대응방향 수립('07. 5. 대외경제장관회의)
  - 공산품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추진하되,
  - 농수산물의 경우 양측의 민감품목을 신중적으로 고려
- '07. 5월 제1차 협상 개시, '08. 1월 제 6차 협상까지 진행

## 나. 추진실적

- 협상동향(총괄)
  - EU의 한-미 협상에 상응하는 결과 요구로 양측 참여 대립
    - 우리측 : EU측 자동차 품목의 3년 이내 조기 관세철폐
    - EU측 : 돼지고기, 냉동 고등어 등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양허 요구
- 상품양허 협상
  - 수산물인 냉동 고등어, 냉동 볼락 등 EU측이 KORUS parity를 요구하는 6개 쟁점 품목에 대해 미합의
    - \* 수산물 6개 미합의 품목 :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 넙치, 냉동 볼락, 조제 골뱅이, 밀폐 골뱅이, 기타 조제 연체
- 원산지 협상
  - 영해내 어획물은 연안국의 생산품으로 하고, 영해 밖에서 당사국 선박이 어획한 것은 당사국의 생산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 다만 당사국 선박 결정 기준에는 선박 지분, 선원 요건 등과 관련 양측 이견이 있어 향후 지속 논의 예정

□ 경쟁 등 기타 분야

- 경쟁 분야의 국가 보조금 규제와 관련, 우리측은 수산 보조금 협상 대상 제외를 강력 요구하였으며, EU측은 검토 의사 표명

다. '08 추진계획

□ 민감 품목은 보호하되, 수출 확대 기회로도 활용

- 냉동 고등어 등 민감 품목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지속 추진하되,
- 핵심 민감 품목 이외에는 개방 지향적으로 대응, EU측의 높은 양허 수준(전품목 5년내 관세철폐)을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 \* 한-EU FTA 차기 협상 : '08. 5 예정(수산물 양허 협상은 미개최)

라. 수산물 교역현황 (2007)

□ 교역비중 : 4.58%(수입 89백만불, 수출 107백만불)

- 주요 수입품목 : 골뱅이, 냉동 참다랑어 피레트, 냉동 고등어 등
- 주요 수출품목 : 냉동 오징어, 게맛 생선묵, 냉동 황다랑어 등

## 가. 현 황

□ '05. 7월 제1차 협상개시

□ '08. 3월 제13차 협상 진행

- 캐나다측의 한미 FTA에 상응하는 결과 요구로 인하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협상 장기화
- 특히 캐나다측은 한미 FTA와 같이 수산분야 양허제외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

## 나. 추진실적

□ 상품양허

- 캐나다측은 134개 수산품목 중 101개 품목 즉시철폐, 33개 품목 3년내 철폐로 양허안 제시
- 우리측의 전체 407개 수산품(HS2002 기준) 중 캐나다측은 172개 품목에 대하여 양허개선을 요청한 바,
  - 그 동안 의견차가 심했던 미합의 5개 품목(활뱀장어,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냉동새우, 냉동 기타 계) 및 바닷가재에 대해 사실상 합의

□ 원산지

- 양측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획물의 원산지 관련, 어획어선의 국적국을 원산지로 하자(기국주의)는 우리측 입장에 합의
- 필렛, 건·염·훈 어류 등 단순가공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하



여 어획과 가공이 모두 이루어진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우리측 입장에 합의

#### 다. '08 추진계획

□ 제14차 협상 : '08. 6월/서울(잠정)

- 차기 협상시, 분과별 미합의 쟁점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패키지  
합의안 준비

#### 라. 수산물 교역현황 (2007)

□ 교역비중 : 1.4%(수입 53백만불, 수출 7.1백만불)

- 주요 수입품목 : 바다가재, 새우, 떡장어, 골뱅이, 아귀 등
- 주요 수출품목 : 조미김, 생선묵, 건조멸치, 염장미역 등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가. 현황

- '06. 3월 제 1차 협상 개시
- '07. 4~12월 한-인도 CEPA 2~ 9차 협상 진행
  -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바라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인도의 입장차로 인해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나. 추진실적

- 상품양허
  - 우리측은 인도측 공산품 양허안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며, 이를 개선하기 전에는 우리측 양허안도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인도측은 자국 제조업의 민감성을 들어 추가양허가 어렵다는 입장
  - 수산물에 대한 인도 수입액 기준 80%를 양허 제외하는 보수적인 안 제시
- 원산지
  - EEZ 수역에서 생산된 어획물의 원산지기준 입장대립
    - 양측 주장 : 한국은 기국주의, 인도는 연안국 주의

## 다. '08 추진계획

- 더 이상 인도를 압박할 경우 CEPA 체결이 어려울 전망
  - 공산품에서 “덜 받고 농수산물에서 덜주는 협상” 예상

## 라. 수산물 교역현황 (2007)

- 교역비중 : 0.5%(수입 21백만불, 수출 0.4백만불)
  - 주요 수입품목 : 갈치, 연육, 꽃게, 새우류 등 냉동품
  - 주요 수출품목 : 어류의 조분, 펠리트, 갑각류 엑스 등

### 가. 현 황

- 한-ASEAN FTA 협상개시 선언('04. 11, ASEAN+3 정상회의)
  - 제1차~제22차 FTA 협상('05. 2.~'08. 3.)
    - 상품협정문 발효('07. 6), 서비스협정문 타결('07. 11), 투자협상 진행 중

### 나. 추진실적

-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아세안국은 새우 및 갑오징어 TRQ 이행에 대해 막대한 관심표명
  - '06년 상품협정 타결시 참여하지 않은 태국이 한-태 양자협상을 통해 '08년 상반기 중 가입 예정
  - 베트남(새우 및 갑오징어의 대한국 수출에 있어 태국과 경쟁관계)측은 기존 TRQ배정물량 외에 태국에 별도 TRQ 물량 할당을 요구
  - 우리측은 기 합의된 TRQ 물량은 태국을 포함한 ASEAN 전체에 할당된 물량이므로 별도 TRQ 할당이 불가하다는 입장
- 투자
  - 양허방식 및 최혜국대우 원칙 등 협정문상 쟁점 논의 중

### 다. '08 추진계획

- TRQ 물량에 대해 우리입장 견지
- 해외 양식투자 확대에 대비, 투자 장애요소 발굴 추진

### 라. 수산물 교역현황 (2007)

- 교역비중 : 15.2%(수입 519백만불, 수출 130백만불)
  - 주요 수입품목 : 새우, 갈치, 오징어 등 냉동·건조 수산물
  - 주요 수출품목 : 다랑어류, 오징어, 굴 등 냉동수산물

### 가. 현 황

- '06. 2월 ~ '06. 6월: 3차례 SECA 협상 후 중단
  -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우리는 맥측 공산품 양허에, 멕시코는 우리측 농수산물 양허에 실망
- '07. 8월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기로 합의
- '07. 12월 한-멕시코 FTA 제1차 협상 개최(멕시코시티)

### 나. 그간의 추진실적

- 상품양허
  - 제2차 협상('08. 5월 예정)부터 논의 예정
- 양자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 우리나라는(수산물 수입 급증시) 발동이 용이하도록 “절대적 증가 OR 국내생산 대비 상대적 증가” 주장, 멕시코는 이에 반대
- 원산지
  - EEZ 어획물: 우리나라 기국주의 주장, 맥측 검토 중
  - 양식수산물: 단순축양 우회수입 방지용 문안 제시, 맥측 검토 중

### 다. '08 추진계획

-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되, 수출 증진의 기회로도 활용
  - 꽃게, 오징어 등 우리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되,
  - 참치 등 수출 확대 가능품목 적극 공략

### 라. 수산물 교역현황 (2007)

- 교역비중 : 0.32%(수입 7.2백만불, 수출 6.3백만불)
  - 주요 수입품목: 냉동 꽃게, 기타 냉동게, 자숙오징어, 냉동정어리

○ 주요 수출품목: 냉동 참치, 굴 통조림

## 통상Ⅱ-7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

### 가. 현 황

□ '07. 3~'08.3월 : 1~4차 산관학 공동연구 개최

○ '07. 9월, 12월 : 농림수산분야 전문가 회의 개최

### 나. 그간의 추진실적

□ 농림수산업 분야 민감성 및 보호장치 필요성에 대해 이견

○ 우리측은 일정수준 예외인정 등 협상개시 이전 보호장치 마련 주장

- 동일한 어장공유,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 우려

○ 중국은 협상개시 이전에 양허제외 비율 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 아울러 중국측도 일부 제조업의 민감성을 주장하며 한국의 농수산업과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자고 주장

\* 위 내용을 반영하는 공동보고서 문안을 두고 양국간 협의 중

### 다. '08 추진계획

□ 산관학 공동연구를 본 협상의 디딤돌로 활용

○ 공동연구 보고서상 우리나라 수산업의 민감성 및 보호방안이 서술될 수 있도록 협상

### 라. 수산물 교역현황 (2007)

□ 교역비중 : 28.7%(수입 1,071백만불, 수출 157백만불)

○ 주요 수입품목 : 냉동조기, 갈치, 꽃게, 아귀 등

○ 주요 수출품목 :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꼬리민태 등

## 가. 현 황

- '06. 6월 한미 FTA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8차례의 실무협상 등을 거쳐 '07.4월 협상 타결 및 '07.6월 협정문 서명
  - 수산물의 경우 '97년 수입 자유화되어 대부분의 품목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감품목은 관세철폐시 수익저하 우려
    - ※ 15년간 4,200억원(연 281억원) 생산 감소 예상
- 한미 FTA를 수산업 자생력 회복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완대책 수립('07.11) 추진

## 나. 추진실적

-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수립('04.1)
  - 생산구조개편 등 7대 과제에 10년간('04~'13) 총 12.4조원 투융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4.3)
  - FTA에 따른 어업인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 등 지원 근거 마련
-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05.4)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매 5년 법정대책(1차:'00~'04)
- 한미 FTA 협상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수립 추진
  - 국내보완대책 수립 발표 및 우리 부 자체 브리핑('07.6)
- 수산보전제 도상연습계획 수립 및 실시
  - 수산보전제 도상연습계획 수립·발표('07.9)

□ FTA 관련 특별법 등 개정 추진

- 어업협정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07.10)
- FTA지원특별법(안) 마련('07.7), 법제처 심사('07.9) 및 국회제출(10.23)

□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및 재정지원계획 수립·발표(11.6)

- 총 10년간('08~'17) 7,262억원(보조 6,735, 융자 537억원) 수준 지원

□ 2007 자유무역협정 활용 박람회 참가·홍보('07.11/코엑스)

- VIP(11. 30 무역의 날 행사 후), 총리(개막식) 참석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개방화에 대응 구체적 지원대책의 신속한 마련으로 어업인의 불안감 해소 및 대 정부 신뢰 회복

- 직접적 피해지원(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 등

#### 라. '08 추진계획

□ FTA 지원 특별법·시행령 등 제·개정

- FTA 지원 특별법 공포 추진('08) 및 시행령(안) 마련('08)
- 어업인 소득보전특별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08~'09)

□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지침 마련('08)

- 연구용역 추진('07. 12. 17~'08. 8. 13/전남대, 군산대)
  -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급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마련
  - 폐업(구조조정)에 의한 전업 및 실업대책 연구 등
- ※ 동 지원금에 대한 심의를 위해 FTA이행지원위원회(소위원회) 구성

□ 비준 동의과정에서 재정지원 예산증액 반영 대비 대책 수립('08~'09)

○ 일자리 창출 및 수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추가 지원

- 수산보전제 확대 및 수산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적극 추진
- 어촌관광 홍보·마케팅 능력 제고 등을 위한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
- 「해외 수산펀드」 조성 및 해외투자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 한·칠레 FTA 비준 동의시 농업분야에서 예산이 증액 반영됨

○ 수산보전직불제의 단계적 확대

- 수산보전직불제 성격의 기존 사업들을 수산보전제로 통폐합
  - \* 통폐합 사업 : 배합사료 지원, 폐어구 수거 지원, 생분해성 어구지원 사업
- 친환경 기자재 지원 등 신규 수산보전직불제 사업 발굴
  - \* 친환경 기자재(부표)·조건불리 지역 보전제 2개 지원(270억원, '09~'17)
- 추가 수산보전제 도입 추진('09 이후)
  - \* 재해예방 지원, 고령어가 은퇴 지원, 휴어, 어장휴식 등

□ 현재 추진 및 예상되는 FTA 대비 지원대책 준비

○ 기존 협상(칠레, 미국) 대책을 통해 축적된 경험 및 사례를 활용하여 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비책 마련

- 기 제시된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원방안 기초자료 확보

○ 중국 등 피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국가와의 협상 진행시 T/F 팀을 구성

※ FTA 추진 현황

·협상 타결된 FTA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협상 진행중인 FTA : EU,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협상 예상되는 FTA : 중국, GCC(걸프협력회의),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 가. 현 황

- 제4차 WTO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 출범('01.11)
- 제5차 WTO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 실패('03, 9)
- WTO 일반 이사회에서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04. 8)

#### ■ 기본골격 주요 내용

-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 협상목표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감축임을 확인
- 비선형 인하방식(non-liner formula :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률이 커지는 공식)을 관세감축공식으로 채택
- 분야별 무세화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중요함을 지적

- 제6차 홍콩 각료회의 개최('05.12)
  - 협상 모델리티 합의 시한('06. 4)과 양허안 제출 시한('04. 7) 설정
- 농업시장 관세감축, 국내 보조금 등 농업 부문과 비농산물 접근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DDA 논의 중단('06. 7.24)
- WTO 비공식 무역협상 그룹(TNC)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의 협상 재개 지지로 Lamy 사무총장이 협상 정상화를 선언('06.11)
- 농업 및 NAMA 협상 의장은 DDA 협상 진전을 위하여 '협정 문안'을 제시('07. 7.17)후 '의장 수정안' 제시('08. 2.8)
-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협상 조기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금년 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나. 주요 논의 내용

### □ 관세감축

- 스위스 공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을 제안 하되, 선진국 계수는 8~9, 개도국 계수는 19~23으로 제시 (협정문안, '07.7.)

<스위스 관세감축 공식>

$$t_1 = \frac{A \times t_0}{A + t_0}$$

A: 조정계수(co-efficient),  $t_0$ : 인하전 관세율(base rate),  $t_1$ : 인하후 관세율(new rate)

### □ 미양허 품목처리

- 미양허 품목은 100% 양허하되, 급격한 관세 감축 방지를 위하여 관세 감축공식에 Mark-up 방식 적용키로 합의
  - 마크업 수치로 20%를 제안 (협정문안, '07.7.)
- \* 수산물 미양허 품목 : 407개 중 232개(약 57%)
- \* Mark-up 방식 : 미양허 품목의 실행세율에 Mark-up 수치(20%)를 더한 후 관세감축공식에 대입하여 관세를 감축하는 방법

### □ 수산물 무세화

- 강도 높은 무역 자유화를 위해 수산분야 무세화 제안
  - \* 수산분야 무세화 제안국 :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태국 등
  - \* 수산분야 무세화 반대국 : 한국, 일본, 대만
- 현재, 무세화 참여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진행('06. 12, 홍콩 각료회의) 되고 있어, 수산분야 무세화 가능성은 낮아짐
  - 특히, '07년 초 EU가 수산물 무세화 불참 입장을 밝힌 바, 무세화에 합의해도 Critical Mass(교역량 기준 90%) 달성이 불투명

## 다. 협상 대응 방안

### □ 관세감축

- 수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를 위한 맨데이트 부여(대외경제장관회의 '06.6)
  - \* 맨데이트 : NAMA 협상 전체 품목(9,810개)의 일부 수산물(약 100개)에 대해서는 민감성(관세 감축률의 50% 감축) 확보 추진
- 협상 막바지 그린룸 회의(주요 협상국 대표 회의)에서 민감품목은 보호되어야 함을 발언하여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조
  - 양자 회의 등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민감성을 지속 표명 중
    - \*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도 민감품목(미국-섬유, 일본-신발 등)이 있으며 이를 그린룸 회의 또는 이해국간 양자협약(R/O)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
- 관세감축 계수 확정 등 협상 타결 후, R/O(Request & Offer, 이해국간 양자협약)를 병행, 민감성 확보
  - 국가별 양허표(C/S) 작성시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민감성(관세 감축 50% 적용)을 적용·제출
  - C/S 검정시 우리 수산물 민감성 확보 반대 국가와 R/O 추진

\* 협상 체계 : ① 모델리티 협상, ② 국가별 양허표(C/S) 제출, ③ 관심국 R/O (Request & Offer) 3단계로 구분, 현재 모델리티 협상에서 세부이행계획 수립 단계

### □ 미양허 품목 처리

- Mark-up 수치가 5~30%사이에서 결정될 경우에는 수용키로 한 바(대외경제장관회의, '06. 6) 지속 주시 필요

### □ 수산물 무세화

- EU, 일본, 대만 등과 공조, 수산물 무세화 참여 불가 입장 견지

## 가. 현황

- '01. 11월 WTO/DDA 출범시 수산보조금 논의를 협상 범위에 포함
- '02~'04 수산보조금과 자원고갈간의 연계성 규명 필요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
  - ※ 전세계 어족자원의 약 75%가 과잉어획 수준인 것으로 FAO 및 OECD 발표
- '04. 7월 어족자원의 감소 주 사유는 수산보조금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산보조금 특별 규제 필요성 합의
- '04~'06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 그룹(미국, 뉴질랜드 등 대다수 회원국)과 제한적 금지 그룹(한국, 일본, 대만, EC) 간 입장 대립 지속
- '07. 11. 30 양측간 입장 절충한 의장 협정문안 발표
- '07. 12월부터 의장안 기초로 협정문안 완성을 위한 긴박한 협상 진행 중(1~2월 회의 후 의장 수정안 제출 계획)
  - ※ 의장안의 보조금 금지목록에 면세유 포함
- DDA 규범의장 협정문(안) 중 금지보조금 주요 내용
  - 어선 의 취득, 건조, 수리, 개조, 현대화 및 조선소 시설 등
  - 어선의 제3국 이전, 입어료
  - 연료, 얼음, 미끼, 보험, 양륙, 가공활동 관련 비용 등 어업 운영비용
  - 해면어업과 관련되는 항구 등 기반시설 및 항 인근 가공시설
  - 해면어업 종사 자연인 법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어획물가격 보전
  - 기타 과도어획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 나. 추진실적

- '01년 DDA 협상개시 이후 '07. 12월까지 36차례 협상 참석
  - 면세유 등 우리나라 주요 수산보조금을 금지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
- 수산보조금 금지 최소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공조국과 협력하여 단독 또는 공동 제안서 제출(7회)
-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남획과 무관함을 논리적으로 대응
  -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 TAC 제도 도입의 성과인 자원회복 구체적 사례 설명을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어도 자원남획영향 없음을 주장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WTO/DDA 타결 대비 우리 어업에 민감한 면세유를 비롯하여 보험 등 어업운영비가 금지 최소화 되도록 협상력 집중
  - 외교통상부와 협력, 각 회원국과 공식·비공식 회의를 빈번히 개최하여 소규모어업보호 등 우리나라 입장의 합당성을 주장 설득
  - 부득이 일부 보조금 금지될 경우를 대비, 석유류관련 세법제도 개정과 아울러, 수산보조금을 WTO 금지예외 보조금으로 전환 추진

## 라. '08 추진계획

- 의장의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가 1월부터 세부적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각 조항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적극 대응
  - 1월 회의 (37차/1. 29~31): 금지조항, 금지예외, 개도국특별대우
  - 2월 회의 (38차/2. 18일주): 일반적 의무, 어업관리, 통보 및 감시
  - 3월 회의 (39차/3.26~28): 유예기간, 분쟁해결 절차 등
  - 4월 회의(40차/4.24~25): 소규모 어업, 각국 자원평가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어업관리 등
  - 이후 전년의 예로 미루어, 약 6~7차례 협상 개최예상

## 《 참고 2-1 》

### **FTA 협상 동향 (총괄)**

#### 1. 발효된 FTA

- 한-칠레 FTA(2004. 4. 1 발효)
- 한-싱가폴 FTA(2006. 3. 2 발효)
- 한-EFTA FTA(2006. 9. 1 발효)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한-ASEAN FTA 상품부문('06. 4. 28 협상, '07.6. 1 발효)

#### 2. 발효를 준비 중인 FTA

- 한-미국 FTA( '07.4. 2 협상타결, 6월 서명, 현재 비준 준비 중)

#### 3. 협상이 진행 중인 FTA

- 한-EU FTA('07. 5월 협상 개시, '08. 5월 7차 협상 예정)
- 한-캐나다 FTA('05. 7월 협상시작, '08. 6월 14차 협상 예정)
- 한-인도 FTA('06. 3월 협상시작, '08. 5월 10차 협상 예정)
- 한-멕시코 FTA('07. 10월 협상재개, '08. 5월 2차 협상 예정)
- 한-ASEAN FTA 투자분야 ('08. 7월 23차 협상 예정)

#### 4. 협상이 중단된 FTA

- 한-일 FTA('03. 12월 협상시작, 6차협상('04. 11.) 이후 중단)

#### 5.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FTA

- 한-MERCOSUR FTA('06년 공동연구 완료)
- 한-중국 FTA(현재 공동연구 추진중, '08. 2월 4차회의 예정)
- 한-GCC FTA('08년 중 협상 추진 예정)
- 기타 :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과 협상 추진 예상

## 6. FTA 협상 추진 동향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한·아세안 FTA					22차
한·캐나다 FTA					13차
한·멕시코 FTA			중단	재개(2차)	
한·일본 FTA	잠정중단				
한·미국 FTA			협상타결(서명)		
한·인도 CEPA			(10차)		
한·Mercosur	공동연구완료				
한·EU FTA			(7차)		
한·GCC	협상개시합의 ('08.7 개시예정)				
한·중 FTA	공동연구(5차)				

\* 공동연구 : ██████████ FTA 본협상 : ██████████

※ EFTA (유럽자유무역 연합 / 4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5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 EU(유럽연합 / 27개국)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 참고 2-2 》

**한-중 수산물 수출입 현황**

□ 對 중국 수산물 10大 수입 품목

HSK	품목명	'05-'07 평균 수입(천달러)	관세율	전체 수입 중 중국 비중(%)
1	0303796000 냉동 조기	151,419	10	99.8
2	0307591090 냉동 낙지	62,814	20	81.6
3	0306143000 냉동 꽃게	61,794	14	81.1
4	0303793000 냉동 갈치	50,460	10	67.6
5	0303799091 냉동 아귀	44,297	10	65.4
6	0306131000 냉동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	30,508	20	48.2
7	0307510000 활·신냉 문어	28,154	20	98.2
8	0304999010 기타어류(냉동연육)	27,185	10	30.9
9	0304291000 냉동 명태 피레트	25,968	10	84.1
10	0301999059 농어(기타)	25,586	10	90.1
	기타	501,216		
	<b>전체</b>	<b>1,009,401</b>		<b>36.9</b>

□ 對 중국 수산물 10大 수출 품목

HSK	품목명	'05-'07 평균 수출(천달러)	중국 관세율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
1	0307491020 냉동 오징어	35,700	12	42.4
2	0303520000 냉동 대구가루스	7,485	10	78.6
3	0303791000 냉동 명태	5,999	10	84.5
4	0303799010 냉동 삼치	5,481	10	58.2
5	0303799080 냉동 새꼬리민태	4,549	10	35.8
6	0303802010 냉동 명란	3,979	10	66.5
7	0307491010 냉동 갑오징어	3,264	12	64.9
8	0303390000 냉동 기타넙치류	3,177	10	74.1
9	0306149000 냉동 기타게	3,102	10	68.4
10	0307991190 냉동 기타연체동물	2,715	0	47.1
	기타	40,112		
	<b>전체</b>	<b>115,563</b>		<b>9.9</b>



《 참고 2-3 》

**한-EU 수산물 수출입 현황**

□ 對 EU 수산물 10大 수입 품목

HSK	품목명	'04-'07 평균 수입(천달러)	관세율	전체 수입 중 EU 비중(%)
1	1605909030 골뱅이	31,490	20	90.5
2	0304205000 냉동 피레트(참다랑어)	11,448	10	49.8
3	0303740000 냉동 고등어	9,823	10	19.6
4	2301201000 사료용 어분	6,815	5	13.9
5	0303450000 냉동 참다랑어	4,663	5	46.7
6	0303390000 기타 넙치류	2,544	10	14
7	1605909090 기타 연체	2,468	20	2.2
8	0303799070 볼낙 (적어 포함)	2,360	10	27.4
9	0303799098 냉동 이빨고기	2,105	10	44.1
10	0303799099 기타 냉동 어류	884	10	5
	기타	7,900		
전 체		82,500		3.4

□ 對 EU 수산물 10大 수출 품목

HSK	품목명	'04-'07 평균 수출(천달러)	EU 관세율	전체 수입 중 EU 비중(%)
1	0307491020 냉동 오징어	13,751	6.3	17.4
2	1604204010 게맛 생선묵	11,096	20	81.6
3	0303799099 냉동 기타 어류	8,430	15	26.1
4	0303420000 냉동 황다랭이	2,529	20	4.1
5	1605901030 조제 저장 처리한 바지락	2,487	20	85.7
6	0303799095 냉동 민어	2,122	15	70
7	1605101090 기타 게살(통조림, 훈제 외)	1,660	20	4.2
8	1604204090 기타 생선묵	1,474	20	19.2
9	0307491010 냉동 갑오징어	1,291	8	20
10	0307102000 냉동 굴	508	9	1.7
	기타	12,692		
전 체		58,000		5.8

※ 현재 추진중인 한-EU FTA 협상에서는 '04-'06 평균자료를 기준으로 함

《 참고 2-4 》

**한-인도 수산물 수출입 현황**

□ 對 인도 수산물 10大 수입 품목

HSK	품목명	'05-'07 평균 수입(천달러)	관세율	전체 수입 중 인도 비중(%)
1	0303793000 냉동 갈치	9,041	10	12.1
2	0304999010 냉동 기타연육	6,423	10	7.3
3	0306143000 냉동 꽃게	2,136	14	2.8
4	0306149000 냉동 기타게	1,646	14	5.1
5	0303799099 냉동 기타어류	815	10	2.1
6	1605209090 조제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662	20	1.6
7	0303420000 냉동 황다랑어	392	10	7.6
8	0306139000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375	20	0.3
9	0307491010 냉동 갑오징어	275	10	1.6
10	0304991090 냉동 명태(기타)	208	10	12.7
	기타	968		
	<b>전체</b>	<b>22,941</b>		<b>0.8</b>

□ 對 인도 수산물 10大 수출 품목

HSK	품목명	'05-'07 평균 수출(천달러)	인도 관세율	전체 수출 중 인도 비중(%)
1	2301209000 오징어 간 파우더	267	5	1.8
2	2301201000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	161	5	2.9
3	1603009000 엑스, 즙(어류 이외 기타)	83	30	2.9
4	0307911990 신냉 기타연체동물	18	30	0.2
5	0307491010 냉동 갑오징어	14	30	0.3
6	0304999010 냉동 기타연육	12	30	7.4
7	1504109000 어류의 간유(상어 이외 기타)	8	30	0.5
8	1604149000 다랑어, 가다랑어, 대서양버니토우(기타조제)	7	30	3.9
9	1302312000 분한천	5	30	0.1
10	0303798000 냉동 콩치(학콩치포함)	5	30	0.1
	기타	14		
	<b>전체</b>	<b>594</b>		<b>0.05</b>

《 참고 2-5 》

**한-멕시코 수산물 수출입 현황**

□ 對 멕시코 수산물 10大 수입 품목

HSK		품목명	'05-'07평균 수입(천불)	관세율 ( '08)	전체 수입중 멕시코 비중(%)
1	0303710000	냉동 정어리(냉동)	1,712	10	39.5
2	1605909010	조미 오징어	1,503	20	6.1
3	1605909090	기타 연체(밀폐, 훈제 외)	1,272	20	2.5
4	0306143000	냉동 꽃게	849	20	1.1
5	0306149000	냉동 기타 게	760	20	2.4
6	2301201000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	444	5	0.9
7	0303799095	냉동 민어	238	53	3.9
8	0307492000	오징어(염장, 염수장)	60	10	3.2
9	0307591010	냉동 문어	45	20	1.5
10	0302350000	참다랑어(신선, 냉장)	138	20	70.2
		기타	151		
<b>전체</b>			<b>7,076</b>		<b>0.3</b>

□ 對멕시코 수산물 10大 수출 품목

HSK		품목명	'05-'07평균 수출(천불)	멕시코 관세율	전체 수출중 멕시코 비중(%)
1	0303430000	냉동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우	3799	30	8.9
2	1605901010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446	23	3.3
3	0303420000	냉동 황다랑어	248	30	0.3
4	0307491020	냉동 오징어	228	30	0.3
5	2301209000	갑각류 등의 분, 조분, 펠리트	79	18	0.5
6	1212201010	마른 김	48	10	0.2
7	0306139000	냉동 기타 새우와 보래새우	29	30	0.3
8	0307491010	냉동 갑오징어	25	30	0.5
9	1605901020	홍합(밀폐용기에 넣은 것)	19	23	1.8
10	1605901030	바지락(밀폐용기에 넣은 것)	17	23	0.5
		기타	1		
<b>전체</b>			<b>4,938</b>		<b>0.4</b>

※ 현재 추진중인 한-멕시코 FTA 협상에서는 '04~' 06 평균자료를 기준으로 함

《 참고 2-6 》

**한-캐나다 수산물 수출입 현황**

□ 對 캐나다 수산물 10大 수입 품목

HSK		품목명	'05-'07 평균 수입(천달러)	우리나라 관세율	전체 수입 중 캐나다 비중(%)
1	0306220000	바다가재(냉동제외)	16,000	20	84.1
2	0306139000	냉동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	4,654	20	4.7
3	1605909030	골뱅이(기타 조제)	4,089	20	11.6
4	0303799092	냉동 먹장어	3,369	10	41.1
5	0306120000	냉동 바다가재	2,453	20	87.4
6	0303799091	냉동 아귀	2,439	10	3.6
7	0307991190	냉동 기타 연체동물	1,835	20	19.5
8	0303799093	냉동 홍어	1,702	10	6.2
9	0303740000	냉동 고등어	1,495	10	4.1
10	0303799099	냉동 기타어류	1,384	10	3.5
		기타	8,115		
전체			47,537		1.7

□ 對 캐나다 수산물 10大 수출 품목

HSK		품목명	'05-'07 평균 수출(천달러)	캐나다 관세율	전체 수출 중 캐나다 비중(%)
1	2106904010	조제 김	1,513	10.5	4.2
2	0307491020	냉동 오징어	1,290	0	1.5
3	1212202020	염장 미역	565	0	7.2
4	1604204090	생선묵(기타)	469	7	5.7
5	0306241090	기타 게(활, 신선, 냉장)	337	5	5.4
6	0305592000	건조 멸치	311	0	5.6
7	1605901010	굴(통조림)	294	2	2.2
8	1212201010	건조 김	238	0	1.2
9	2106904090	조제 식용 해조류(김 이외)	237	10.5	12.0
10	1212202024	건조 미역	212	0	1.9
		기타	2,312		
전체			7,778		0.6

※ 현재 추진중인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는 '04~' 06 평균자료를 기준으로 함

《 참고 2-7 》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 추진배경

-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10년간 119조원 투입)발표와 병행한 수산분야 대책 ※ 법적근거 없음

□ 주요내용

-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 및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어촌실현
  - 생산중심에서 소비지향의 어업으로 전환
- 주요 정책과제
  - 자율관리어업 확대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제 개선
  - 위생관리강화 등 소비자지향적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 직접지불제 도입 등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립
  - 인력육성, 연구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 다기능 어항개발 등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등

□ 수산업·어촌투융자계획

-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 12.4조원
- 예산내역별 연도별 투융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2004	2005 ~ 2009					'10~'13	'04~'13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9,656	55,822	10,176	10,586	10,981	11,612	12,467	58,963	124,441
생산기반 조성		4,426	23,494	4,394	4,681	4,684	4,721	5,014	24,716	52,636
유통개선		1,153	7,537	1,307	1,575	1,538	1,670	1,447	6,825	15,515
기술개발및 인력양성		369	2,180	433	444	418	438	447	2,429	4,978
부담경감 및소득보전		3,066	18,308	3,340	3,223	3,539	3,848	4,358	19,382	40,756
해양환경		617	3,199	655	603	623	650	668	3,864	7,680
수급안정 기타		25	1,104	47	60	179	285	533	1,747	2,876

《 참고 2-8 》

**수산진흥종합대책(2005)**

□ 추진배경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99 최초 수립)
- 수립근거: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8조

□ 주요내용

-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정부주도 ⇒ 민간자율
  - 일괄지원 ⇒ 선택과 집중
  - 공급중심 ⇒ 소비·수요중심
- 중점추진과제 (8개 분야)
  - WTO/FTA 협상 대응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산업 실현 - 선진어업질서의 정착
  -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 소비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 수산진흥종합대책 투융자계획

- 5년간('05~'09) 총 투융자 규모 5.6조원
- 예산내역별 연도별 투융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 연 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55,822	10,176	10,586	10,981	11,612	12,467
생산기반 조성	23,494	4,394	4,681	4,684	4,721	5,014
유통개선	7,537	1,307	1,575	1,538	1,670	1,447
기술개발및 인력양성	2,180	433	444	418	438	447
부담경감 및소득보전	18,308	3,340	3,223	3,539	3,848	4,358
해양환경	3,199	655	603	623	650	668
수급안정 기타	1,104	47	60	179	285	533

## 《 참고 2-9 》

### 한·미 FTA 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07.4.2 타결)

#### □ 수산물 관세 양허안

- 수산물 관세 양허단계는 즉시,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으로 합의
  - 경쟁력 유지가 가능 품목은 단계별(즉시, 3년, 5년, 10년) 이행기간 확보, 주요 민감품목은 12~15년의 유예기간 확보

\* 냉동명태 : 15년(10년 현행+5년 감축, TRQ), 냉동민어 : 12년(8년 현행+4년 감축, TRQ), 냉동넙치 : 12년(8년 현행+4년 감축, TRQ), 냉동 고등어 : 12년(8년 현행+4년 감축)

#### □ 관세특례제도

- 조정관세는 관세의 정의에 포함시켜 실행관세로 인정하기로 합의
- 기존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 제도도 존치하기로 합의

#### □ 수출용 활넙치 체장규제(22인치 이상 요구) 해제

- 수출용 활넙치가 양식산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및 Tag 부착방식으로 체장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

#### □ 미국 어장 진출 및 어업투자 지분 확대

- 정례적으로 합동 어업위원회(Joint Fisheries Committee)를 개최하여 동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

#### □ 수협의 금융서비스 협정문 적용제외

-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공제사업은 FTA가 아닌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

\* 단, 금융감독기관 지급여력기준은 준수하고 협정 발효일부터 3년간 유예

《 참고 2-10 》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주요내용**(‘07.6.28 발표)

- 
-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병행
- 
- 직접적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실시
    - 소득보전직불(지원기간 : 7년) : 사후지정 방식을 도입하여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확대
    - 폐업지원(지원기간 : 5년) :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지원
  - 수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지원 병행
    -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기간 : 10년) : 피해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품질면에서 수입산과 차별화
      - 명태·민어(원양), 고등어·오징어(연근해), 넙치·볼락·뱀장어(양식)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유통설비 및 시설 현대화
    -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지원 및 어촌 소득기반 확충 지원
      - 조건불리 지역,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지원 보전제 등 수산보전제 신규 도입
      - 수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어업인 참여의 자율관리 확대, 신 성장 동력 육성 및 어촌 소득 기반 확충 사업 실시
  - 한미 FTA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 '08~'13년 투융자분은 「수산업·어촌 종합대책」('04~'13년 12.4조원)을 수정·보완하여 투융자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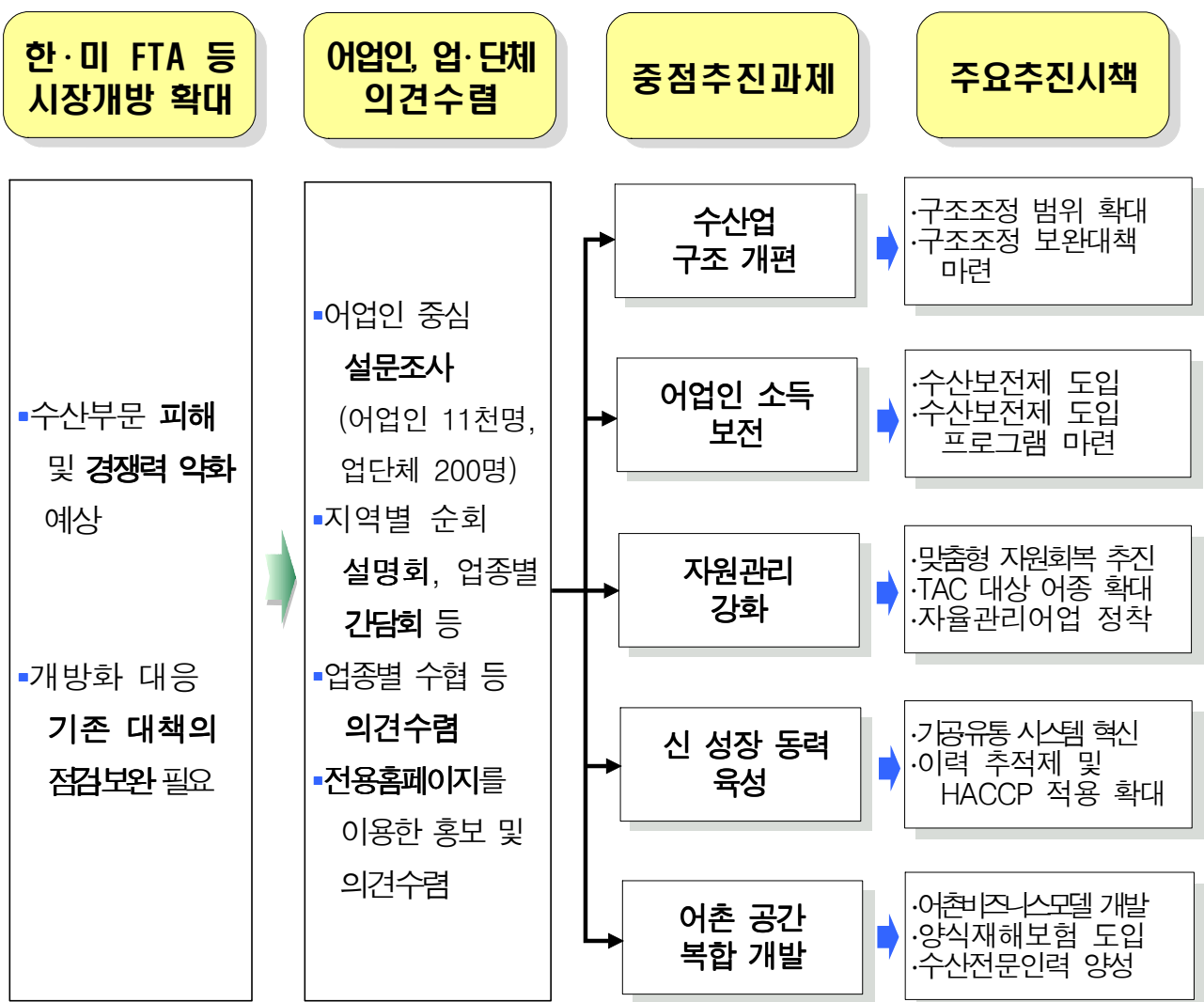


《 참고 2-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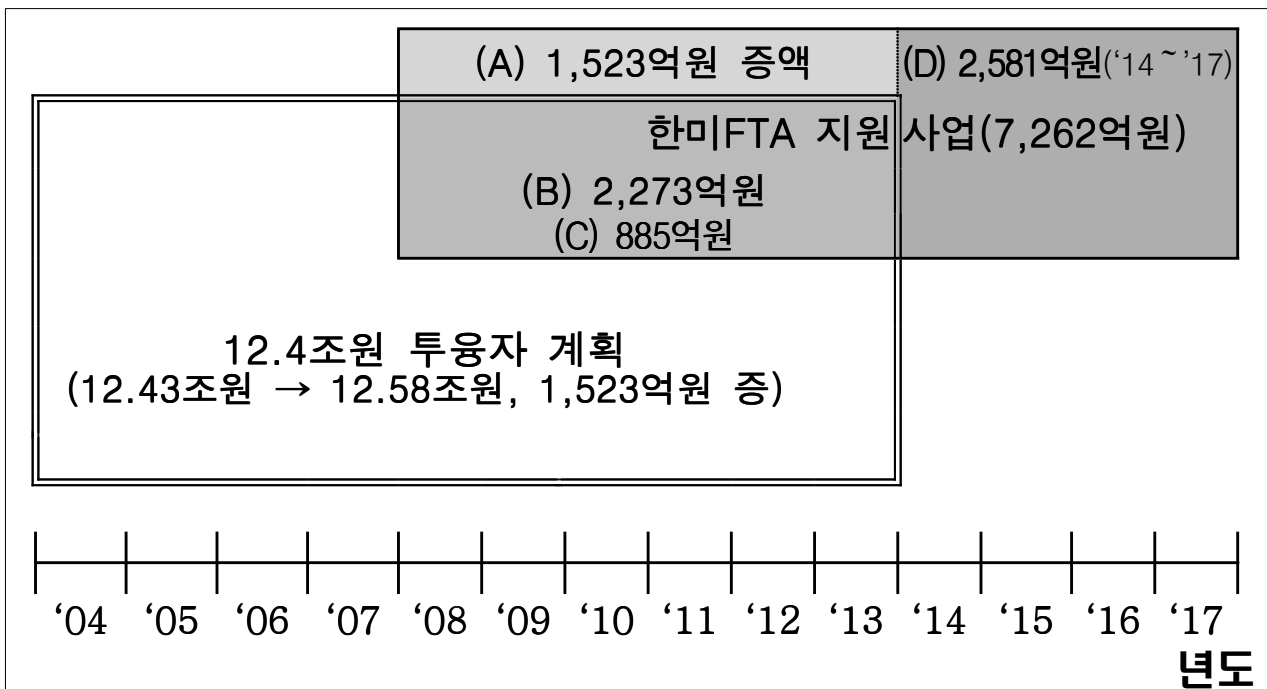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2007)**

- 한·미 FTA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개방친화형 신규사업을 대폭 발굴·반영하여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수정·보완
- 기존 「수산업·어촌 종합대책(2004)」 편제를 개편하고 수산보전제 등 신규사업 14개를 발굴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폐지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수정 보완 방향



- '08 ~ '13간 한·미 FTA 대책에 따른 총 소요는 4,681억원, 당초 투융자 대비 순증액은 2,408억원(2,273 → 4,681억원)
- 순증액 2,408억원은 12.4조원 투융자 계획 자체 조정을 통해 885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523억원은 추가 확보하는 모습
- 12.4조원 투융자 계획은 투자실적 평가에 따른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한·미 FTA 대책소요 추가반영 등을 통해 12.4조원에서 12.6조원으로 0.2조원 수준 증액



- \* (A) 1,523억원 : '08 ~ '13간 12.4조원 계획 증액 규모
- \* (B) 2,273억원 : '08 ~ '13간 12.4조원 계획에 기 포함된 한미 FTA 대책사업 규모
- \* (C) 885억원 : '08 ~ '13간 기존 12.4조원 사업 중 투융자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하고 한미 FTA 대책사업을 증액한 규모
- \* (D) 2,581억원 : 12.4조원 계획 종료 이후 한미FTA 투융자 지원 규모
- \* (A)+(B)+(C)+(D) : 7,262억원(한미FTA 투융자사업 규모)

《 참고 2-12 》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단위 : 억원)

구 분	'04~'07			'08~'13			합계('04~'13)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합 계	41,812	41,812	-	82,522	84,045	1,523	124,334	125,857	1,523
수산업 구조개편	4,713	4,713	-	8,854	8,472	△382	13,567	13,185	△382
어업인 소득보전	10,685	10,685	-	15,534	18,615	3,081	26,219	29,300	3,081
자원관리 강화	8,480	8,480	-	19,832	17,414	△2,418	28,312	25,894	△2,418
신성장동력 육성	7,457	7,457	-	15,071	16,641	1,570	22,528	24,098	1,570
어촌공간 복합 개발	10,477	10,477	-	23,231	21,597	△1,634	33,708	32,074	△1,634
FTA 직접 피해지원	-	-	-	-	1,306	1,306	-	1,306	1,306

《 참고 2-13 》

**수산분야 FTA '08~'17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b>계</b>	<b>726,226</b>
<b>보 조</b>	672,526
<b>용 자</b>	53,700
<b>1. 수산발전기금</b>	<b>130,600</b>
< 신규사업 >	130,600
□ 소득보전직불(보조)	23,100
□ 폐업지원(보조)	53,400
□ 품목별 경쟁력강화	54,100
- 관리회사제도 도입(용자)	20,200
- 원양어선설비현대화(용자)	24,000
- 활어운반선건조(용자)	6,000
-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용자)	3,500
- 활어 수출확대를 위한 특수차량 등 지원(보조)	400
<b>2. 기존회계</b>	<b>595,626</b>
일반회계	245,094
농특회계	317,590
균특회계	7,866
기금일반	25,076
< 신규사업 >	266,985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일반, 보조)	221,779
□ 수산보전제	27,000
-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농특, 보조)	6,000
- 조건불리 지역보전제(농특, 보조)	21,000
□ 기타	18,206
- 수산업컨설팅지원(농특, 보조)	2,540
- 토속어류산업화센터(농특, 보조)	10,000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균특, 보조)	2,966
- 연근해어업체질개선을위한 핵심전략연구(일반, 보조)	2,700
< 기존사업 증액 >	328,641
□ 총어획량 제도 운영(일반, 보조)	20,615
□ 수산물가공물류센터건립(농특, 보조)	9,000
□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농특, 보조)	28,600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농특, 보조)	135,100
□ 해양폐기물정화(지자체)(기금, 보조)	25,076
□ 기타	110,250
-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건립(균특, 보조)	4,900
-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농특, 보조)	105,350

《 참고 2-14 》

## 도입 가능 수산 보전제

자원관리형 및 구조개선형 수산 보전제

종류	추진방향	대상	어업인 의무	시행 연도	근거 규정
휴어	휴어를 원하는 어업인에게 휴어기간 동안 소득 감소분 지원	휴어 및 휴어 조건을 합의한 어장의 어업인	휴어약정 체결 어장정화	'10년	수산자원관리법(제정 예정)
고령 어가 은퇴	경쟁력 없는 어가의 은퇴경로 마련 및 노후생활 안정화	고령의 일정기간 이상 양식어업 종사자	은퇴를 조건으로 어업권 포기	'11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형 수산 보전제

종류	추진방향	대상	어업인 의무	시행 연도	근거 규정
친환경 부표	친환경 부표사용할 경우 일반 부표 사용 가격 차이를 보조	친환경부표 사용 어업인	친환경 부표 사용	'09년	어장관리법
어장 휴식	휴식년 동안 감소 어업소득 일정분 지원	휴식 조건을 합의한 어장의 어업인	어장정화	'10년	어장관리법

다원적 기능형 수산 보전제

종류	추진방향	대상	어업인 의무	시행 연도	근거 규정
조건 불리 지역	도서지역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여 탈어업을 방지하고 어촌사회를 유지	도서지역 어업인	마을 공동 기금 조성 어장청소	'10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재해 예방	자연재해 사전예방으로 어업경영 안전 도모	일정거리 이상 피항 어선	재난구호	'10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 《 참고 2-15 》

### 우선도입 수산보전제

#### □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수산경영과)

##### ○ 도입 필요성

- 조건불리지역의 어가소득 보전을 통한 지역·산업간 소득격차 해소로 어업인의 급속한 지역이탈 방지

##### ○ 추진방향

- 도서개발촉진법상 지정도서(376개)의 어업인 또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되, 어업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인 경우에 실시

##### ○ 추진기간

- 도상연습계획(안) 마련 및 평가: '07. 9월 초~10월 말
- 세부시행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 '08~'11년
- 본사업 실시 : '12~'17년

#### □ 친환경부표 지급 수산보전제 (양식개발과)

##### ○ 도입 필요성

- 저밀도 스티로폼 부자는 파도, 태풍 등으로 쉽게 손괴되어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로 대체 필요

##### ○ 추진방향

-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이용하는 양식 어업인에게 일정 부분 지원

##### ○ 추진기간

- 도상연습계획(안) 마련 및 평가: '07. 9월 초~10월 말
- 시범사업 실시 : '08년
- 본사업 실시 : '09~'11년

## 《 참고 2-16 》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황

#### □ 개정이유

-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산발전기금에 자유무역협정피해지원사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수산업에 안정적·체계적인 자금지원

#### □ 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계정을 신설(시행령 제21조의2의제3호)
  - 수산발전기금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계정을 신설하여 기금내 타 사업과 혼용을 방지
  - \* 수산발전기금 : 한·일 어업협정 체결('99.1)로 어업인지원특별법을 제정('99.9)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 □ 추진현황

- '99. 12. 7 : 시행령 제정(이후 '07. 6. 29까지 총 8회 개정)
- '07. 2월 : 개정시안 마련
- '07. 3. 2~3. 15 : 관계부처 1차 협의
- '07. 7. 5~7. 27 : 관계부처 2차 협의
- '07. 7. 20~27 : 부패영향평가
- '07. 8. 3~8. 23 : 입법예고(관보)
- '07. 8. 24~9. 17 : 법제처 심사
- '07. 9. 20~9. 21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07. 10. 4 : 대통령 재가 및 공포

\* 이 시행령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참고 2-17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농산물·수산물의 정의 신설

- 농산물·수산물의 구분에 따라 지원방법 또는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정의 필요
-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 ○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대책 보완

- 지원요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원범위 확대
- 지원사업에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촉진 등 추가
- 피해산정 기준·방식과 보조·융자사업 지원의 기준·절차·기간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 여건변화에 따른 지원요건 등의 정비를 통하여 농어업 경쟁력 상승

##### ○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요건 보완

-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가격의 하락기준”에서 “생산액의 감소기준”으로 변경
-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허용 지원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국제무역분쟁을 미연에 방지

#####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통합 조성·운용

- 개별적이 아닌 전체 체결국가를 기초로 지원기금 통합 조성·운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까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
- ※ 기금운용의 신속성과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추진 가능



## 《 참고 2-18 》

### 주요 민감품목(100개)

#### < 민감품목 전체 내역 >

##### < 조정관세 부과 9개 품목 >

- 냉동민어(57%) 등 고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억제 도모 품목

##### <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31개 품목 >

- 어류 양식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이 큰 활어류 11개 품목
- 해조류 양식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이 큰 20개 품목

##### < 신선·냉장, 냉동 : 0302류 25개 품목, 0303류 18개 품목, 0306류 1개 >

- 국내생산량, 종사자 등을 고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 < 기타 가공품 : 16개 품목 >

- 종사자, 경쟁력 등을 고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 일부 품목은 어업,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조정관세 부과 9개 품목 >

- 냉동민어, 새우젓, 활돔, 활농어, 활민어, 활뱀장어, 냉동꽂치,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 < 양식·어선어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31개 품목>

- 활넙치, 활볼락, 활복어, 활방어, 활붕장어, 활능성어, 활송어, 활노래미, 활기타어류, 실장어, 갯장어

##### < 신선·냉장, 냉동 : 0302류 25개 품목, 0303류 18개 품목, 0306류 1개 >

- 신선·냉장(갈치, 고등어, 넙치, 돔, 대구, 아귀, 정어리, 가자미, 삼치, 방어, 붕장어, 복어, 꽂치, 기타어류, 오징어, 갑오징어, 기타연체, 기타새우, 꽃게, 기타게, 대게, 굴, 기타, 피조개, 바지락, 기타수생동물)
- 냉동(조기, 갈치, 고등어, 옥돔, 볼락, 새우살, 새우, 전갱이, 가오리, 기타돔, 서대, 낙지, 갑오징어, 기타어류, 바지락, 명태 피레트, 기타어류 피레트, 기타어류 연육)

##### < 기타 가공품 : 16개 품목 >

- 멸치(건조), 오징어(건조), 명태(건조), 새우와보리새우(건조), 기타어류(건조), 오징어(훈제), 오징어(염장), 기타연체(염장), 기타어류(염장), 참치 통조림류 7개

## 《 참고 2-19 》

### WTO-DDA/FTA 협상 동향

#### □ WTO 체제 출범('95.1)

- 우루과이 라운드 보다 진전된 무역자유화를 위해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출범('01.11)
  - 합의안 도출 실패로 협상 중단('06.7) 후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협상 정상화 선언('06.11)
  - 다보스 포럼에서 26개국 통상장관이 협상 전면 재개 합의('07.1.27)
    - \* 부시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 의회에 TPA(신속협상권한)의 연장을 요청('07.1.31)
-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관세와 보조금 분야가 논의 중
  - 수산물 관세는 무세화 여부 및 관세인하율에 대해, 수산보조금은 금지/허용 항목에 대해 협상 중
    - \* 수산물은 수입자유화를 완료하고('97.7.1) 평균 18%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

#### □ FTA의 전세계적 확산

- '06.7월 현재 총 197건의 FTA 중 '96년 이후 137건 체결(69.5%)
  - 우리나라는 칠레('04.4 발효), 싱가포르('06.3), EFTA('06.9), 미국('07.4)와 FTA를 체결 하였고, ASEAN과는 상품협상 타결('06.4)
    - 캐나다('05.7~), 멕시코('06.2~), 인도('06.2~), 미국('06.6~) 등과 협상진행 중
      - \*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주엘라) 및 중국과 산관학 연구가 진행 중
- ⇒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자 국제적 추세,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 원양산업과

1. 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 구축 .....	107
2. 수산분야 해외 진출 활성화 .....	108
3. 원양어업 관련회사 제도도입 추진 .....	110
4. 해외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	111
5. 노후 원양어선 중고선 도입 지원 .....	113
6. 원양어선 등 연료비 절감시스템 개발 추진 .....	114
7. 해외 신어장 개발지원 및 자원조사 .....	115
8. 러시아수역 명태 등 어획쿼터 확보 추진 .....	117
9. 한·러간 불법수산물 교역방지 협정체결 추진 .....	119
10.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	121
11.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 관리 .....	124

## 《참고》

《3- 1》 원양참치어업 생산·수출현황 .....	128
《3- 2》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황 .....	129
《3- 3》 해외 수산펀드 조성의 타당성 .....	131
《3- 4》 해외 진출 수요(설문) 조사 결과 .....	132
《3- 5》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조업 실적 .....	133
《3- 6》 다랑어의 분류 및 형태적 특징 .....	134
《3- 7》 연도별 조정관세율 현황 .....	137
《3- 8》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	138
《3- 9》 원양어업 생산 추이 .....	141
《3-10》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	142
《3-11》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	143
《3-12》 원양업체 현황 .....	144
《3-13》 원양어업 업종별·톤급별 현황 .....	146
《3-14》 원양어업 선령별·업종별 현황 .....	147
《3-15》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	148
《3-16》 원양업체별 선박 보유 현황 .....	149
《3-17》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	150
《3-18》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	151
《3-19》 수산물 표준품명 및 필수규격(45개 품목) .....	152
《3-20》 한국원양협회회원사 현황 .....	154



### 가. 현 황

- 국제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등으로 원양어업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 어선 1~2척 보유업체가 전체의 65%, 자본금 1억원 미만 38개 업체(35%)
- 단순 어획만 하는 원양어업에서 탈피하여 해외에서의 운반·양식·가공·유통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는 원양산업으로 진출 필요

### 나. 추진실적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07.8.3) 및 하위법령 제정추진
  - 원양산업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 원양산업화 연구개발을 위한 로드맵 마련 추진('08~ )
  - 선상 가공기술, 원양어획물을 이용한 신상품 등 연구개발 추진을 위함
-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 설립 추진
  - 원양산업 해외투자정보 제공, 명예해양수산물관 운영 등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해외수산자원 개발을 통한 국부 창출 등 원양산업을 해양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 상품 원자재 공급에서 상품 공급형으로 시장전략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 라. '08 추진계획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08. 2)
  - 「원양산업협회」를 설립하여 원양산업 지원기관으로 육성
-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구축, 명예해양수산물관 운영 등

## 가. 현 황

- WTO/FTA 협상진전에 따른 시장개방 추세를 우리 기업이 세계 수산시장 및 해외 양식 적지를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
  - 향후 국가간 식량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식량 기지를 구축, 식량안보 위협에 대비할 필요
  - \* 세계 식량 생산 추이 (FAO) : ('04)26.8억만톤 → ('06)23.8 → ('07)20
- 국내적으로 고유가, 수산자원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 마련 및 글로벌 수산기업으로 성장 동기 부여
  - 투자정보 제공 및 자본력이 뒷받침이 될 경우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은 충분

## 나. 추진 방향

- 해외 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 마련된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비점을 발굴 보완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해외투자 정보 센터'를 구축하여 국가별 투자정보 등에 대한 세부 자료, 투자 사업의 예상 수익률 분석 등을 위한 자료 제공
  - 현지 실사를 통한 유망 사업 및 투자 최적지 등을 선정하고 해외 수산 투자모델 마련
- 「해외수산 펀드」 조성(5천억~1조원)하여, 정부 예산을 대신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생산·가공·유통·M&A 등의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하되, 정부는 민간 자금의 유입 장애 극복 장치(씨드머니 - 수발기금 등 확보) 마련

□ 수산기업 및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수산투자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정보 공유 및 해외 수산투자 연속성 확보

○ 협의체를 통해 「기초조사 → 정보공유 → 프로젝트별 관심업체 모집 → 타당성 조사 → 투자실행」을 체계적으로 추진

○ 금융·수산·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사업 프로젝트별 투자 관심 기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투자단」 구성

\* 정부는 투자 대상국에 대한 사업권 확보 등 MOU 체결 지원

## 다. 향후 추진계획

□ 해외 수산 투자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추진('08.2~7월)

○ 수산분야 해외 진출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파악

○ 해외 진출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사업화 가능한 해외 수산투자 모델 개발

○ 펀드 조성 타당성, 재원 조달 방안 등 펀드 조성 방안 마련

□ 「해외투자 정보제공 센터」 구축 및 「해외수산투자 협의체」 운영 ('08.8~12월)

□ 「프로젝트 투자단」 구성 및 해외 수산 펀드 조성('08.8~)



### 가. 현 황

- 영세한 원양선사가 개별적으로 원양어업에 수반되는 어획물운반, 정보수집, 마케팅 등을 수행함에 따른 경영비용 과다 발생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는 「원양어업 관련회사」를 지원하여 원양선사는 생산에만 주력하고, 관련회사에서 수집·보관·운반·판매 등을 담당하여 경영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나. 추진실적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07.8.3) 으로 지원근거 마련 및 예산확보
  - 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원양어업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 관련회사 지원예산 확보(총 2개소) : 관련회사 개소당 101억원을 3년간 지원('08년 1개소 50억원)
  - 시설자금 : 56억원(융자 70%, 자담 30%) 연3%, 5년거치 10년상환
  - 운영자금 : 45억원(융자 100%) 연3%, 1년상환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원양어업 관련회사를 지원하여 해외수산자원 개발 적극 추진

### 라. '08 추진계획

- 한미 FTA 발효시 사업자 선정,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추진('08 ~ )

가. 현 황

□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개요

- 해외수산자원을 개발, 수입하는 자에 대한 관세감면으로 원양 어업발전과 국내수산물 수급 안정도모

□ 관세감면 추천근거 및 대상·방법·요건

- 근거 : 관세법 제93조의7호(특정물품 면세)
- 대상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자가 외국인과 합작하고 합작지분의 49%이상을 소유

나. 추진실적

□ 관세감면 합작진출 업체 : 5개국, 18개사 38척

- 알젠틴 4개사 9척, 러시아 13개사 21척, 칠레 2개사 6척, 필리핀 1개사 1척, 우루과이 1개사 1척

□ 합작수산물 반입현황(최근 3년간)

(단위 : 톤)

연 도	합 계	명 태	오징어	새 우	홍 어	기 타
'05년	151,733	139,387	977	43	1,856	9,470
'06년	148,933	130,617	2,998	39	2,565	12,714
'07년	206,403	194,502	2,725	22	1,306	7,848
<b>평 균</b>	<b>169,023</b>	<b>154,835</b>	<b>2,233</b>	<b>35</b>	<b>1,909</b>	<b>10,011</b>

\* 평균 연간 관세 감면액 : 447억원(환율 : 1\$=940원)

## 다. 증장기 정책방향

- 관세감면 추천물량 및 조정관세가 유지되도록 재경부와 협의 추진
- 해외 수산물의 원활한 국내 공급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

## 라. '08 추진계획

- 재경부와 협의된 물량을 업계에 배정 관세감면 추천

(단위 : 톤)

연 도	합 계	명 태	오징어	새 우	홍 어	기 타
'08년	185,763	175,052	2,453	20	1,175	7,063

\* 관세감면 예상액 : 494억원(환율 : 1\$=940원)

## 가. 현 황

- 1979년 원양어선계획조선사업을 1989년까지 지원한 이후 신조 대체가 전무하여 어선의 노후화로 원양어업의 기반상실 우려
- 참치어선의 노후화로 업체 채산성이 저하되고 대만 등과의 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2003년부터 신조 대체사업 지원추진
  - '07년 참치어선 선령(193척) : 20년이하 95척(49%), 21년이상 93척(48%)
  - ※ 원양어선 선령(387척, '07년) : 20년이하 122척(32%), 21년이상 263척(68%)

## 나. 추진실적

- 노후 원양어선대체 지원사업
  - 원양 참치선망 어선 신조 : 2척
    - 2004년도 1척(115억원), 2006년도 사업으로 1척(149억원) 건조
  - 원양 참치연승 중고선 1척 도입(2007, 8억원)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업종 확대 강구
  - 기존 참치업종 외 타 업종도 수요조사 실시로 예산반영 추진
  - WTO-DDA 수산보조금 폐지 및 감축에 대비하여 사업 수요의 적극 창출로 원양어업의 생산기반을 유지

## 라. '08 추진계획

- 노후 원양어선대체 지원사업 추진
  - 참치연승 중고선 도입자금 지원(3척, 24억원)

### 가. 현 황

-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급등으로 원양어업 등 어선어업 분야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업경영 채산성 악화
- 원양어선 등에서 사용중인 경유를 중유급의 저질유로 대체할 수 있는 연료비 절감장치의 사용 한계치 연구 추진

### 나. 추진실적

- 국제유가 급등으로 원양어선의 연료비 절감연구 추진('05.8 ~ '06.2)
  - MF30 혼합유 사용으로 원양트롤 연간 약 264백만원(척) 절감
  - '07년까지 원양어선, 예인선, 준설선 등 약 200척 설치(528억원 절감)
- 연료비 절감시스템 사용 확대를 위한 추가 기술연구개발 추진
  - 연구기간 : 2006. 8 ~ 2008. 8(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과제 연구비 3억원)
    - 1년차('06.8 ~ '07.8), 2년차('07.8 ~ '08.8)
  - 연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 중고속엔진사용 원양참치어선, 근해어선까지 사용 확대를 위한 연구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연료비 절감시스템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 실시로 원양어선 등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추진

### 라. '08 추진계획

- 어선 등 연료비 절감시스템 사용 확대를 기술연구개발(2년차) 추진

- 선박 규모별(마력, 연료소모량) 저급한 혼합유 사용을 위한 연료비 절감장치의 시스템 표준화 및 성능개선 연구 추진

가. 현 황

-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 및 조업여건 악화로 해외어장 확보애로
  - '94.11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200해리 해양 분할체제 정착 및 연안국들은 자원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규제
  - 공해상 조업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기구에 의한 조업 규제 강화
- 신어장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상존으로 투자 기피
  - 최근 어획량 감속 및 유가급등 등 원양업계 경영악화로 신어장 개발 실패시 위험부담 가중으로 투자기피
  - 어장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개발어종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데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홍보 및 유통체계 구축 등 투자비 부담 필요
- 해외어장자원조사 사업비 현황(총152억원)

(단위 : 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계	8	15	29	29	29	22	20

나. 추진실적

- '01년부터 '07년까지 13개소에 대하여 152억원을 투자하여 해외 어장조사
  - 북태평양 서부공해 콩치어장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상업조업중이며 그동안 동 수역에서 약 1,140백톤(1,164억원)을 생산하는 성과거양
  - \* 2007년도 47해구 메로 자원조사 성공 및 2008년도 북태평양 미드웨이 참치 어장(2008 ~ 상업조업 계획)
- 해외어장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05 ~ '07년, 6억원)
  - 체계적인 해외어장 조사 및 정보관리 등 활용을 위한 홍보 등('08.1 ~ )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해외어장 확보
  - 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원관리형 조업형태로 전환하여 국제질서에 부응한 원양 조업국 위상 정립
  - 우리나라 국익확보를 위한 해외어장확보는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의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 단계별로 해외 신어장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지속 추진
  - 1단계('01 ~ '05) : 주변국 어업규제에 대비한 대체어장 개발
  - 2단계('06 ~ '08) : 관·민 합동, 해외어장의 합리적 이용개발 사업
  - 3단계('09 ~ ) : 민간주도에 의한 해외어장 합리적인 이용개발 사업
- 자원보유국가(기구)와 협력 활성화 통한 안정적인 어장 확보
  - 자원보유국가와 긴밀한 연대관계 구축하고,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 자원보유국(기구)의 어업실태, 조업여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인에게 정보제공

## 라. '08 추진계획

- '07년 북태평양미드웨이 참치어장 자원조사 완료('08.4까지)
  - 사조산업 3척 : 척당 300백만원 지원(765천원 개산급 지급완료)
    - \* 2007년도 해외어장조사 결과에 대한 업계설명회 개최(2/4분기)
- '0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
  - 해외어장 예비조사수역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2/4분기)
  - FAO 41해구(민대구) 및 베트남 EEZ(갈치 등) 사업추진('08.6 ~ 12)
  - 해외어장 자원조사 평가 및 업계 설명회 개최(12월)



가. 현 황

- 러시아 경제수역(EEZ)은 우리 명태트롤어선의 유일한 조업어장
  - '91년 한·러 어업협정 체결로 러시아 EEZ 조업 시작
- 러시아는 명태 자원감소 및 자원보호를 이유로 총허용어획량 (TAC)을 불규칙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추세
  - \* 명태 TAC 동향: ('03) 1,144 → ('04) 909 → ('05) 1,074 → ('06) 1,072→ ('07) 1,239
- '91년 한·러어업협정체결에 따라 매년 어업위원회를 개최(17차례) 하여 정부쿼터 배정 및 입어조건 등 협의

(단위 : 천톤)

년 도 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입어쿼터	100	1,554	77	77	74	74	67	56	54	61	55	52	40	32	33	34	36

\* 입어쿼터 어종(8종) : 명태, 대구, 콩치, 오징어, 가오리, 청어, 복어, 가자미

나. 추진실적

- 우리측은 장기적인 한·러어업협력 방안을 적극 제안하였으나 미 합의('03.11 한·러어업위원회 및 '04.9 해양수산분야 실무협의)
  - 우리측은 10년간 매년 5만톤의 장기쿼터 제공시 우리 원양업체가 극동지역에서 수산물 가공시설에 투자의사 표명(매년 5백만불씩 10년)
  - 러측은 매년 쿼터를 배정하는 현실에서 장기쿼터 배정 불가표명
- '04.9.21 한·러 정상 공동선언문에 '우리어선의 안정적 조업' 내용 포함

### < 합의문 >

“양측은 러시아의 어업자원상태를 적절히 고려하여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05.11 부산 APEC 정상회담 계기로 러시아 수역 명태 추가쿼터 확보

\* 추가쿼터 확보 : '05(명태 5,000톤), '06(명태 5,750톤, 청어 75, 오징어 300톤)

□ '07.12 제17차 한러어업위원회(서울)에서 '08년도 러시아 수역 쿼터 확보

○ 총 36,615톤(명태 20,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2,650톤, 꽁치 5,000톤, 가오리 800톤, 청어 250톤, 복어 115톤, 가자미 300톤)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대 러시아 어업협력 강화

○ 한·러 어업위원회 개최시 장기·안정적인 쿼터 확보 경주

□ 러시아수역 명태 등 어획쿼터 축소에 대한 대책추진

○ 우리어선의 오호츠크공해 조업자제와 연계한 대체어장으로 북 쿠릴해역에 대한 쿼터 재배정 요구 및 베링해 쿼터 확대 요청

○ 명태, 오징어, 꽁치 등 3개 어종의 대구 등 다른 어종에 대한 정부간 쿼터 확보 지속 추진

### 라. '08 추진계획

□ 안정적인 조업쿼터 확보를 위해 불법교역 협정 연계추진

□ 러시아 수역 입어조업선에 대한 위반조업 강화 등 대책 마련추진

□ 제18차 한러어업위원회 개최대비 사전준비

## 가. 현 황

- ○ 러시아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불법수산물이 "국부유출"로 판단하고, 우리측에 불법교역 방지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 자국내 불법조직(마피아)등과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어 실효성 미흡
  - \* '07.12. 제17차 한러위원회시 협정(안)에 대해서 '08.4~5월중 추가 검토기로 함
- ○ 우리측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수입된 러시아 수산물이 협정체결에 따라 대게 등 일부 러시아 수산물의 교역량 급감(예상)
  - 수·출입 유통업계의 매출액 감소 및 일부 어종의 어가 상승, 수리업체, 대리점, 선용품 납품업체, 기타 관련산업 매출 감소
  - \* 러시아산 수산물은 국내 전체 수입량의 16%(최근 3년 평균 211천톤 수입)

## 나. 추진실적

- '03.10월 APEC(방콕) 한·러 정상회담시 러측은 러시아산 수산물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협정체결 필요성을 언급
- '04.9월 한·러 정상회담시(모스크바)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 \* 양측은 우리어선의 러시아 수역내 안정적인 조업 및 수산물의 위생보장 및 불법수출방지에 협력기로 합의함
- ○ '07. 2월 러측이 불법교역 방지에 관한 협정(영문)안을 작성하여 제시함에 따라, '07. 8. 7일 우리측 수정안을 러측에 통보함
- 양국은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수산물에 한해 수·출입 허용
  - \* 그동안 우리측은 협정체결의 실익 및 시급성, 갑작스런 교역량 축소 등에 따른 문제점, 과도한 행정비용이나 절차 소요 등을 감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

\* 러측은 자국 수산청 조직개편으로 우리측안에 대하여 미 언급(수산청→국가어업위원회)

□ '08. 3.13 러측 국가어업위원회 오하노프 국장면담(선도선박 실무협의 시)

- 국장은 협정체결 추진은 한러어업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이며, 3월중 러측안을 제의할 예정이며, 6~7월중 실무협의 추진
- 동 건은 일본측과도 협의 중에 있고, 특히 자국 수산물의 외국 항에서의 검색은 국제기구(NAFO등)에서도 도입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측의 적극적 협조 요청
- 이에 아측은 협정안 제의시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소관업무 분할에 따라 지연가능성 언급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양국간 우호적인 어업협력관계 및 정상간 공동선언을 감안, 러측에 협력하면서 국익확보 차원에서 협정체결 추진
- 러시아 수입 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91년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쿼터배정을 배정하는 것으로 추진

#### 라. 향후 추진계획

- 양국간 우호적인 어업협력관계 및 정상간 공동선언을 감안, 러측에 협력하면서 국익확보 차원에서 협정체결 추진
- '08년 러측 협정 안이 제시될 경우 러측안 검토(2008.5~6월 중) /필요시 관계기관 T/F팀 구성·운영 등
- 한러 양국정부간 문안검토 협의(2008년 6월이후)

-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명태 등 어획쿼터 확보와 연계 추진

**원양Ⅲ-10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

**가. 현 황**

- 수산물 수출은 '0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국내외 수출여건 악화
  - 세계 주요 수산물 소비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 등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국가와 치열한 경쟁 불가피
    - ※ 수출액(백만\$) : ('01)→1,273→('02) 1,160→('04) 1,279→('05) 1,193→('06) 1,089→('07) 1,226  
(증가율, %) (△15.4) (△8.9) (13.2) (△6.7) (△8.7) (2.8)
  - 국제 유가 및 환율 강세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로 우리 수출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 수산물 수출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수출진흥대책 추진 필요
  - 기존의 수산물 수출진흥 정책과 병행, 수산물 수출인프라 확충 및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수산가공수출기업 육성 등 정책 추진

**나. 추진실적**

-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우수수산물 수출업체에 수산발전기금 융자 지원
    - 예산/업체수 : ('05) 1,279억/116개 → ('06) 1,447/112 → ('07) 1,366/112
  - 우량제품 생산·수출을 위한 김 이물질선별기('03부터 81대) 및 금속 탐지기('07년 31대) 구입 지원
  - 포장디자인 개발('99부터 123품목) 및 카탈로그 제작·배부('99부터)

- 수출용 전복 물류센터 건립 지원('06 ~ '07/5개소)
-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수출업체 등에 제공('07부터)
-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우수 수산물 홍보 등 해외마케팅 지원
  - 국제박람회 참가지원('97부터 65회) 및 국내 국제무역박람회 지원(3회)
  - 국내외 수산물 홍보('00부터/TV광고, 외국 공항·버스 광고 등)
  - 수출 시장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99부터/17회)
- 수출관련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한 외국과 협력
  - 한·일 무역실무(과장급) 회의 정기 개최(연 2회/총 21회) 등

####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중장기 수산물 수출 진흥 종합대책('06.12)” 추진동력인 주요 신규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기반 마련(방안 수립 및 예산 확보)
  - 수산물 수출인프라 확충,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방안, 해외 상설매장 개설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
-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수출 주력품목 및 선도기업 육성
  - 수산 정책자금(우수수산물 지원)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산물 수출관련 규제 발굴·완화 추진
  -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 확대,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등

#### 라. '08 추진계획

- 지역거점 수출인프라 확충 및 주력품목 지원 강화
  - 부산 감천항 수산물류무역기지 내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3억원)
    - ※ 사업개요 : '09 ~ '12년/1,250억원/부지 43,950㎡, 건축 59,510㎡
  - 수출용 전복물류센터 건립 지원(2개소/10억원) 및 활넙치 수출

- 확대를 위한 특수 컨테이너 3기 제작 지원('08~'10/총 10기)
- 김 이물질선별기(48대) 및 금속탐지기(30대) 구입지원 지속 추진
- 수산물 가공 수출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추진
  - 우수수산물 지원(수산물발전기금/1,366억원)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 추진
  -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운영 지원방안 강구('09년 예산확보 추진)
  - 10대 수출 수산물 및 10대 수출 업체 선정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주요 타깃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 국제식품(수산물)박람회 참가 지원(12회) 및 제도 개선 추진
  - 주요 타깃시장의 바이어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물 홍보
    - 중국 공항 광고 및 북경올림픽과 연계한 기획 홍보 등 추진
  - 한일 무역실무회의의 2회 개최를 통한 비관세 장벽 개선 추진
- 수산물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수출업체 등에 제공
    - 정기 12회, 심층 조사 2개국(중국, 러시아), 관측 정보 4회
  - 주요 타깃시장의 바이어와 우수 수산물 수출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매칭바이어 시스템 구축 추진
  - 수산물 수출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운용 및 수출진흥회의(협의회 포함) 내실화 추진 등

## 가. 현 황

### □ 수산물 수입동향

- '97년 수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 후 생산량 정체,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매년 수입 증가 및 '01년도를 정점으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국 전환

※ 수입액(백만\$) : (02)1,884→('03)1,961→('04)2,261→('05)2,384→('06)2,770→('07)3,056  
(증가율 %) (14.3) (4.1) (15.3) (5.4) (16.2) (10.3)

- '07년도 기준 주 수입대상국은 중국(35.0%), 러시아(13.8%), 일본(8.9%), 베트남(8.8%), 태국(4.9%) 순이며, 동 5개국의 수입액(2,184백만\$)이 전체 수입액의 71.5% 점유
- 주요 수입품목은 명태(364천톤, 11.2%), 새우(247천톤, 8.1%), 조기(165천톤, 5.4%), 낙지(126천톤, 4.1%), 갈치(110천톤, 3.6%)순

## 나. 추진실적

### □ FTA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TRQ)제도 운용

- 한-아세안 TRQ적용 물량에 대한 관세차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이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적립 (5,124톤, 41억)
  -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정('07.6)
  -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정('07.9)

※ 새우류 4품목 7,300톤 및 냉동갑오징어 2,000톤 총 9,300톤

- 한-EFTA 관세율할당(TRQ)제도 운용
  -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정('06.9)
  - '07년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500톤 수입통관 및 매각완료('08.4)



- 수입수산물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법률 개정 ('07.8.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부담금관리기본법

□ 수산물 수입관련 탄력관세 운영

- '08년도 조정·할당관세 운영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및 재경부 협의
  - 국무회의 의결후 대통령령 개정 및 재경부 고시 반영, 관련단체 통보('07.12)
- ※ 조정관세(9개 품목), 할당관세(1개 품목)

□ 수산물 저가신고 예방 및 근절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 일부 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가 수입신고로 인한 국내수산물시장 교란 우려
  - 수입 수산물의 저가신고 근절을 위한 관세청과 가격정보 제공 MOU체결 ('07.12)
- ※ 가격조사자료를 관세청으로 송부하여 투명과세를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

□ 어류부산물의 편법 국내수입·유통 근절 추진

- 정상가 보다 저렴한 어두 등 부산물로부터 채취한 생선살의 국내 편법유통 증가로 국민건강 위협 및 원양업체 채산성 악화
  - \* 수량/금액 : ('05) 1,857톤/11백만\$ → ('06) 2,488톤/14\$ → ('07) 3,294톤/19\$
  - \* 수입단가(메로) : (정상 어체) 7~8천\$/톤 → (목살 등 부산물) 5~6천\$/톤
- 양자간 위생약정 체결 추진으로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부산물 수출국과 식품기준 규격 및 교역에 관한 내용의 약정 체결 추진
  - \* 영국과 약정문안 최종합의 완료 ('07.10) 및 기타 국가와 약정안 협의중

## 다. 증장기 정책방향

- 세계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수입 관리체제 구축·운영
  - 지속적으로 각국과 FTA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입관리 방안 마련
  - 수산물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영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 및 WTO/DDA의 협상 동향에 따라 조정관세에 관한 정책 추진 방향 모색
    - 수산물 수입증가율, 국내외 가격차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판단과 기타 업계요구사항, 외국과의 어업 및 교역실태 등을 고려 추진
  - ※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대상품목 심의·확정 (12월)
- 수산물 저가신고 예방 및 근절
  - 저가수입신고 품목의 적발을 통한 국내수산업계 보호와 관세포탈 저지를 위한 조사품목확대 및 조사기준 세분화
- 어류부산물의 편법 국내수입·유통 근절 추진
  - 식약청과 공조하여 어류 부산물의 수입위생기준 설정 및 양자간 약정 체결 추진으로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은민대구, 메로, 참치 등 어류 부산물의 편법 유통 억제

## 라. '08 추진계획

- 수산물 관세율할당(TRQ) 제도 운영 추진
  - FTA 체결에 따른 TRQ 물량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 TRQ 물량 운영 및 부담금 징수 관련 고시 정비('08.4)
  - 한-EFTA TRQ '09년도 물량 도입(냉동고등어 500톤)
    - 수입통관계획수립('08.10) 및 통관 완료('08.12)
  - 한-아세안 TRQ물량 9,300톤의 도입에 따른 수입권공매를 실시하여, 수입자로 결정된 자에게 법정 부담금(공매납입금) 부과

## □ 수산물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영

- '09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 반영을 위한 기획재정부 실무협의, 관세심의위원회 상정 등 절차 추진 ('08 하반기)

※ 조정관세 품목현황 : ('97)27개→('00)14개→('06)11개→('07)9개→('08)9개

## □ 수산물 저가신고 예방 및 근절

- 관세청과 공조하에 일정 가격수준 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저가 신고 심사 착수 체제 구축

- 1차 시범 가격조사 결과를 “저가신고조기경보시스템” 등록('08.4)

※ 1차 시범조사(농수산물유통공사, '08.3완료)

- “수입수산물 가격 조사 용역사업”을 통해 2차 가격조사 실시 ('08.4~12월)

- 1차 시범조사에 비해 조사품목 추가 (6 → 10개 품목) 및 제품 규격별로 다양화된 가격조사 실시

## □ 어류부산물의 편법 국내수입·유통 근절 추진

- 어류부산물(어두, 어두의 특수부위)의 기준·규격 설정 등을 통한 수입관리 강화

- 식약청과 공조하에 현지 실사를 통한 위생점검 실시 및 식품 공전 반영 및 위생약정 체결 추진

※ 기준·규격 설정(식품공전) 후 해당국가와 교역에 관한 약정 체결 추진

## □ 기타 추진 계획

- 수산물 수출입 교역 정보인 “수산물 수출입 동향”을 매월 작성 하고, 매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를 작성하여 배부

※ 관련실국, 지방청, 과학원, 감사원 및 수출입관련 업계 등에 제공(600부)

《 참고 3-1 》

**원양참치어업 생산·수출현황**

(천톤, 백만\$)

		생산 및 수출	'01	'02	'03	'04	'05	'06	'07
수산물 총생산	생산량		2,665	2,477	2,487	2,519	2,714	3,032	3,271
	수출	물량	436	430	425	406	412	376	536
		금액	1,274	1,160	1,129	1,279	1,193	1,089	1,226
< 원양 >	생산량		739	580	545	499	552	639	711
	수출	물량	209	233	226	191	217	258	280
		금액	390	414	365	395	380	410	471
o 참 치	생산량		241	268	239	239	259	295	300
	수출	물량	126	143	121	101	110	167	103
		금액	273	278	231	261	232	282	240
-참치연승 (횃감용)	생산량		63	62	49	54	49	46	45
	수출	물량	44	51	37	40	32	29	20
		금액	200	201	169	208	160	150	125
-참치선망 (가공용)	생산량		178	206	190	185	210	249	255
	수출	물량	82	92	84	61	78	138	83
		금액	73	77	62	53	72	132	115

- o '07년 원양어업 생산량(711천톤)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2% 차지
  - 원양수출(471백만\$)은 수산물 수출액(1,226백만\$)의 38% 차지
- o '07년 참치 생산량(300천톤)은 원양어업 생산량중 38% 차지
  - 참치수출(240백만\$)은 원양수산물 수출액(471백만\$)의 51% 차지

## 《 참고 3-2 》

###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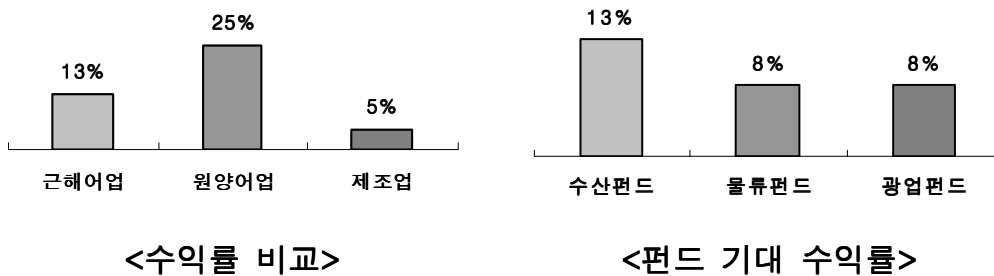
- 인도양 심해 오렌지라피 어장 자원조사('01~'02, 18억원)
  - 상업조업선 2~3척이 조업 가능한 어장으로 분석되었으나, 상업조업 미연결 (국립수산과학원 탐구1호)
  
- 북태평양 서부공해 푹치어장 자원조사('02. 8~10월, 3억원)
  - 푹치붕수망어선이 매년 1개월 연장조업이 가능, 연간 50억원의 어획 소득 발생 (20여척 상업조업, 해양수산연수원 갈매기2호)
  
- 북태평양 동부(西經어장) 푹치 자원조사 실시('03. 4~6월, 4억원)
  - 기존어장(북태평양공해, 일본러시아어장)에 이어 다양한 어장개발로 어장선택 폭이 넓어지고 어기가 길어짐('04유가상승 등으로 미조업)
  
- 남태평양 동부 공해 전갱이 자원조사 실시('03. 8~12월, 24억원)
  - 북양 명태트롤어선의 대체어장으로 '04년도 이후 매년 2~3척 진출하여 8~9천톤 어획 : 과학원 탐구1호(2,550톤급) 및 상업어선 2척
  
- 북태평양중부 돔어장 자원조사('04. 6~9월, 29억원)
  - 북양명태트롤어장과 연계 조업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05년도 1척(사조산업, 503오룡호) 진출하여 약 690톤어획
  - ※ 조사선 : 과학원 탐구1호(2,550톤급) 및 상업어선 2척(사조산업 503오룡호 등)

-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등 자원조사('05.7~10월, 24억원)
  - 풍부한 자원량을 확인하였으며, '06년도 근해채낚기 5~6척이 자체 진출을 희망
    - ※ 조사선 : 원양채낚기(인성실업, 701인성호) 및 근해어선 6척(쌍끌이 2통, 근해채낚기2척) 등 7척
  
- 마샬수역 근해통발 어장 자원조사('06. 4월~6월, 8억원)
  - 해저지형이 산호초이며, 환초에서 조금만 멀어도 수심이 깊고 해저의 굴곡이 심하여 통발조업 애로
    - ※ 국립수산과학원, 근해통발어선 2척 (성덕호, 광민호)
  
- 남동대서양 이빨고기 어장('06.12.~'07.5월) : 인성, 선우실업 소속 2척
  - 어획생산량 증가 등 대체어장 활용가능 / '08년 상업조업 개시
  
- 중부 베링공해 명태 자원조사('07.7~8/20일간 / 575백만원) : 남북수산, 한성기업 2척
  
- 북태평양 미드웨이 참치어장 자원조사('07.9~'08.4 / 180일간/9억원) : 사조산업 3척
  - 시험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중이며, 대체어장 활용가능

## 해외 수산펀드 조성의 타당성

### 수익률 측면

수산업은 제조업 보다 높고, 펀드 기대 수익률도 물류펀드 및 광업펀드 등 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 리스크 측면

수산업의 특성상 기후 변화어류 질병·환경에 따른 생산량 결정, 높은 부패성 등 사업 위험성에 노출

- 투자국이 개도국일 경우,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및 유지 등을 위한 제반 요소(전기, 부대장치 등) 부족으로 제품 손실 가능
- 전쟁, 환 리스크, 유가변동 등 일반적 해외 투자 위험에도 노출

□ 리스크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는 초기 자본 유인, 투자 정보, 국가간 협력 등을 제공할 경우,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시중의 유동자금을 활용한 해외 수산펀드를 조성할 경우, 정부예산 절감 효과, 기업의 자본·정보·노하우 부족의 애로 극복 및 해외진출 수요에 부응 가능

## 《 참고 3-4 》

### 해외 진출 수요(설문) 조사 결과

#### < 설문 조사 개요 >

- 기 간 : 2007. 12월
- 대 상 : 원양회사, 수협, 유통·가공 업체 등 주요 기업(업체) 40개
- 내 용 :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 및 해외수산펀드 조성 필요성

#### □ 과거 해외 투자 경험 : 유-15%, 무-75%

- 투자 경험 기업 중 67%만 사업 지속, 나머지는 사업 포기
  - 사업 포기 사유 : ① 정보부족, ② 자금부족, ③ 국가간 양해 부족 등

#### □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은 83%가 찬성

##### ○ 해외 투자 대상 국가 및 사업

- 국가 : ① 중국(41%), ② 베트남 등 동남아(32%), ③ 기타(27%)
- 사업 : ① 양식(54%), ② 유통·물류(21%), ② 가공(18%), ④ 기타(7%)

##### ○ 해외 투자 금액 및 예상 수익률

- 희망 투자액(총 1~2억불 규모) : ① 100~500만\$(35%), ② 500~1,000만\$(29%), ③ 1,000만\$ 이상(16%)
- 예상 수익률 : ① 20% 이상(32%), ② 15~20%(29%), ② 15~10%(23%)
  - \* 펀드 조성 반대(17%) 사유 : ①어병 및 해양환경 위험성, ②판로 확보 등 정보 부족, ③투자적지 선정 한계 ④전쟁, 환리스크 등

#### □ 해외 투자 활성화(펀드조성)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일

- ① 해외투자 정보 제공 및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 ② 민간 투자 유인책 마련 ③ 투자 위험 문제 해결, ④ 국가간 협력 지원 등

#### □ 우리 기업의 해외 수산 투자의 강점과 약점

- 강점 : ① 생산 및 가공 등의 기술력, ② 컨설팅 등 기업 관리 능력
- 약점 : ① 자본력, ② 해외 투자 정보력 등



《 참고 3-5 》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조업 실적**

○ 2008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어획쿼터 및 조업척수

(단위 : 톤)

수역별	어종별	업종별	'07합의	'08합의	조업척수	조업기간	조업수역
계			34,115	36,615	166		
서베링 (동)	명 태	중층트롤	20,500	20,500	12	1. 1-2.28, 5.16-12.31	I
	대 구		75	75			
	청 어		250	250			
서베링 (동·서)	대 구	저연승	2,575	2,575	4	4.10-11.30	I, II
	가오리		800	800			
	가자미		300	300			
남쿠릴 북부	공 치	봉수망	2,500	5,000	18	7.15-10.20	III
연해주	오징어	채낚기	7,000	7,000	132	5.1-10.31	IV
	복 어	손줄낚시	115	115			

○ 2007년 정부쿼터 소진실적

(단위 : 톤)

구 분	수 역	업 종	허가척수	쿼터	소진량	소진율(%)
계		4개업종	166(123)	34,115	31,146.15	91.3
명 태 대 구 청 어	북서베링	중층트롤	12( 5)	20,500	20,200	90.2
				75	69	92.0
				250	79	31.6
대 구 가오리 가자미	북서베링	저 연 승	4( 2)	2,575	2,575	100
				800	797	99.6
				300	300	100
공 치	남 쿠 릴	봉 수 망	18( 12)	2,500	2,494	99.8
오징어 복 어	연 해 주	채 낚 기	132(104)	7,000	4,632	66.2
				115	0.15	-

《 참고 3-6 》

**다랑어의 분류 및 형태적 특징**

○ 농어목, 고등어과 및 황새치과(9속 18종)




○ 고등어과 (Family Scombridae)

학 명	국 명	영 명
<i>Thunnus albacares</i>	황다랑어	Yellowfin tuna
<i>Thunnus thynnus</i>	참다랑어	Northern bluefin tuna
<i>Thunnus obesus</i>	눈다랑어	Bigeye tuna
<i>Thunnus alalunga</i>	날개다랑어	Albacore
<i>Thunnus maccoyii</i>	남부참다랑어	Southern bluefin tuna
<i>Thunnus tonggol</i>	백다랑어	Longtail tuna
<i>Katsuwonus pelamis</i>	가다랑어	Skipjack tuna
<i>Euthynnus affinis</i>	점다랑어	Kawakawa
<i>Auxis thazard</i>	물치다래	Frigate tuna
<i>Auxis rochei</i>	몽치다래	Bullet tuna
<i>Scomberomorus commerso</i>	동갈삼치	Narrow-barred Spanish mackerel
<i>Scomberomorus guttatus</i>	점삼치	Indo-Pacific king mackerel

○ 황새치과 (Family Xiphiidae)

학 명	국 명	영 명
<i>Makaira mazara</i>	녹새치	Indo-Pacific blue marlin
<i>Makaira indica</i>	흑새치	Black marlin
<i>Tetrapturus audax</i>	청새치	Striped marlin
<i>Tetrapturus albidus</i>	백새치	White marlin
<i>Istiophorus platypterus</i>	돛새치	Indo-Pacific sailfish
<i>Xiphias gladius</i>	황새치	Swordfish

## ○ 주요 다랑어류의 형태 및 특징

명칭 및 모양	주요 특징 및 용도
 <p>◆ 눈다랑어(메바찌, Bigeye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온대 및 열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li> <li>○ 수온 13~29℃, 수심 0~250m의 표층 근처 또는 중층 수역에서 생활</li> <li>○ 먹이는 주로 어류, 오징어류, 갑각류등</li> <li>○ 최대 체장 236cm, 체중 197 kg</li> <li>○ 연승선의 주요 채포어종(횃감용) 선망선에 일부 부수어획</li> <li>○ 가격 : 냉동40kg이상 800~2,000엔/kg 25kg이상 500~1,000엔/kg, 15kg이상 300~450엔/kg, 15kg이하 250~300엔/kg, 신냉 40kg이하 2,000~10,000엔/kg</li> </ul>
 <p>◆ 황다랑어(기하다, Yellowfin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li> <li>○ 서식수온은 18~31℃로 다른 종에 비해 비교적 넓은 수온대에 적응</li> <li>○ 먹이는 주로 어류, 오징어류, 갑각류등</li> <li>○ 최대체장 208cm, 체중 176.4kg</li> <li>○ 연승선의 주요 채포어종(횃감용) 선망선에 20~30% 부수어획(통조림)</li> <li>○ 가격 : 냉동25kg이상 450~700엔/kg, 15kg이상 300~400엔/kg, 15kg이하 250~300엔/kg, 신냉 700~2,000엔/kg</li> </ul>
 <p>◆ 남방참다랑어(미나미마구로, Southern bluefin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층 원양성, 대양성으로, 남대평양의 30°S 남부에 분포</li> <li>○ 5~20℃ 사이의 저온에 서식</li> <li>○ 먹이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등을 기회적으로 포식</li> <li>○ 최대 체장 200cm, 체중 200kg</li> <li>○ 연승선의 주요 채포어종(횃감용)</li> <li>○ 가격 : 냉동40kg이상 1,500~3,500엔/kg 10~40kg 800~1,500엔/kg</li> </ul>

명칭 및 모양	주요 특성 및 용도
 <p>◆ 참다랑어(혼마구로, Northern bluefin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온대, 아한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게 태평양(일본 북부 아오모리)과 대서양(지중해)에 사는 2개 그룹으로 구별</li> </ul> </li> <li>○ 해수면 바로 아래(아표층)에서 유영</li> <li>○ 먹이는 주로 군집 소형 어류(멸치, 꽁치, 청어 등), 오징어류, 갑각류 등</li> <li>○ 최대 체장 3m, 체중 560kg(북대서양)</li> <li>○ 과거 연승선에서 일부 어획(횃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CAT의 어기 제한(3~5월중순) 등 조업규제로 '98년부터 조업중단</li> </ul> </li> <li>○ 가격 : 냉동 1,500~3,000엔/kg 신냉 5,000~20,000엔/kg</li> </ul>
 <p>◆ 날개다랑어(돔보, Albaco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북위 45~50°, 남위 30~40°)에 광범위하게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과 대서양에서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두 계군으로 크게 나누어 짐</li> </ul> </li> <li>○ 표층 근처 ~ 중층(380m ~ 600m)에 서식</li> <li>○ 최대 체장 127cm, 체중 40kg</li> <li>○ 연승선의 부수 어획종(저가 횃감용) 선망선에 일부 부수어획(통조림)</li> <li>○ 가격 : 냉동 2,000~2,900\$/톤(가공용) 신냉 200~300엔/kg</li> </ul>
 <p>◆ 가다랑어(가쓰오, Skipjack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수역에 광범위하게 분포</li> <li>○ 대표적 부어성 어종으로 서식 수온은 15~30°C이며, 군집을 이루어 생활하며, 특히 수온 전선대에 많이 서식</li> <li>○ 먹이는 주로 어류, 갑각류, 오징어류 등</li> <li>○ 최대 체장은 108cm</li> <li>○ 선망선의 주요 채포종, 연승선의 부수어획종(통조림캔 및 가쓰오)</li> <li>○ 가격 : 700~1,100\$/톤</li> </ul>

《 참고 3-7 》

연도별 조정관세율 현황

품 명	기본 관세 (%)	조 정 관 세 (%)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품목	6품목	11품목	14품목	20품목 (상하)	27품목 (상하)	23품목	14품목	14품목	14품목	12품목	12품목	12품목	11품목	10품목	9품목	9품목
활뱀장어 0301-92-9000	10	-	-	-	-	-	-	50	30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27% 또는 (1,879원/kg)
활 돔 0301-99-4000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	70% 또는 (5,122원/kg)	65% 또는 (4,756원/kg)	60% 또는 (4,390원/kg)	55% 또는 (4,024원/kg)	50% 또는 (3,658원/kg)	45% 또는 (3,292원/kg)	45% 또는 (3,292원/kg)	40% 또는 (2,781원/kg)	36% 또는 (2,670원/kg)
활농어 0301-99-9050	10	-	-	100	100	100	100	100	80	70	65	60	55	50	45	40	38	38
활민어 0301-99-9095	10	-	-	-	-	-	-	-	-	-	-	40 (참조기, 부세 제외)	40 (참조기, 부세 제외)	40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냉동명태 0303-79-1000	10	-	-	-	-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냉동꽂치 0303-79-8000 (학꽂치 포함)	10	-	-	-	-	/30	-	50	50 (학꽂치 제외)	40 (학꽂치 제외)	40 (학꽂치 제외)	40 (학꽂치 제외)	40 (학꽂치 제외)	40 (학꽂치 제외)	36 (학꽂치 제외)	34 (학꽂치 제외)	34 (학꽂치 제외)	31 (학꽂치 제외)
냉동민어 0303-79-9095	10	-	-	-	-	-	/100	100	90	80	70	70 (참조기, 부세 제외)	70 (참조기, 부세 제외)	70 (참조기, 부세 제외)	70 (참조기, 부세 제외)	63 (참조기, 부세 제외)	57 (참조기, 부세 제외)	53 (참조기, 부세 제외)
새우젓 0306-23-3000	20	-	-	-	-	-	100	100	70	60% 또는 (396원/kg)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363원/kg)	55% 또는 (363원/kg)	55% 또는 (363원/kg)	55% 또는 (363원/kg)	50% 또는 (363원/kg)	50% 또는 (363원/kg)	46% 또는 (315원/kg)
냉동오징어 0307-49-1020	10	-	-	-	-	-	/30	40	40	40	40	40	35	30 (연육제외)	27 (연육제외)	24 (연육제외)	22 (연육제외)	22 (연육제외)

\* 음영표시는 당해년도 신규적용 품목임

할당관세 적용(1품목): 브라인슈림프알 (기본관세 8% → 할당관세 4%)

《 참고 3-8 》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 어 류

(단위 : M/T)

	계	명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꽁치	민어류	기타돔	갈치	가오리류	기타
'9 0	676,445	322,176	138,493	56,705	34,339	-	5,846	12,248	8,430	3,788	94,420
'9 1	588,661	177,392	171,975	69,344	23,301	26,034	9,017	11,655	10,153	3,204	86,586
'9 2	702,094	320,858	115,295	83,818	25,203	33,708	9,127	8,738	6,513	2,884	95,950
'9 3	539,358	217,119	74,171	67,587	24,840	40,144	14,705	8,594	5,791	3,461	82,946
'9 4	704,746	303,969	145,541	64,831	30,627	31,987	19,693	10,678	9,414	8,325	79,681
'9 5	700,735	336,810	137,848	51,951	26,821	31,321	21,254	7,168	7,423	9,734	70,405
'9 6	543,835	221,219	130,153	35,324	28,641	18,681	21,392	5,680	7,789	7,471	67,485
'9 7	598,313	215,814	115,927	61,261	31,410	50,227	27,478	3,657	11,567	7,751	73,221
'9 8	606,235	230,143	143,390	73,354	33,042	13,922	20,803	3,273	9,585	3,814	74,909
'9 9	476,441	145,720	109,780	43,255	26,558	18,159	24,444	5,978	12,866	10,030	79,651
'0 0	465,200	86,066	137,015	49,461	30,079	25,029	23,169	6,449	12,135	10,946	84,851
'0 1	568,795	199,123	137,569	58,957	31,335	20,869	22,033	4,834	3,503	8,903	81,669
'0 2	423,696	24,825	173,693	48,778	31,962	20,088	24,295	8,253	3,857	7,192	80,753
'0 3	397,196	21,890	153,328	52,192	21,839	31,219	23,401	6,604	3,264	7,441	76,018
'0 4	400,134	20,009	162,200	40,216	26,324	22,625	19,578	7,316	2,802	7,631	91,433
'0 5	439,711	26,004	171,641	52,474	24,178	40,509	18,712	7,627	2,065	5,058	91,443
'0 6	433,122	26,269	205,221	55,831	24,333	12,009	15,522	6,240	2,049	5,154	80,494
'0 7	448,335	20,109	214,934	54,040	22,827	16,976	16,593	5,689	2,483	4,780	89,904

□ 갑각류

(단위 : M/T)

	계	남빙양새우	기타새우	계류	새우류	기타
'90	6,352	4,491	1,861	-	-	-
'91	2,262	360	1,897	5	-	-
'92	2,598	709	1,410	-	-	479
'93	4,453	3	1,380	45	-	3,025
'94	4,142	-	902	152	-	3,088
'95	2,194	-	737	746	-	711
'96	1,046	-	792	205	-	49
'97	666	251	287	114	-	14
'98	2,252	1,916	216	120	-	-
'99	1,898	52	1,769	64	-	13
'00	6,534	4,499	1,835	192	-	8
'01	5,233	1,650	1,852	30	-	1,701
'02	13,663	12,965	275	5	-	418
'03	20,927	20,411	162	101	6	247
'04	25,648	25,212	104	176	-	156
'05	28,842	28,678	26	82	-	56
'06	33,807	33,677	43	32	-	55
'07	37,250	37,074	53	95	-	28

□ 연체동물

(단위 : M/T)

	계	오징어류	갑오징어	문어류	한치류	기타
'90	236,515	229,148	4,316	1,120	-	1,931
'91	282,610	270,686	10,749	807	-	368
'92	319,964	316,732	1,994	297	-	941
'93	197,660	194,952	1,615	498	-	595
'94	178,377	176,171	1,505	544	-	157
'95	194,395	193,124	906	346	-	19
'96	173,803	172,435	991	357	-	20
'97	230,424	227,016	3,174	54	-	180
'98	114,110	112,291	1,384	336	-	99
'99	313,070	309,195	1,445	2,311	-	119
'00	179,533	177,843	824	457	-	409
'01	165,029	163,092	1,076	92	-	769
'02	142,987	141,352	1,100	87	-	448
'03	126,468	121,945	3,633	217	-	673
'04	73,618	69,999	2,882	557	-	180
'05	83,543	81,172	1,908	80	362	21
'06	172,255	170,211	945	550	449	100
'07	227,247	223,338	1,315	381	2,165	48



《 참고 3-9 》

**원양어업 생산 추이**

□ 업종별·연도별

(단위 : 톤)

	계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 채낚기	북양트롤	해외트롤	기타
'60	914	914	-	-	-	-	-
'70	89,621	71,363	-	-	-	18,258	-
'80	456,549	112,673	-	-	258,905	63,676	21,295
'90	919,312	69,524	173,343	88,843	312,218	161,650	113,734
'95	897,324	52,586	175,464	152,935	337,632	141,154	37,553
'98	722,597	67,467	200,905	82,158	231,210	113,600	27,257
'99	791,409	48,703	142,091	263,312	147,379	156,014	33,910
'00	651,267	58,387	170,025	159,726	87,830	133,100	42,199
'01	739,057	65,526	178,072	127,411	198,541	132,261	37,246
'02	580,346	61,575	206,150	94,760	24,998	160,623	32,240
'03	544,591	48,794	190,452	80,871	23,401	161,720	39,353
'04	499,400	53,667	184,985	25,010	21,985	183,738	30,015
'05	552,096	49,619	210,777	28,144	26,726	187,929	48,901
'06	639,249	46,124	249,340	87,668	26,373	209,636	20,108
'07	712,832	45,438	254,897	118,139	20,259	245,986	28,113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시험조업을 실시하여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원양어획물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오징어의 생산호조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업종별로는 참치연승어업이 약 5만톤, 참치선망어업이 25만톤 내외 수준으로 중서부태평양 등에서 조업하고 있고, 북양트롤어업은 2002년부터 러시아 민간쿼타 미확보 및 어선세력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참고 3-10 》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단위 : 톤)

	계	참치류	명태	오징어	꽁치	기 타
'60	914	914	-	-	-	-
'70	89,621	71,363	-	-	-	18,258
'80	456,549	124,753	189,774	4,687	-	137,335
'90	919,312	241,110	311,703	233,331	17,762	115,406
'95	897,324	227,173	336,810	193,017	31,321	109,003
'98	722,597	267,286	230,143	112,291	13,922	98,955
'99	791,409	189,709	145,720	309,195	18,159	128,626
'00	651,267	225,795	86,066	177,843	25,029	136,534
'01	739,057	239,443	199,123	163,092	20,869	116,530
'02	580,346	267,462	24,825	141,352	20,088	126,619
'03	544,591	239,102	21,890	121,945	31,219	130,435
'04	499,400	238,624	19,997	69,999	22,625	148,155
'05	552,096	258,062	26,004	81,172	40,509	146,349
'06	639,249	295,440	26,269	170,211	12,009	135,320
'07	712,832	300,268	20,109	223,338	16,976	152,141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원양어획물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어종별로는 참치류가 약 30만톤으로 꾸준히 어획되고 있고, 명태류는 러시아 쿼타량에 따라, 오징어류는 포클랜드 수역의 어황에 따라 어획량 기복이 매우 심한 편임

《 참고 3-11 》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 천\$)

	계	참치류	새우류	오징어	저서어류	기 타
'70	38,008	35,694	-	-	-	2,314
'80	351,865	196,581	16,027	-	103,782	35,475
'90	516,880	329,357	9,921	14,315	45,427	117,860
'95	539,513	298,382	5,272	45,961	29,817	160,081
'98	529,540	318,934	1,813	24,655	44,357	139,781
'99	429,325	292,124	605	16,189	40,229	80,178
'00	538,972	350,723	2,991	39,340	54,501	91,417
'01	389,688	273,165	3,521	28,474	42,526	42,002
'02	414,478	278,377	1,353	23,237	59,390	52,121
'03	365,422	231,500	866	39,304	73,256	20,496
'04	395,534	260,744	2,143	54,230	67,945	10,472
'05	380,162	232,072	7,727	59,164	72,185	9,014
'06	410,424	282,007	13,018	23,422	88,006	3,971
'07	471,041	239,895	10,490	66,371	112,873	41,412

원양어획물 수출에서는 참치류가 1990년 이후 매년 약 3억불 정도가 일본시장에 수출되어 전체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어황 및 환율에 따라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어가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오징어류도 포클랜드 어장의 생산량에 따라 수출금액의 변동요인이 됨

《 참고 3-12 》

**원양업체 현황**

□ 연도별

(단위 : 개소)

	'60	'70	'75	'80	'85	'90	'95	'99	'00	'01	'02	'03	'04	'05	'06	'07
업체수	1	36	92	82	112	157	185	147	139	127	131	129	121	112	109	110

1957년 인도양 참치연승어업 진출이래 1970년 36개사로 매년 계속 증가를 보이다가 1995년 185개사를 정점으로 현재 110개사로서 감소 추세에 있음

□ 연도별·업종별 추이

	계(척)	참치연승	참치선망	북양트롤	새우트롤	해외트롤	오징어 채낚기	기 타
'60	3	3	-	-	-	-	-	-
'70	278	246	-	27	5	-	-	-
'80	750	439	2	39	112	90	13	55
'90	810	276	39	44	68	135	88	160
'95	637	226	30	36	32	157	124	32
'98	545	203	26	38	8	146	99	25
'99	550	202	26	34	3	158	105	22
'00	535	197	26	33	8	155	92	24
'01	507	193	27	30	2	147	85	23
'02	482	193	26	23	1	142	75	22
'03	464	190	27	11	1	142	71	22
'04	433	182	28	8	1	138	50	26
'05	410	177	28	7	1	123	51	23
'06	393	169	28	7	1	118	50	20
'07	387	165	28	6	-	116	49	23

1957년 참치연승어선 1척이 원양에 처녀 진출한 이래 원양어선 세력이 매년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 810척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7년 현재 387척으로 원양어업 생산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톤급별 추이

(단위 : 톤)

	계	100이하	101 ~ 200	201 ~ 300	301 ~ 400	401 ~ 1000	1001이상
'81	770	74	36	140	218	245	57
'93	628	49	44	55	172	252	56
'95	637	36	39	56	189	270	47
'96	607	23	40	57	187	256	44
'97	602	24	39	55	191	250	43
'98	545	12	35	53	168	236	41
'99	550	5	44	50	165	243	43
'00	535	4	45	46	160	237	43
'01	507	6	38	44	138	241	40
'02	482	5	34	42	134	230	37
'03	464	5	32	46	126	230	25
'04	433	6	31	43	122	207	24
'05	410	6	25	42	118	195	24
'06	393	5	25	41	111	187	24
'07	387	4	24	42	110	184	23

원양어업 초창기에는 톤수가 비교적 작은 어선 위주였으나, 참치어업과 해외트롤 어업 진출 이후 적당 300~500톤급의 중형어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치선 망 및 북양트롤어업 진출에 따라 1,000톤급 이상의 대형어선도 확보하게 되었음

《 참고 3-13 》

**원양어업 업종별·톤급별 현황**

(단위 : 척)

업종별	톤급	계	100	101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2001	3001	4001	5001
			이하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00	3000	4000	5000	이 상
합	계	387	4	24	42	110	147	11	6	8	4	8	16	3	1	1	2
참치연승		165	-	-	2	70	92	-	1	-	-	-	-	-	-	-	-
참치선망		28	-	-	-	-	1	-	-	8	2	4	12	1	-	-	-
북양트롤		6	-	-	-	1	-	-	-	-	-	1	1	1	-	-	2
해외트롤		116	2	22	37	28	11	2	2	-	2	3	3	1	1	1	-
오징어 채낚기		30	-	-	1	2	22	3	2	-	-	-	-	-	-	-	-
꽂수 치망		20	-	-	2	1	13	4	-	-	-	-	-	-	-	-	-
기타		21	1	2	-	8	8	2	1	-	-	-	-	-	-	-	-

원양어업 초창기에는 톤수가 비교적 작은 어선 위주였으나, 참치어업과 해외트롤 어업 진출이후 척당 300~500톤급의 중형어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치선망 및 북양트롤어업 진출에 따라 1,000톤급 이상의 대형어선도 확보하게 되었음

《 참고 3-14 》

**원양어업 선령별·업종별 현황**

(단위 : 척)

업종별	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계	387	1	4	4	113	77	61	125
참치연승	165	-	2	1	91	53	15	3
참치선망	28	1	1	-	4	-	18	4
북양트롤	6	-	-	-	1	-	-	5
오징어채낚기	30	-	-	-	6	4	4	16
(오징어·외줄 겸업)	(1)	-	-	-	-	-	-	(1)
꽂치붕수망	20	-	-	-	5	2	4	9
(꽂치·오징어 겸업)	(19)	-	-	-	(5)	(2)	(4)	(8)
트롤	116	-	1	2	5	16	16	77
태평양	39	-	-	-	3	11	10	16
대서양	67	-	1	2	2	5	6	51
인도양	10	-	-	-	-	-	-	10
저연승	3	-	-	-	-	-	1	2
(통발·저연승 겸업)	(8)	-	-	-	-	(2)	(3)	(3)
모선식외줄	9	-	-	-	1	-	-	8
원양통발	2	-	-	1	-	-	1	-

원양어선은 2007년말 현재 387척으로서 21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북양트롤 어선은 31년 이상이고, 오징어채낚기 어선 및 해외 트롤어선의 80% 이상이 21년 이상 노후선박임

《 참고 3-15 》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단위 : 척)

	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비 고
계	387	226	129	32	
참 치 연 승	165	129	14	22	
참 치 선 망	28	28	-	-	
오 징 어 채 낚 기	30(1)	-	30(1)	-	(원양외출낚시겸업)
꿩 치 봉 수 망	20(19)	20(19)	-	-	(오징어채낚기겸업)
북 양 트 롤	6	6	-	-	
해 외 트 롤	116	39	67	10	
기 타	22	4	18	-	
· 통 발	10(6)	2	8(6)	-	(통발+ 저연승)
· 저 연 승	3	2	1	-	
· 모 선 식 외출낚시	9	-	9	-	

원양어선은 전체 387척 중에서 참치어선이 193척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트롤어선이 116척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음

해역별로 보면, 태평양수역에 226척, 대서양수역에 129척, 인도양수역에 32척이 진출하고 있음



《 참고 3-16 》

**원양업체별 선박 보유 현황**

	'70	'75	'80	'85	'90	'95	'99	'00	'01	'02	'03	'04	'05	'06	'07
평균 보유 척수	7.7	9.1	9.1	5.5	5.2	3.4	3.7	3.8	4.0	3.7	3.6	3.6	3.7	3.6	3.5
업체 수	36	92	82	112	157	185	147	139	127	131	129	121	112	109	110

1970년부터 1980년도까지는 1개 회사당 약 8~9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이후 1개 회사당 약 3~4척으로 감소하였음

□ 업체별 선박 보유 척수

	계	1척	2척	3~5척	6~10척	11~20척	21척이상
업체 수	110	52	22	20	9	5	2
구성비 (%)	100	47.3	20.0	18.2	8.2	4.5	1.8

2007년 현재 원양업체는 총 110개사로서 그 중 1~2척을 보유한 영세업체는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해외트roller업 등 기타업종이며, 11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주로 참치연승 업종임

《 참고 3-17 》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83	827	52	775
1988	1,911	292	1,619
1990	1,513	368	1,145
1995	1,722	843	879
1996	1,635	1,080	555
1997	1,493	1,045	448
1998	1,369	587	782
1999	1,521	1,179	342
2000	1,505	1,411	94
2001	1,274	1,648	△374
2002	1,160	1,884	△724
2003	1,129	1,961	△832
2004	1,279	2,261	△1,018
2005	1,193	2,384	△1,191
2006	1,089	2,769	△1,680
2007	1,226	3,056	△1,830

## 《 참고 3-18 》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 □ 필요성 및 목적

- 급변하는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 및 수출환경 변화에 부응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필요
-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 내에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를 조성하여 21세기 동북아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 선점
- 동 사업을 통한 무역기지를 활성화시켜 수산물 수출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

####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개요

- 단지내에서 원료공급/제품생산/포장/선적 등 일관처리체계 구축
- 사업기간/사업비 : 2008 ~ 2012
- 총사업비 : 1,250억원(국고 70% 875억원)
- 사업규모 : 부지 43,950m<sup>2</sup>, 건축물 59,510m<sup>2</sup>
- 유치시설 : APT형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냉장시설, 수출입전용부두 등

#### □ 주요 추진일정

- 기본 계획 수립 등 용역 실시 : 2008년
- 조사용역 및 설계 : 2009년
- 공사착수 및 준공 : 2010 ~ 2012(3년간)

#### □ 기대효과

- 연간 생산유발효과 2,197.53억, 2,957명의 고용유발효과((KDI, '02용역)
- 감천항 국제수산 물류·무역기지 활성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참고 3-19 》

**수산물 표준품명 및 필수규격(45개 품목)**

NO	품명	세번(HSK)	세율	비고
1	활홍민어	0301.99-9095	기본 10%, 조정 36%	사전세액 심사대상 (05년도)
2	민물장어	0301.92-9000	기본 10%, 조정 27% 또는 1,879원/kg	
3	조미오징어	1605.90-9010	기본 20%	
4	돔	0301.99-4090	기본 10%, 조정 36% 또는 2,670원/kg	06상반기
5	농어	0301.99-9059	기본 10%, 조정 38%	”
6	신선냉장복어	0302.69-9020	기본 20%	”
7	건새우	0306.23-2000	기본 20%	”
8	염장염수장새우	0306.23-3000	기본 205 조정 46% 또 는 315원/kg	”
9	냉동낙지	0307.59-1020	기본 20%	”
10	채첩	0307.91-1910	기본 30%	”
11	신선냉장대구	0302-50-0000	기본 20%	06하반기
12	냉장아귀	0302-69-9040	기본 20%	”
13	냉장명태	0302-69-1000	기본 20%	”
14	냉동조기	0303-79-6000	기본 10%	”
15	냉동꽂치	0303-79-8000	조정 31%	”
16	냉동민어	0303-79-9095	조정 53%	”
17	복어	0305-59-3000	기본 20%	”
18	냉동새우살	0306-13-1000	기본 20%	”
19	꽃게	0306-24-1010	기본 20%	”
20	가리비조개(신선)	0307-21-0000	기본 20%	”
21	냉동가리비조개	0307-29-1000	기본 20%	”
22	활낙지	0307-51-1000	기본 20%	”

NO	품 명	세 번(HSK)	세 율	비 고
23	피조개	0307-91-1590	기본 20%	06하반기
24	신선 또는 냉장갈치	0302.69-3000	기본 20%,	07년도
25	신선 또는 냉장돔	0302.69-4000	기본 20%,	"
26	동태	0303.79-1000	기본 10%, 조정 30%	"
27	신선 또는 냉장 붕 장어피렛	0304.19-1010	기본 20%,	"
28	건대구	0305.51-0000	기본 20%, 양허 20%	"
29	마른 멸치	0305.59-2000	기본 20%	"
30	기타의 게	0306.24-1090	기본 20%	"
31	냉동문어	0307.59-1010	기본 20%	"
32	냉동쭈꾸미	0307.59-1030	기본 20%	"
33	활바지락	0307.91-1800	기본 20%	"
34	해삼	0307.91-9020	기본 20%	"
35	냉동바지락	0307.99-1130	기본 20%	"
36	냉동개아지살	0307.99-1140	기본 20%	"
37	건조해삼(자숙하지 않은 것)	0307.99-2920	기본 20%	"
38	염장바지락	0307.99-3120	기본 20%	"
39	염장해파리	0307.99-3930	기본 20%, 양허 20%	"
40	조제 또는 저장처 리한 뱀장어(밀폐용기)	1604.19-1030	기본 20%	"
41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귀치포	1604.19-9010	기본 20%, 양허 20%	"
42	캐비아대용물	1604.30-2000	기본 20% 양허 20%	"
43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새우	1605.20-9090	기본 20%	"
44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해삼	1605.90-9020	기본 20%	"
45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홍합	1605.90-9040	기본 20%	"

《 참고 3-20 》

**한국원양산업협회회원사 현황**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주)경태	崔宇淳	本 (051)292-2081	本 (051)292-2080	부산 사하구 신평동 554 동일냉장내 3층	604-839
Kyungtae Co.,Ltd.		支	支		
(株)골든레이크	李炳乾 李基伯	本 (051)246-9020	本 (051)246-9024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4호	600-712
Goldenlake Co.,Ltd.		支	支		
(株)觀成	李承俊	本 (051)242-5428	本 (051)242-6994	부산 중구 동광동2가 4번지 동양빌딩 300호	600-022
Kwansung Co.,Ltd.		支	支		
極東水産(株)	劉基彦	本 (02)3402-0919/20	本 (02)3402-0966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번지 르네상스빌딩 3층	138-857
Keukdong Fisheries Co.,Ltd.		支 (051)415-5123	支 (051)415-0123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71번지 한성빌딩 2층	606-011
金榮水産	金榮日	本 (051)442-2680	本 (051)465-9513	부산 동구 초량1동 1212-21 성경빌딩 3층	601-839
Kumyoung Fisheries Co.		支	支		
金雄水産(株)	金學律	本 (051)248-0321	本 (051)248-0302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5호	600-712
Kumwoong Fisheries Co.,Ltd.		支	支		
金平水産(株)	金學律	本 (051)244-8583	本 (051)248-0302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11호	600-712
Kumpyeong Fisheries Co.,Ltd.		支	支		
那羅漁業(株)	崔鈞世	本 (051)441-6255/6	本 (051)441-6257	부산 동구 초량동 1203-10 오피스텔 프레지던트 1009호	601-729
Nara Fisheries Co.,Ltd.		支	支		
(株)南北水産	崔溶泰	本 (051)242-1521	本 (051)243-4211	부산 중구 동광동3가 15-5 삼성빌딩 602호	600-023
Nambuk Fisheries Co.,Ltd.		支	支		
南海貿易商社	崔世柱	本 (051)243-9797	本 (051)255-4453	부산 서구 충무동1가 23 태평빌딩 A동 331호	602-011
Namhae Trading Corporation		支	支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大隆水産(株)	盧仁煥	本 (02)401-7155/6	本 (02)401-7157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7 거북이빌딩 612호	138-710
Daeryung Fisheries Co.,Ltd		支 (051)244-7262/3	支 (051)255-9134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6호	600-045
大林水産(株)	李芒雨	本 (02)3470-6000	本 (02)523-8900	서울 서초구 방배3동 482-2 대림빌딩	137-821
Daerim Corporation		支 (051)250-2000	支 (051)242-0110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2-13	602-801
大熊水産(株)	鄭奉俊	本 (051)255-0158	本 (051)255-0775	부산 중구 남포동5가 신동아상가 405-2호	600-712
Daewoong Fisheries Co.,Ltd.		支	支		
大海水産(株)	王敦明	本 (051)253-0778/9	本 (051)241-7242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34-3	602-011
Daehae Fisheries Co.,Ltd.		支	支		
大現農水産(株)	王基周	本 (02)564-2300/4	本 (02)564-230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8 부옥빌딩 4층	135-081
Daehyun Agriculture & Fisheries Co.,Ltd.		支 (051)255-7705	支 (051)255-7772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 605호	600-046
大泫水産(株)	金少衡	本 (02)518-3164/5	本 (02)518-3166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3 원일빌딩 511호	135-871
Daehyun Fisheries Co.,Ltd.		支 (051)257-2457	支 (051)257-2459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번지 신동아빌딩 607호	600-712
德宇水産(株)	張經男	本 (02)522-1021	本 (02)522-10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빌딩 907호	137-070
Dukwoo Fisheries Co.,Ltd.		支 (051)253-0527/8	支 (051)253-0529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405호	600-712
(株)東南	尹明吉	本 (051)250-7030/2	本 (051)250-7026	부산 서구 암남동 739번지	602-030
Dongnam Co.,Ltd.		支	支		
(株)東邦水産	尹學守	本 (051)246-9350/1	本 (051)243-4532	부산 중구 동광동1가 2번지 조흥은행 6층	600-021
Dongbang Fisheries Co.,Ltd.		支	支		
冬柏水産(株)	全錫鎭	本 (051)242-1171/2	本 (051)247-5863	부산 서구 남부민동 643 충무쇼핑 201호	602-801
Dongbaeg Fisheries Co., Ltd.		支	支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東部水産(株)	崔溶泰	本 (051)243-3811	本 (051)243-4211	부산 중구 동광동3가 15-5 삼성빌딩 603호	600-023
Dongbu Fisheries Co.,Ltd.		支	支		
東洋水産(株)	車相九	本 (051)412-5401	本 (051)412-2623	부산 영도구 대평동1가 15	606-021
Dongyang Fisheries Co.,Ltd.		支	支		
東遠産業(株)	朴富仁	本 (02)589-3076	本 (02)589-3289 /4397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17층	137-717
Dongwon Industries Co.,Ltd.		支 (051)600-3314	支 (051)600-3377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 3층	602-833
東源水産(株)	宋璋埴	本 (02)528-8000	本 (02)564-1300/1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4 동주빌딩 6,7층	135-080
Dongwon Fisheries Co.,Ltd.		支 (051)201-0055	支 (051)206-2715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34	604-836
東熙産業	鄭英浩	本 (051)465-2140	本 (051)465-2142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3-1 노 블리안II 오피스텔 1414호	600-814
Donghee Industrial Co.		支	支		
(株) 라사교역	金点培	本 (051)245-1894	本 (051)245-1897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7-1호	600-712
Rasa Trading Co.,Ltd.		支	支		
(株)寶洋社	金一湖	本 (051)469-9432	本 (051)462-7524	부산 동구 초량1동 1211-7 DK빌딩 5층 가나마린 내	601-839
Boyang Ltd.		支	支		
賦洋漁業(株)	鄭斗烈	本 (051)242-1032	本 (051)243-7565	부산 서구 충무동1가 23 태평수산빌딩 A동 338호	602-011
Booyang Fisheries Co.,Ltd.		支	支		
思潮産業(株)	朴吉洙	本 (02)3277-1600	本 (02)313-807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5층	120-707
Sajo Industries Co.,Ltd.		支 (051)246-5371	支 (051)244-5773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2-13	602-020
思潮씨에스(株)	金正洙	本 (02)312-3797	本 (02)312-379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5층	120-707
Sajo CS Co.,Ltd.		支 (051)253-3600	支 (051)253-9029	부산 서구 암남동 721	602-030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株)三榮水産	洪日涉	本 (051)202-7637	本 (051)202-7638	부산 사하구 하단동 589-8 삼영빌딩 9층	604-850
Samyoung Fisheries Co.,Ltd.		支	支		
相一交易(株)	丁筆文	本 (051)462-8049	本 (051)462-8001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0-21 삼중빌딩 602호	600-817
Sangil Trading Co.,Ltd.		支	支		
相志水産(株)	張志銑	本 (051)255-7307	本 (051)255-7288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상가 414-2호	600-712
Sangji Fisheries Co.,Ltd.		支	支		
(株)西慶	朴 德	本 (051)255-8561/2	本 (051)256-8562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8호	600-045
Seokyoung Corporation		支	支		
瑞林水産(株)	河乙壽	本 (051)248-9515	本 (051)248-8487	부산 중구 남포동1가 35번지 흥아빌딩 502호	600-041
Seolim Fisheries Co.,Ltd.		支	支		
宣民水産(株)	閔一基	本 (051)245-3526/8	本 (051)245-3546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 805호	600-046
Sunmin Fisheries Co., Ltd.		支	支		
星庚水産(株)	朴熙燮	本 (02)2183-0033	本 (02)2183-00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24 동관1601호	135-918
Seongkyung Fisheries Co.,Ltd.		支 (051)465-9510	支 (051)465-9513	부산 동구 초량1동 1212-21 성경빌딩 3층	601-839
世進水産(株)	李長春	本 (051)255-7364	本 (051)241-7600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404호	600-045
Sejin Fishery Co.,Ltd.		支	支		
昭眞海運(株)	李容田	本 (051)468-8620	本 (051)468-8622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5-1 소진빌딩 6층	600-814
Sojin Shipping Co., Ltd.		支	支		
新羅交易(株)	裴三喆	本 (02)3434-9900	本 (02)417-9360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6-7 신라빌딩	138-190
Silla Co.,Ltd.		支 (051)663-3200	支 (051)663-3100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64-1	600-015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아그네스수産(株)	許玉姬	本	(02)732-6241/5	本	(02)732-3998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빌딩 706호	110-051
AGNES Fisheries co.,Ltd.	朴喜雄	支	(051)244-3351/2	支	(051)246-3710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92 신동아빌딩 604호	600-712
엘림수産(株)	權淳敦	本	(051)248-1428	本	(051)241-1428	부산 서구 남부민동 523-52 성진(주) 805-1호	602-804
Elim Fisheries Co.,Ltd.		支		支			
五洋水産(株)	李明星	本	(02)721-6500/9	本	(02)732-5300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76-3	100-101
Oyang Corporation		支	(051)241-2701/2	支	(051)243-3745	부산 서구 남부민동 689	602-020
仁成食品(株)	朴哲民	本	(02)790-8877	本	(02)792-3098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 인성빌딩	140-210
Insung Foods Co.,Ltd.		支		支			
仁成實業(株)	朴仁成	本	(02)749-0291/2	本	(02)749-4949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 인성빌딩	140-210
Insung Corporation	姜鍾遠	支	(051)253-0666	支	(051)253-0305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빌딩 7층	602-030
(株)인터불고	安永權	本	(02)413-3481	本	(02)413-3581	서울 송파구 삼전동 130-5 인터불고빌딩 8층	138-180
Inter-Burgo Co.,Ltd.		支	(051)253-6038/9	支	(051)253-6040	부산 서구 암남동 716 (주)냉장인터불고 제2공장 2층	602-030
(株)齊洋인터내쇼날	權五潤	本	(02)538-2255	本	(02)565-8878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1012호	135-711
Jeyang International Co.,Ltd.		支	(051)254-1417	支	(051)247-1802	부산 서구 충무동1가 34-4 성해빌딩 406호	602-011
(株)槍進交易	南文星	本	(051)255-9356/8	本	(051)254-5768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2-2 강성빌딩 303호	602-020
Changjin Trading Co.,Ltd.		支		支			
(株)靑垠水産	盧賢瓊	本	(051)265-2642/3	本	(051)265-2664	부산 사하구 장림동 510 (주)성보냉장 2층	604-846
Chungeun Fisheries Co.,Ltd.		支		支			
코삭交易(株)	申載完	本	(051)241-6050	本	(051)241-7557	부산 중구 동광동 2-4 동양빌딩 506호	600-022
Kosac Trading Co.,Ltd.		支		支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泰興피쉬어리(株)	朴盛用	本	(051)245-1710	本	(051)248-8487	부산 중구 남포동 1가 35 흥아빌딩 502호	600-041
Taeheung Fishery co., Ltd.		支		支			
(株)統營産業	張昌翼	本	(051)291-5101	本	(051)291-9343	부산 사하구 감천1동 763-20	604-071
Tongyoung Industries Co.,Ltd.		支		支			
豊林水産(株)	林利根	本	(051)245-5621/2	本	(051)242-5102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92 신동아빌딩 410호	600-712
Poonglim Fishery Co.,Ltd.		支		支			
하나수산	崔溶泰	本	(051)246-6981	本	(051)243-4211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4 LG 마린타워 420호	602-023
Hana Fisheries Co.		支		支			
韓星企業(株)	林佑根	本	(051)410-7100	本	(051)410-7101/2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71 한성빌딩	606-011
Hansung Enterprise Co.,Ltd.	朴 明	支	(02)3400-5000	支	(02)3400-5111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번지 르 네상스빌딩 2층	138-857
(株)海 拿	金榮根	本	(051)244-6656	本	(051)244-6632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 1206호	600-046
Haena International Co.,Ltd.		支		支			
海成水産	崔世柱	本	(051)243-9918	本	(051)243-9919	부산 서구 암남동 255-1 송도탑스빌아파트 2303호	602-030
Haesung Fisheries Co.		支		支			

□ 特別會員社

特別 會員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敬洋水産(株)	朴吉柱	本 (051)256-0712/3	本 (051)256-0714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빌딩 5층 507호	602-030
Kyungyang Fisheries Co., Ltd.	高完洙	支	支		
그랜드水産(株)	金榮範	本 (051)465-1923	本 (051)465-1925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5-4 동방빌딩 10층	600-717
Grand Fishery Co., Ltd.		支	支		
글로벌交易(株)	李仙鎬	本 (051)464-7081	本 (051)462-5126	부산 동구 초량동 1205-1 교직원공제회관 707호	601-010
Global Trading Co., Ltd.		支	支		
金明水産(株)	金明煥	本 (051)257-3035	本 (051)257-3038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층 610호	600-712
Kummyeong Fisheries Co., Ltd.		支	支		
金龍水産(株)	金龍吉	本 (051)243-3840	本 (051)243-3841	부산 서구 남부민동 523-29 희 창물산별관 501호	602-020
Kumyong Fisheries Co., Ltd.		支	支		
大成水産(株)	金榮範	本 (051)442-1731	本 (051)465-1925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5-4 동방빌딩 10층	600-717
Daesung Fisheries Co., Ltd.		支	支		
大洋水産(株)	金榮範	本 (051)465-1924	本 (051)465-1925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5-4 동방빌딩 10층	600-717
Daeyang Fisheries Co., Ltd.		支	支		
大昌漁業(株)	蔡寬一	本 (051)464-9596	本 (051)464-9443	부산 중구 중앙동4가 36-17 동 아제일빌딩 303호	600-815
Daechang Fisheries Co., Ltd.		支	支		
德進通商(株)	李坤洙	本 (051)246-1041/2	本 (051)246-1052	부산 중구 동광동2가 1 삼호빌딩 1006호	600-022
DeokJin Trading Co., Ltd.		支	支		
DNS水産	李龍大	本 (051)468-1211	本 (051)465-6646	부산 동구 초량3동1147- 14 국제오피스텔1503호	601-715
DNS Fisheries Company		支	支		

特別 會員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株)미래수산	金明志	本 (051)242-2513/4	本 (051)242-2505	부산 서구 남부민동 108-3	602-020
Mirae Marine Co., Ltd.		支	支		
(株)바다사랑	金光植	本 (051)255-8035/7	本 (051)255-8038	부산 서구 남부민3동 654 LG 마린타워 301호	602-803
BADASARANG Co., Ltd.		支	支		
(株)바라도	丁仁榮	本 (033)661-5688	本 (033)661-225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166-1우신아파트 105동 402호	210-761
BARADO Co., Ltd.		支	支		
奉江産業(株)	李守源	本 (051)247-9172	本 (051)246-4198	부산 서구 남부민1동 69	602-800
Bongkang Industrial Co., Ltd.		支	支		
(株)三信水産	李炳海	本 (051)245-8210	本 (051)242-5734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2 전주식당 2층	602-801
Samshin Fisheries Co., Ltd.		支	支		
瑞德漁業(株)	시아푸수웨이	本 (051)256-6851/2	本 (051)256-6853	부산 사하구 다대1동 820-1 영동비치타워 709호	604-825
Seoduck Fishery Co., Ltd.	(夏福水)	支	支		
(株)瑞東인터내셔널	李 實	本 (02)780-6510	本 (02)780-65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가든빌딩 603호	150-871
Seodong International Co., Ltd.		支 (051)254-6012	支 (051)254-7877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5호	600-712
西海水産(株)	南相泰	本 (051)247-0522	本 (051)257-2798	부산 서구 남부민동 689-4 오양수산빌딩 202-1호	602-020
Seohae Fisheries Co., Ltd.		支	支		
鮮宇實業(株)	鄭時澤	本 (031)946-3967	本 (031)946-396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624-5	413-832
Sunwoo Corporation		支	支		
新地水産(株)	崔津碩	本 (051)816-6400	本 (051)816-6401	부산 부산진구 전포3동 889-9 유성넥스빌 1208호	614-868
Shinji Fisheries Co., Ltd.		支	支		

特別 會員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株)씨월드크프레이션	朴赫眞	本	(051)257-0447	本	(051)257-0448	부산 서구 남부민동 523-37 우신냉장 203호	602-803
Sea World Corporation		支		支			
(株)에스.엔.에이치	徐義顯	本	(051)202-9501	本	(051)202-7638	부산 사하구 하단1동 589-8 삼영빌딩 9층	604-850
S&H Co., Ltd.		支		支			
(株)예람교역	金致永	本	(051)242-0391	本	(051)242-0392	부산 서구 암남동 721 사조물류센타 1508호	602-030
Yeram Co., Ltd.		支		支			
웨스트웨이漁業(株)	金義培	本	(051)710-9877	本	(051)441-3791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5-4 동방빌딩 10층	600-717
West Bay Fishery Co., Ltd.		支		支			
裕新水産(株)	宋鎭鎬	本	(051)241-5655	本	(051)241-5677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 617호	602-833
Yushin Fishery Co., Ltd.		支		支			
(株)유앤씨	金光植 金政奎	本	(051)710-8035	本	(051)710-8038	부산 사하구 감천동 763-20 703호	604-071
U & Sea Co., Ltd.		支		支			
(株)인터투나	崔恩周	本	(051)243-0221	本	(051)243-0231	부산 중구 남포동6가 25-1 302호	600-700
INTER TUNA		支		支			
正安水産(株)	裴鐘浩	本	(051)253-3424/5	本	(051)253-3426	부산 서구 암남동 714 보성냉장 202호	602-030
Jeongahn Fishery Co., Ltd.		支		支			
조나단피셔리(株)	金洛坤	本	(051)442-5665	本	(051)442-5885	부산 동구 초량동 1204-12 한창빌딩 602호	601-010
Jonathan Fisheries Co., Ltd.		支		支			
焜岩産業(株)	李守甲	本	(051)413-0600	本	(051)414-7181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64 대창빌딩 6층	606-011
Juahm Industries Co., Ltd.		支		支			

特別 會員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鎮輔水産(株)	金容九	本	(051)242-2530	本	(051)247-9278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 빌딩 907호	602-833
Jinbo Fisheries Co., Ltd.		支		支			
카리스水産(株)	康泰烈	本	(051)710-8026/7	本	(051)710-8028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0-1 K.M빌딩 504호	602-801
Caris Fisheries Co., Ltd.		支		支			
KSP교역	金仁守	本	(02)2077-1548	本	(02)2077-1547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14-1 용성비즈텔1601호	140-871
KSP Fishtrading Co., Ltd.		支		支			
탑水産(株)	安田光雄	本	(051)208-6961	本	(051)208-6960	부산 사하구 감천동 387-12	604-070
Top Fisheries Co., Ltd.		支		支			
(株)泰榮交易	李京一	本	(051)231-2260/1	本	(051)231-2259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2-2 강성빌딩 303호	602-020
Taeyoung Trading Co., Ltd.		支		支			
(株)투리스	李基伯	本	(051)254-6905	本	(051)246-9024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4-1호	600-712
Toolees Co., Ltd.		支		支			
(株)팬타스	鄭有珉	本	(051)243-3800	本	(051)243-5900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운 701호	600-046
PANTAS CORPORATION		支		支			
(株)海王物産	辛錫奎	本	(051)248-0409	本	(051)245-4342	부산 서구 충무동1가 39-45 창성빌딩 806호	602-011
Haiwang Products Co., Ltd.		支		支			
弘島水産	姜景哲	本	(051)412-1098	本	(051)414-7172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77	606-021
Hongdo Fisheries Co.		支		支			





# 어업교섭과

1. 남북수산협력 활성화 .....	167
2. 한·일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	169
3.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	171
4. 한·중·일 어업인 자율적 민간어업협력 강화 .....	173

## 《참고》

《4-1》 북한산 수산물 반입(Import) 현황 .....	14
《4-2》 우리 수산물 대북 반출 현황 .....	15
《4-3》 한·일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	16
《4-4》 한·중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	17
《4-5》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	18
《4-6》 중국어선 조업위반 단속 현황 .....	19
《4-7》 일본EEZ 입어 한국어선 입어규모 .....	18
《4-8》 한국EEZ 입어 일본어선 입어규모 .....	12
《4-9》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 피납현황 .....	13
《4-10》 한·중 양국 EEZ내 조업현황 .....	15
《4-11》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16
《4-12》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18
《4-1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10
《4-1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12



## 가. 현 황

- 동·서해 북한수역에서 수년간 지속된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및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인들 불만 고조
  - \* 동해 중국어선 조업현황 : ('04) 100척 → ('05) 939 → ('06) 582 → ('07) 497
  - \* 서해 불법어선 나포현황 : ('04) 96척 → ('05) 85 → ('06) 59 → ('07) 70
  
- 증가하는 남북 수산물 교역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해 북한의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 \* 남북수산물 교역액 : ('04) 70백만\$ → ('05) 83백만 → ('06) 101백만 → ('07) 125백만
  - \* 남북수산물 교역량 : ('04) 43천톤 → ('05) 51천톤 → ('06) 54천톤 → ('07) 58천톤
  
- 주요현안사항 타결을 위하여 남북수산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어업인의 공동이익 도모 및 수산협력 활성화

## 나. 추진실적

- 남북 서해공동어로 추진 합의
  - 남북수산실무 회담('05.7. 개성)에서 서해수역에서 공동어를 추진하되, 조업수역 등은 군사회담에서 정하기로 합의
    - \* 수차례 개최된 남북군사당국간 회담에서 서해공동어로수역 문제를 협의 하였으나, 북측의 NLL 재설정 주장으로 진전 없음
  
- 북측 동해수역 입어 및 수산물 생산·가공 등 협력사업 합의
  -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07.12. 개성)에서 '08년 중 북측 동해수역 입어 추진 합의 및 수산물 종묘배양장 및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현지조사 합의

#### 다. 08년 중점 추진 방향

##### □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공동어로 실현

- 남북 군사당국간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및 군사보장장치가 마련되면 북측 수산당국과 구체적인 공동어로 실행방안 협의

##### □ 남측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 추진

- 북측 동해수역 입어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 현지실태 조사
- 남북 수산당국간 실무접촉을 통해 입어수역 설정 및 조업 조건, 추진일정 협의

#####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사업 추진

- 수산물 종묘배양장, 가공공장 설립을 등을 위한 북한 현지 실태조사 실시 등

### 가. 현 황

- 일측이 우리어선의 소진율 저조, 불법조업, 조업분쟁 등을 이유로 우리 주력업종에 대한 입어규모 축소 및 조업조건 강화 추진
-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이후 입어규모 대폭 축소
  - 할 당 량 : ('99) 149,218톤 → ('08) 60,000톤 (60%감소)
  - 조업척수 : ('99) 1,704척 → ('08) 1,000척 (42%감소)
- 우리측 주력업종인 연승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등에 대한 조업규제 강화
  - 특히 '09년에는 우리 연승어업에 대해 갈치 할당량의 축소, 어구규제, 입어절차규칙 강화등을 예고하고 있어 협상 난항 전망

### 나. 추진실적

- UN 해양법협약 발효('94.11)에 따른 EEZ체제 도입으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 불가피
- 한·일 어업협정 체결('98.11) 및 발효('99.1)
-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익년도 상대국 수역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결정

### 다. 08년 중점 추진 방향

- 2008년도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
- 할당량 소진율 제고 및 조업질서 확보를 통한 양국 신뢰관계 유지
  - 할당량/입어척수 : 60,000톤/ 1,000척(전년 60,500톤/1,025척)
  - 소진율 제고를 위한 현지 지도강화 및 전배제도 활용 적극 유도
  -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조업지도 강화

□ 2009년도 입어협상 대응전략 수립

○ '99년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이후 '09년도 입어협상이 최대 고비로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규제업종에 대한 감척사업 확대, 불법 조업어선에 대한 허가 배제 및 할당량 최소화, 민간간 협의를 통한 연승어구규제 협의 추진 등

□ 한·일 어업협정 이행 관련 각종 회의 준비

○ 해양생물자원 전문가소위원회, 어업공동위원회 등에 대비 관련 어업인 및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

## 가. 현 황

-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의존도를 낮추기위해 조업규제 강화 및 자원 관리 강화 필요
  - 한·중 협정이후 중국어선 입어규모 대폭 축소
    - 조업척수 : (협정전) 12,192척 → ('01) 2,796척 → ('08) 1,859척
    - 할당량 : (협정전) 440,758톤 → ('01) 164,400톤 → ('08) 71,000톤
  - 양국 EEZ 수역에서의 자원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어종별로 어획량을 결정하는 “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조속 도입
-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 및 서해특정금지구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 미미
  - 잠정조치수역의 한·중 공동자원조사를 위한 협의 추진
  - 서해특정금지구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단속방안 강구

## 나. 추진실적

- UN 해양법협약 발효('94.11)에 따른 EEZ 체제 도입으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 불가피
  - '00. 8. 3 어업협정체결 서명, '01. 6. 30 어업협정 발효
  -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익년도 상대국수역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결정

## 다. 08년 중점 추진 방향

### □ 2008년도 합의사항 이행

#### ○ 상대국 수역내 상호입어규모

- 우리어선 : 1,600척/68,000톤 (전년과 동일)
- 중국어선 : 1,859척/71,000톤 (전년 1,917척/71,930톤)

#### ○ 어종별·어획할당제 조속 도입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 어획할당제 도입관련 중국시찰단 일정 및 브리핑 계획마련

####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대책 강화

-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 담보금 상향조정 협의
  - (현행) 평균 2,000만원 → (조정) 3,000만원
-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지도단속기관 협의회 개최(5월 중순)
  - 대상기관 : 지도선 사무소 단속기관
  - 협의내용: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실태 및 동향, 위조허가장 식별방법 등

### □ 2009년도 입어협상 대응전략 수립

#### ○ 어업공동위 실무회의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여 양국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 추진

- 시기 : 11월 → 10월, 횟수 : 2회 → 3회(과장급 1회 추가)

#### ○ 내년도 협상시 “양국어선의 실질적 입어균형 및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도입”에 전력

### □ 각종 회의 준비 및 방향 제시

#### ○ 한중 해양생물자원 전문분과위, 어업실무회의, 교차승선 및 교류 등에 대비 관련전문가, 어업인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



## 가. 현 황

- 한·일간 민간협력은 원활하게 추진 중이나, 한·중간 민간협력은 중국측의 무관심, 회의 기피 등으로 추진 실적 미흡
- 중국어선의 우리 서해특정해역의 불법조업, 동해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잠정조치수역의 조업분쟁 등으로 인해 우리어업인들 불만 고조

## 나. 추진실적

- 한·중·일 양국 및 3국 어선간 자율적 조업질서유지 도모를 위해 민간간 약정체결
- 한·일 민간어업약정 체결 ('03.5월)
- 한·중 민간어업약정 체결 ('04.11월)
- 한·중·일 민간어업협의 정례화 합의 ('04.10월)

## 다. 08년 중점 추진 방향

- 한·중·일 양국 및 3국간 민간협회의 지속적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한·일간 일측의 동해중간수역에서의 자원보호방안 조속실현 요구에 대해 대응전략 마련 및 지속적 협의추진
- 한·중 어선간 조업분쟁 사례수집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한 우리측 주도의 한·중 민간협회의 활성화 도모
- 한·중·일 3국 어선의 공동조업수역에서의 조업질서유지 및 자원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우리측 주도로 협의 적극추진

《 참고 4-1 》

**북한산 수산물 반입 현황**

(단위 : kg, 천달러)

품 목(Items)	2004. 1 ~ 12월		2005. 1 ~ 12월		2006. 1 ~ 12월		2007	
	중량(Weight)	금액(Value)	중량(Weight)	금액(Value)	중량(Weight)	금액(Value)	중량(Weight)	금액(Value)
수산물(합계)	42,366,568	68,210	50,994,433	82,171	53,743,984	99,562	57,099,567	123,188
명태	1,000	1	49,280	62	58,212	116	4,172	6
넙치	6,986	57	878	9	4,504	30	13,650	109
가자미	16,960	11	13,000	16	5,790	8	-	-
대구	88,504	109	75,998	100	10,986	16	-	-
뱀장어	205	-	-	-	-	-	-	-
기타어류	69,345	156	54,923	193	69,941	279	359,771	495
새우	7,000	4	307,822	1,881	701,996	4,462	1,724,567	13,677
꽃게	132,235	1,283	5,909	64	30,000	528	65,284	409
기타게	157,930	1,012	144,734	594	238,055	1,583	598,404	4,916
오징어	107,382	166	37,900	54	33,758	252	10,000	9
문어	1,960,670	4,499	2,139,573	5,450	2,614,048	7,747	1,811,870	6,661
낙지	15,524	27	118,960	202	121,607	216	151,704	354
굴	160,125	246	155,022	226	603,413	897	425,438	564
피조개	44,274	86	127,940	283	173,112	414	495,445	1,334
기타조개	25,793,018	21,343	32,193,552	31,161	32,618,492	35,136	33,863,184	39,455
기타연체동물	8,559,608	9,614	9,895,634	11,637	9,388,312	12,445	8,969,045	11,924
미역	8,175	7	-	-	-	-	15,819	17
한천	-	-	1,825	7	-	-	1,200	38
기타해조류	330	4	3,250	13	14,579	16	13,500	19
어육	-	-	12,800	34	10,000	32	-	-
명란	7,408	41	4,343	6	-	-	-	-
기타어란	4,975	10	-	-	1,420	4	-	-
기타수산물통조림	780	3	10,779	64	20,440	59	1,620	19
새우젓							120	1
기타염장수산물	116,862	238	251,280	475	198,025	382	182,138	349
건조수산물	2,066,561	16,948	2,204,226	17,781	1,986,347	16,901	2,281,489	19,496
기타수산가공품	2,753,600	9,377	2,915,506	8,957	4,404,880	15,133	5,661,195	19,939
수산부산물	3,400	12	19,875	45	14,420	70	12,992	32
기타수산물	283,712	2,956	249,425	2,858	421,647	2,838	436,961	3,367

《 참고 4-2 》

우리 수산물 대북 반출 현황

(단위:Kg, 천달러)

품 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총계	849,977	2,074	373,586	1,238	625,797	995	557,464	1,364
조기	17,487	53			-	-	-	-
갈치	3,409	10	4,400	13	-	-	-	-
명태	396,990	321	58,510	46	-	-	-	-
넙치	1,588	10			-	-	-	-
가자미	-	-	-	-	-	-	42	-
대구	-	-	2,790	3	-	-	37	-
뱀장어	2,042	6	-	-	-	-	-	-
기타어류	91,789	295	29,496	21	10,979	9	14,583	77
새우	941	5	8,500	63	797	3	-	-
꽃게	817	15			-	-	-	-
기타게	10,075	46	1,571	7	5,272	44	7,807	39
오징어			17,679	32	4,528	16	107	2
문어	14,333	28			15,815	51	70,200	169
낙지	1,000	5			40	-	-	-
굴	-	-	1,040	4	-	-	33,000	46
피조개	3,340	7	1,260	3	-	-	-	-
기타조개	52,337	34	13,040	20	244,876	209	145,756	164
기타연체동물	68,873	46	73,160	45	210,280	167	61,570	60
김	1,560	14	969	2	1,134	4	2,899	18
미역	10,920	18	761	2	30,677	242	-	-
기타해조류	45,472	645	1,221	3	1,611	4	17,367	44
어육					360	-	-	-
한천					-	-	-	-
어류통조림			1,086	3	1,486	4	1,790	8
기타수산물통조림			1,008	3	111	1	1,554	12
명란	-	-			-	-	-	-
기타어란	-	-			-	-	-	-
염장어란	-	-			-	-	-	-
기타염장수산물	1,000	2	124	0	-	-	-	-
건조수산물	78,639	351	52,087	344	12,810	56	23,200	182
기타수산가공품	41,290	138	98,082	602	67,926	169	160,161	452
수산부산물	-	-	-	-	-	-	7,275	20
기타수산물	6,075	25	6,802	22	17,095	15	10,115	71

《 참고 4-3 》

**한·일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연도	한 국 어 선						일 본 어 선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99	1,704	674	39.6	149,218	27,335	18.3	1,601	517	32.3	93,773	22,117	23.6
'00	1,639	863	52.7	125,197	31,422	24.1	1,601	535	33.4	93,773	7,293	7.8
'01	1,464	952	65.0	99,773	23,839	23.9	1,459	479	32.8	93,773	16,193	17.3
'02	1,395	992	71.1	89,773	28,879	32.2	1,395	354	25.4	89,773	19,669	21.9
'03	1,232	875	71.0	80,000	28,104	35.1	1,232	193	15.7	80,000	13,158	16.4
'04	1,098	758	69.0	70,000	20,669	29.5	1,098	271	24.7	70,000	25,032	35.8
'05	1,086	731	67.3	67,000	20,306	30.3	1,086	183	16.9	67,000	9,640	14.4
'06	1,050	749	71.3	63,500	24,125	38.0	1,050	148	14.1	63,500	9,517	15.0
'07	1,025	675	65.8	60,500	23,802	39.3	1,025	137	13.4	60,500	24,335	40.2
합계	11,693	7,269	62.2	804,961	228,481	28.4	11,547	2,817	24.3	712,092	146,954	20.6

☞ 한국어선 10업종(2006년도) : 콩치붕수망, 오징어채낚기, 대형기저, 중형기저, 선망, 연승, 외줄낚시, 복어채낚기, 갈치채낚기, 원양오징어

☞ 일본어선 10개업종(2006년도) : 대중형선망, 이서저인망, 총합저인망, 오징어채낚기, 연승, 예인조어업, 가다랭이일본조, 일본조어업, 청새치돌붕어업, 고정식자망

《 참고 4-4 》

**한·중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구 분	한 국 어 선				중 국 어 선			
	합의내용		어획실적		합의내용		어획실적	
	척수	할당량	어획량	%	척수	할당량	어획량	%
2001. 6. ~ 2002	1,402	90,000	3,993	4.4	2,796	164,400	45,837	27.9
2003	1,402	60,000	3,777	6.3	2,531	93,000	37,980	40.8
2004	1,402	60,000	3,564	5.9	2,250	83,000	17,340	20.9
2005	1,600	68,000	5,580	8.2	2,100	77,500	27,879	36.0
2006	1,600	68,000	2,623	3.9	1,975	72,900	10,847	14.9
2007	1,600	68,000	2,821	4.1	1,917	71,930	51,016	70.9

《 참고 4-5 》

###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톤) □ 우리어선

(2008년기준/단위: 척/

업종	2007		2008		입어규모 변화	
	척수	할당량	척수	할당량	척수증감	할당량증감
계	1,600	68,000	1,600	68,000	-	-
저인망류	187(18)	9,165	187(18)	9,165	-	-
선망	173	12,000	173	12,000	-	-
자망류	167	4,742	167	4,742	-	-
안강망	87	2,180	87	2,180	-	-
낙시류	881(226)	33,624	881(226)	33,624	-	-
통발류	105(17)	6,289	105(17)	6,289	-	-
운반선	13	-	13	-	-	-

\* ( )는 북위 27도 이남수역 조업어선. 운반선은 합계에 미포함

□ 중국어선

<입어규모>

(단위: 척/톤)

업종	2007		2008		입어규모 변화	
	척수	할당량	척수	할당량	척수증감	할당량증감
계	1,917	71,930	1,859	71,000	▽58	▽930
타망	992	47,340	948	46,701	▽44	▽639
- 쌍타망	956	45,608	916	45,211	▽40	▽509
- 단타망	36	1,732	32	1,490	▽4	▽130
위망	100	12,041	96	11,559	▽4	▽482
유망	770	8,408	760	8,599	▽10	191
우조	55	4,141	55	4,141	-	-
운반선	69	-	68	-	▽1	-

<조업조건>

조업조건		2006	2007	증감
계		1,616	1,509	△107척
타망류	총톤수 220-300톤	50	44	△6
	나-(2)수역 190톤 이하	110	96	△14
	동시최고조업척수	640	620	△20
위망	210톤 이상	21	20	△1
유망	100-150톤이하 입어	333	273	△60
	동시최고조업척수	462	456	△6

《 참고 4-6 》

**중국어선 조업위반 단속 현황**

□ 총 단속건수(위반유형별 분류)

(2007년말기준)

	합계	나 포												훈방
		계 (나포)	영해침범 (특정금지 구역내 영해)	EEZ위반										
				소계	특정금지 구역침범	무허가 (특정 해역)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							
							소계	망목 위반	조업 수역	조업 방법	조업 일 지 관 위 반 어 장 적 도 비 치	입 역 통 보	조 기 입 역	
°'99	80	80	60 ( - )	20	20	-	-	-	-	-	-	-	-	-
°'00	62	62	34 ( - )	28	28	-	-	-	-	-	-	-	-	-
°'01	174	174	34 ( - )	140	27	62 (11)	51	9	6	18	14	4	-	-
- 1~6월	49	49	30 ( - )	19	19	-	-	-	-	-	-	-	-	-
- 7~12월	125	125	4 ( - )	121	8	62 (11)	51	9	6	18	14	4	-	-
°'02	175	175	30 ( 5 )	145	10	108 ( 7 )	27	19	5	2	1	-	-	-
°'03	240	240	32 (29)	208	86	88 ( 9 )	34	14	9	2	4	1	4	-
°'04	443	437	47 (47)	390	49	101 (13)	240	8	5	-	217	-	-	10
°'05	669	584	41 (38)	543	47	146 (18)	350	8	4	-	310	-	-	28
°'06	549	522	23 ( 21 )	499	38	133 (12)	328	6	5	3	246	21	47	27
°'07	508	494	26 (23)	468	47	70 (31)	351	7	20	260	41	2	21	14
°협정 이후	2,709	2,577	203 (163)	2,374	285	708 (101)	1,381	71	34	27	1,056	77	6	110

## □ 업종별 위반사항

	계	기 선 재 량	유 자 량	선 량	통 발	연 승	트 를	안 장 량	형 량	운 반 선	조 량
° '99	80	72	6	-	-	-	2	-	-	-	-
° '00	62	49	6	4	1	-	1	1	-	-	-
° '01	174	118	51	-	2	1	-	1	-	1	-
-1.1 ~ 6.29	49	41	8	-	-	-	-	-	-	-	-
-6.30 ~ 12.31	125	77	43	-	2	1	-	1	-	1	-
° '02	175	148	23	-	4	-	-	-	-	-	-
° '03	240	188	24	-	12	-	-	-	15	1	-
° '04	443 ( 6)	207	204 ( 5)	2	9	1	-	1	4	14 ( 1)	1
° '05	669 (85)	282 (31)	328 (46)	14 ( 2)	14	1	-	4	2	23 ( 6)	1
° '06	549 (27)	352 (16)	176 ( 11)	3	7	1		2		8	
° '07	508 (14)	385 ( 12)	113 ( 2)	2 ( -)	2 ( -)				1	5	

※ ( )는 훈방척수임

## □ 월별 단속현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9	80	7	-	5	8	7	8	-	-	4	19	18	4
'00	62	2	1	7	3	21	5	-	-	4	1	18	-
'01	174	-	2	16	16	11	4	3	1	13	37	40	31
'02	175	13	14	30	20	15	4	1	14	3	17	22	22
'03	240	15	19	29	4	22	27	5	13	26	22	35	23
'04	443 ( 6)	8	10	71 ( 2)	67 ( 2)	34 ( 1)	8	3	3	24	95 ( 1)	84	36
'05	669 (85)	31	7	43	65	53	6	4	15	65	206 (10)	147 (55)	27 (20)
'06	549 (27)	20 ( 7)	54 ( 8)	64 ( 1)	50 ( -)	45 ( 5)	13 ( -)	4 ( -)	16 ( -)	54 ( 3)	113 ( 1)	49 ( -)	67 ( 2)
'07	508 (14)	28 ( -)	47 ( 2)	107 ( 4)	56 ( 2)	22 ( -)	16 ( -)	0 ( -)	27 ( -)	20 ( -)	83 ( 3)	69 ( 3)	33 ( -)



《 참고 4-7 》

**일본EEZ 입어 한국어선 입어규모**

(2008년기준/단위 : 척, 톤)

업종 어종	계	꽂 치 봉수망	오징어 채낚기	대 형 기 저	중 형 기 저	선 망	연 승	외 줄 낚 시	복 어 채낚기	갈 치 채낚기	원 양 오징어	
총할 당량	'07	60,500	7,000	8,600	566	2,997	34,330	5,521	300	1,114	67	5
	'08	60,000	7,000	8,480	500	2,997	34,230	5,521	300	900	67	5
허가 척수	'07	1,025	23(5)	383	39(5)	20	178	272	50	50	9	1
	'08	1,000	23(5)	383	39(5)	20	178	257	45	45	9	1
꽂 치		7,000	7,000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7,000	7,000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전 갱 이		3,5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3,5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3,5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3,5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고등어류		23,385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23,385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23,385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23,385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정 어 리		-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살오징어		8,550	금지	6,600	20	기타	1,93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8,750	금지	6,800	20	기타	1,93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가자미류		1,3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1,300	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1,1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1,100	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참 돔		220	금지	목적채 포금지	28	100	기타	기타	20	72	기타	목적채 포금지
		220	금지	목적채 포금지	28	100	기타	기타	20	72	기타	목적채 포금지
갈 치		2,080	금지	금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2,060	10	금지	10	금지
		2,080	금지	금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2,060	10	금지	10	금지
삼 치		-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기 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기 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기 타		14,465	금지	2,000	518	1,597	5,515	3,461	270	1,042	57	5
		13,965	금지	1,680	452	1,797	5,415	3,461	270	828	57	5

(주) 꽂치봉수망의( )는 부속선의 척수로 전체척수에 포함  
 대형기선저인망의( )는 대형트롤의 척수로 전체척수에 포함

《 참고 4-8 》

한국EEZ 입어 일본어선 입어규모

(2008년기준/단위 : 척, 톤)

어종	업종	계	대중형 선망어 업	이서저 인망어 업	총합저 인망어 업	오징어 채낚기	연승 어업	예인조 어업	가다랭 이일본 조	일본조 어업	청새치 돌봉어 업	고정식 자망어업
총합 당량	'07	60,500	50,410	3,849	333	1,894	667	2,565	700	11	1	70
	'08	60,000	50,410	3,849	333	1,894	667	2,065	700	11	1	70
허가 척수	'07	1,025	177(142)	26(7)	54	140	103	480	29	7	1	8
	'08	1,000	177(142)	26(7)	54	140	103	455	29	7	1	8
전갱이		3,000	3,000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000	3,000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고등어류		37,814	37,814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7,814	37,814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정어리		-	목적채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	목적채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살오징어		3,150	1,500	220	30	1,4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150	1,500	220	30	1,4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가자미류		40	금지	기타	40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40	금지	기타	40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참돔		78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65	5	기타	2	기타	6
		78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65	5	기타	2	기타	6
갈치		50	목적채포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50	기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삼치		-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붕장어		50	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50	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16,318	8,096	3,529	263	494	602	2,560	700	9	1	64
		15,818	8,096	3,529	263	494	602	2,060	700	9	1	64

(주) 대중형 선망( )는 등선 71(탐색선 8척포함)척, 운반선 71척의 합계로 총척수에 포함  
이서저인망의( )는 트롤선 5척 및 운반선 2척의 합계척수로 총척수에 포함

《 참고 4-9 》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 피납현황**

□ 위반시기별

(단위 : 척)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83	24	23	14	15	17	18	14	8	8	19	9	14
'99	20	4	2	-	2	-	1	3	2	1	1	1	3
'00	22	2	2	1	1	-	2	2	2	2	5	1	2
'01	24	2	5	1	2	2	2	3	-	1	2	2	2
'02	32	3	6	2	3	5	2	2	1	2	3	1	2
'03	27	6	-	1	2	3	3	1	2	1	4	2	2
'04	19	3	4	2	-	-	4	1	-	-	2	2	1
'05	15	2	3	3	3	1	-	1	-	-	1	-	1
'06	10	2	1			2	1	1	1	1			1
'07	15			4	2	4	3				1	1	

□ 업종별

(단위 : 척)

	계	소형 기저	연승	채낚기	통발	자망	중형 기저	대형 기저	선망	트롤	기타
계	183	21	60	39	25	9	6	7	10	2	4
'99	20	6	5	3	1	4	-	1	-	-	-
'00	22	2	3	6	5	1	3	1	1	-	-
'01	24	6	7	4	2	1	-	-	3	1	
'02	32	2	9	10(복어)	2	1	2	-	3	-	3
'03	27	4	10 (외출1)	5	3			1	3		1
'04	19	1	10	4	-	1	1	1	-	1	-
'05	15		5	2	8 (홍게1)						
'06	10		4 (외출1)	4		1		1			
'07	15		7 (복합2)	1	5			2			

□ 위반사항별

(단위 : 척)

	계	무허가	조업조건 및 절차 위반						기 타
			금지구역	조업구역	어구위반	허가장미소지 및 조업일지부실기재 어창용적도미소지	표지판 미부착	어획물 위 반	
계	183	46	21	15	8	70	6	-	17
'99	20	12	4	2	-	1	-	-	1
'00	22	4	7	2	3	2	-	-	4
'01	24	5	3	3	4	5	1	-	3
'02	32	4	1	2	-	23	1	-	1
'03	27	5 (영해1)	1	2	1	10	4	-	4
'04	19	3	2 (영해1)	1	-	11	-	-	2
'05	15	8 (영해2)	1	2		3			1
'06	10	1	1	1		7			
'07	15	4 (영해4)	1			8 (할당량 초과1)			2

◆ 일본어선 나포(협정이후) : 총15척('99년 4, '00년 1, '01년 3, '02년 : 1, 04 : 6)

□ 시·도별

(단위 : 척)

	계	부산	경남	울산	제주	강원	경북	전남
계	183	61	36	4	47	21	10	4
'99	20	9	8	-	2	1	-	-
'00	22	8	4	4	2	2	2	-
'01	24	11	4	-	4	4	1	-
'02	32	11	3	-	8	8	1	1
'03	27	10	3	-	10	2	1	1
'04	19	6	-	-	7	3	2	1
'05	15	1	8		5		1	
'06	10	2	1		3	1	2	1
'07	15	3	5		6		1	

《 참고 4-10 》

**한·중 양국 EEZ내 조업현황**

(單位 : 隻, 톤)

연도별	한국어선						중국어선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합의 척수	입어 척수	입어율 (%)	합의량	어획량	소진율 (%)	합의 척수	입어 척수	입어율 (%)	합의량	어획량	소진율 (%)
2001. 6.30 ~ 2002.12.31	1,402	403	28.7	90,000	3,993	4.4	2,796	939	33.6	164,400	45,837	27.9
2003	1,402	329	23.5	60,000	3,777	6.3	2,531	1,532	60.5	93,000	37,980	40.8
2004	1,402	380	27.1	60,000	3,564	5.9	2,250	1,310	58.2	83,000	17,341	20.9
2005	1,600	383	23.9	68,000	5,580	8.2	2,100	1,586	75.5	77,500	27,879	36.0
2006	1,600	232	14.5	68,000	2,622	3.9	1,975	1,729	87.5	72,900	30,386	41.7
2007	1,600	198	12.4	68,000	2,821	4.1	1,917	1,843	96.1	71,930	51,016	70.9
합 계	9,006	1,925	21.7	414,000	22,357	5.5	13,569	8,939	68.6	562,730	210,439	39.7

《 참고 4-11 》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서해상에서의 평화정착과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산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의 원칙에서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공동어로를 진행하기로 한다.
  - ① 공동어로 수역과 공동어로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하기로 한다.
  - ② 공동어로에서의 어로기간, 어선 수 및 어구이용, 입어료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서해상의 정해지는 수역에서 쌍방의 어선이 아닌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수산물생산, 가공 및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해 우량품종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를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어장진출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6.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올해안에 착수하고, 이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 저장고 건설을 위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단 규모는 20명 이내로 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제반 부지조건을 조사하기로 한다.
  - ② 남과 북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은 부지, 인력, 기초자료와 남측 인원들의 현장방문 및 설비, 물자의 반입 등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고, 남측은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과 설비,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 필요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 저장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 물자 등에 대한 대책을 쌍방이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건설규모와 건설계획 등의 협의를 위해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 ④ 남과 북은 우량종사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기술협의를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소독장비의 현대화,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중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2008년 중에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대상수역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 ②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④ 남과 북은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에 개성에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5일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북남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박 현	출 리 만 성

## 《 참고 4-13 》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 어업에관한협정"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상기하고, 양국이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관한국제 연합협약"(이하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양국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양국간에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 2 조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 제 3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 제 4 조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 5 조

1.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타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임검·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 6 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 및 그 후 부과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 제 7 조

1. 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

나. 북위 32도 57.5분, 동경 127도 41.9분의 점

다. 북위 33도 01.3분, 동경 127도 44.0분의 점

라. 북위 33도 08.7분, 동경 127도 48.3분의 점

마. 북위 33도 13.7분, 동경 127도 51.6분의 점

바. 북위 33도 16.2분, 동경 127도 52.3분의 점  
 사. 북위 33도 45.1분, 동경 128도 21.7분의 점  
 아. 북위 33도 47.4분, 동경 128도 25.5분의 점  
 자. 북위 33도 50.4분, 동경 128도 26.1분의 점  
 차. 북위 34도 08.2분, 동경 128도 41.3분의 점  
 카. 북위 34도 13.0분, 동경 128도 47.6분의 점  
 타. 북위 34도 18.0분, 동경 128도 52.8분의 점  
 파. 북위 34도 18.5분, 동경 128도 53.3분의 점  
 하. 북위 34도 24.5분, 동경 128도 57.3분의 점  
 거. 북위 34도 27.6분, 동경 128도 59.4분의 점  
 너. 북위 34도 29.2분, 동경 129도 00.2분의 점  
 더. 북위 34도 32.1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러. 북위 34도 32.6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머. 북위 34도 40.3분, 동경 129도 03.1분의 점  
 버. 북위 34도 49.7분, 동경 129도 12.1분의 점  
 서. 북위 34도 50.6분, 동경 129도 13.0분의 점  
 어. 북위 34도 52.4분, 동경 129도 15.8분의 점  
 저. 북위 34도 54.3분, 동경 129도 18.4분의 점  
 처. 북위 34도 57.0분, 동경 129도 21.7분의 점  
 커. 북위 34도 57.6분, 동경 129도 22.6분의 점  
 터. 북위 34도 58.6분, 동경 129도 25.3분의 점  
 퍼. 북위 35도 01.2분, 동경 129도 32.9분의 점  
 허. 북위 35도 04.1분, 동경 129도 40.7분의 점  
 고. 북위 35도 06.8분, 동경 130도 07.5분의 점  
 노. 북위 35도 07.0분, 동경 130도 16.4분의 점  
 도. 북위 35도 18.2분, 동경 130도 23.3분의 점  
 로. 북위 35도 33.7분, 동경 130도 34.1분의 점  
 모. 북위 35도 42.3분, 동경 130도 42.7분의 점  
 보. 북위 36도 03.8분, 동경 131도 08.3분의 점  
 소.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 제 8 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 나.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 제 9 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I 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 나. 북위 35도 33.75분, 동경 131도 46.5분의 점
  - 다. 북위 35도 59.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 라. 북위 36도 18.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 마.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55.8분의 점
  - 바.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 사.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 아.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 자.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 차.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카. 북위 37도 25.5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타. 북위 37도 08.0분, 동경 131도 34.0분의 점
  - 파.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1도 10.0분의 점
  - 하.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 거.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 너.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다음 각목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I 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나.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다.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분, 동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라.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마.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분, 동경 127도 5.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 제 10 조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 제 11 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협력한다.

## 제 12 조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 가. 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 나.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다.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라.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마.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5.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6.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 제 13 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당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요청에 응하는 통보를 타방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그 분쟁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후 30일이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그 기간후 30일이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다만,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 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각 경우에 있어서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후 30일이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 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 또는 자국의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 라. 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 제 14 조

이 협정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제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16 조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 제 17 조

1965년 6월 22일 도오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 부 속 서 I

1.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확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의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 부 속 서 II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 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 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 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 참고 4-14 》

조약번호 1567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관심사항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증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한다.

**제 2 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부속서 I 및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입어허가증을 발급한다.

### 제 3 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조업기간·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제1항에 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전통적 어업활동, 상호 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어업 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 4 조

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협정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나포되거나 억류된 어선 또는 승무원은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어선 또는 승무원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6 조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정한 수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7 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잠정조치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북위 37도 00분,                      동경 123도 40분의 점                      (A1)
- 나. 북위 36도 22분 23초,                동경 123도 10분 52초의 점                (A2)
- 다. 북위 35도 30분,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A3)
- 라. 북위 35도 3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A4)
- 마.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A5)
- 바.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A6)
- 사.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41분의 점                      (A7)
- 아. 북위 32도 20분,                      동경 123도 45분의 점                      (A8)
- 자. 북위 32도 11분,                      동경 123도 49분 30초의 점                (A9)



차. 북위 32도 11분,	동경 125도 25분의 점	(A10)
카. 북위 33도 20분,	동경 124도 08분의 점	(A11)
타.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30초의 점	(A12)
파. 북위 35도 00분,	동경 124도 07분 30초의 점	(A13)
하.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A14)
거. 북위 36도 45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A15)
너.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20분의 점	(A16)
더. 북위 37도 00분,	동경 123도 40분의 점	(A17)

2. 양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의 보존조치 및 양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계약당사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타방계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는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일방계약당사자가 타방계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타방계약당사자는 그 통보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 제 8 조

1.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까지 다음 (1) 및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과도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한국측 과도수역 좌표

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K1)
나. 북위 35도 00분,	동경 124도 07분 30초의 점	(K2)
다.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30초의 점	(K3)
라. 북위 33도 20분,	동경 124도 08분의 점	(K4)
마. 북위 32도 11분,	동경 125도 25분의 점	(K5)
바. 북위 32도 11분,	동경 126도 45분의 점	(K6)
사. 북위 32도 40분,	동경 127도 00분의 점	(K7)
아. 북위 32도 24분 30초,	동경 126도 17분의 점	(K8)
자. 북위 32도 29분,	동경 125도 57분 30초의 점	(K9)
차. 북위 33도 20분,	동경 125도 28분의 점	(K10)
카.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35분의 점	(K11)
타. 북위 34도 25분,	동경 124도 33분의 점	(K12)
파.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48분의 점	(K13)
하.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K14)

(2). 중국측 과도수역 좌표

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1도 55분의 점	(C1)
나. 북위 35도 00분,	동경 121도 30분의 점	(C2)
다. 북위 34도 00분,	동경 121도 30분의 점	(C3)
라.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00분의 점	(C4)
마. 북위 31도 50분,	동경 123도 00분의 점	(C5)
바. 북위 31도 50분,	동경 124도 00분의 점	(C6)
사. 북위 32도 20분,	동경 123도 45분의 점	(C7)

- 아.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41분의 점            (C8)
- 자.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C9)
- 차.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C10)
- 카. 북위 35도 3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C11)
- 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1도 55분의 점            (C12)

2. 각 체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타방체약당사자측 과도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의 어업활동을 점진적으로 조정·감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보존 및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공동승선정선승선검색 등을 포함한 공동 감독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체약당사자는 각각 타방체약당사자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또한 그 어선의 명부를 상호 교환한다.

5.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도수역에 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9 조

양 체약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에 지정된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에서는 양 체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0 조

각 체약당사자는 항행 및 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해상사고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1 조

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연안에서 해난이나 기타 긴급사태를 당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구조 및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상황을 일방 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악천후 또는 긴급한 사태로 피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협정의 부속서 II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구 등에 피난할 수 있다. 해당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관계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 12 조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필요한 자료교환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 13 조

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자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래 사항을 협의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한다.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 기타 구체적 조업조건에 관한 사항

나. 조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해양생물자원의 상태와 보존에 관한 사항

라. 양국간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부속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집행현황과 기타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권고와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4.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제2항(1)의 권고를 존중하고, 제2항(3)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매년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14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체약당사자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15 조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 16 조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각자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통보하는 공한을 서로 교환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하다.

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1년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최초 5년 기한의 만료시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8월 3일 북경에서 서명하였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 부속서 I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허가에 관한 아래 조치를 취한다.

1.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이 협정 제3조에 정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한 입어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발급에 있어 적절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에 관한 절차규정(허가증의 신청과 발급, 어획량에 관한 통계자료제출,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 등)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타방체약당사자가 규정한 어선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부속서 II

이 협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아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다.

1.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연락처는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지정하는 연락처는 관련 항구를 관할하는 항구감독기관으로 한다.
2. 구체적인 연락방법에 대하여는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상호 통보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연락처에 연락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박명·호출번호·현재위치(위도·경도)·선적항·총톤수·전장·선장의  
성명·선원수·피난이유·피난요청목적지·도착예정시각 및 통신연락  
방법



## IV. 주요 수산통계

1. 어업별 생산량 (총괄) .....	215
2. 품종별 생산량 (총괄) .....	216
3. 품종별 세부 생산량(일반해면) .....	217
4. 품종별 천해양식 생산량 .....	224
5. 시·도별 해면어업 생산량 .....	229
6. 시·도별 양식어업 생산량 .....	231
7. 품종별 내수면어업 생산량 .....	233
8.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	235
9.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	239
10.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	240
11. 수산물 수입 현황 .....	241
12.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	244
13. 주요 품종별 중국 수입 현황 .....	245
14. 주요 품종별 일본 수출 현황 .....	246



# 1. 어업별 생산량 (총괄)

(단위 : 천톤, 억원)

	합 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90	3,198	24,182	1,472	14,162	773	4,199	919	4,913	34	908
'91	2,906	27,827	1,227	16,278	775	5,155	874	5,219	30	1,175
'92	3,201	29,965	1,207	17,366	935	6,024	1,025	5,326	34	1,249
'93	3,336	34,233	1,526	22,835	1,038	5,690	741	4,513	30	1,195
'94	3,477	39,395	1,486	25,206	1,072	7,206	887	5,569	31	1,414
'95	3,348	37,963	1,425	24,794	996	6,481	897	5,260	29	1,429
'96	3,248	39,963	1,624	27,351	875	6,433	719	4,926	30	1,253
'97	3,244	40,906	1,367	24,834	1,015	9,218	829	5,469	32	1,385
'98	2,835	43,884	1,308	22,936	777	9,503	723	10,009	27	1,436
'99	2,911	43,204	1,336	22,800	765	8,319	791	10,944	18	1,142
'00	2,514	40,664	1,189	23,295	653	6,839	651	9,297	21	1,234
'01	2,665	42,529	1,252	24,683	656	7,172	739	9,641	18	1,033
'02	2,476	42,052	1,096	24,870	782	7,945	580	8,094	19	1,143
'03	2,487	47,708	1,097	24,058	826	11,657	545	10,726	20	1,267
'04	2,519	47,313	1,077	26,097	918	12,171	499	7,373	25	1,672
'05	2,714	50,493	1,097	27,060	1,041	13,484	552	8,192	24	1,757
'06	3,032	52,859	1,109	27,513	1,259	14,432	639	8,910	25	2,004
'07	3,275	57,519	1,152	29,391	1,386	15,995	710	9,901	27	2,231

## 2. 품종별 생산량 (총괄)

(단위 : 천톤)

	계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90	3,198	1,822	435	112	346	42	442
'91	2,906	1,486	400	102	423	26	469
'92	3,201	1,555	427	109	487	19	604
'93	3,336	1,566	479	122	453	30	687
'94	3,477	1,728	372	139	399	61	777
'95	3,348	1,695	405	120	421	35	671
'96	3,248	1,699	390	118	451	27	562
'97	3,244	1,550	394	112	483	34	671
'98	2,835	1,578	320	107	312	34	482
'99	2,911	1,402	297	93	591	41	487
'00	2,514	1,280	300	83	428	36	387
'01	2,665	1,467	283	74	413	39	388
'02	2,476	1,202	272	72	394	27	508
'03	2,487	1,144	403	89	379	15	457
'04	2,519	1,157	410	85	306	15	546
'05	2,714	1,265	409	92	295	16	636
'06	3,032	1,261	474	110	392	17	778
'07	3,275	1,329	556	123	432	23	812

### 3. 품종별 세부 생산량 (일반해면)

#### □ 어 류

(단위 : 천톤)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1,113	867	818	992	986	958	1,115	883	909	876	771	855	714	657	673	720	715	761
멸치류	130	125	117	249	193	231	237	231	250	239	201	274	236	250	197	249	265	221
고등어	96	90	116	175	210	200	415	160	173	178	146	204	142	122	184	136	101	144
갈치	104	95	87	58	101	95	74	67	75	64	81	80	60	63	66	60	64	66
강달이	53	72	56	72	70	70	57	68	54	50	31	25	20	19	19	15	19	14
류전갱이	17	16	27	38	38	12	15	23	22	14	20	18	26	20	26	43	23	19
류참조기	28	37	40	31	37	25	23	22	15	13	20	8	11	7	18	15	21	34
삼치류	17	24	8	14	9	17	6	11	23	20	26	26	26	23	27	34	36	42
붕장어	22	21	24	30	22	20	17	19	12	10	8	8	17	17	17	15	15	19
가자미	13	13	14	13	13	14	18	18	20	20	15	15	14	13	12	15	20	24
류병어류	10	10	8	8	10	11	9	11	13	15	8	7	6	7	9	11	14	9
청어	6	5	6	4	4	9	6	13	13	20	13	8	2	4	5	8	12	28
아귀	9	8	8	6	5	8	12	5	4	3	5	6	10	10	12	11	12	14
전어	9	7	6	7	7	8	5	14	11	10	6	9	5	7	4	6	7	10
꽂치	5	3	0	1	3	7	10	19	5	11	20	5	7	1	3	4	1	5
송어류	3	3	3	6	5	4	4	6	5	10	9	10	9	8	8	10	9	11
뱅어류	15	16	17	5	5	5	5	1	1	3	10	4	2	4	2	7	3	2
가오리	8	7	5	8	4	4	4	3	3	4	2	3	2	3	2	2	3	4
류도루묵	3	5	4	4	1	2	3	2	1	2	2	1	3	2	2	2	3	4
조피볼락	-	-	-	1	2	2	2	2	2	2	3	3	3	4	4	3	4	4
략넙치류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기타	563	308	270	260	245	212	191	186	205	186	143	139	111	71	54	72	81	84

## □ 패 류

(단위 : 톤)

	계	굴류	바지락	동죽	소라고둥	개량조개	키조개	골뱅이	맛류	백합류	기타
'9 0	106,458	16,079	12,868	27,234	2,673	3,353	15,299	6,382	2,480	935	19,155
'9 1	88,729	16,518	12,595	11,419	4,009	2,184	7,898	7,141	2,961	4,047	19,957
'9 2	86,104	17,526	13,016	10,861	6,141	3,416	5,523	5,849	2,556	2,382	18,834
'9 3	131,730	28,215	31,202	9,047	8,764	8,137	3,321	8,352	7,610	1,407	25,675
'9 4	106,600	20,710	14,595	10,516	9,128	11,383	2,516	8,131	6,737	1,561	21,323
'9 5	92,267	18,262	15,041	9,225	8,834	9,038	3,634	5,224	4,905	2,715	15,389
'9 6	82,636	18,259	12,392	10,944	7,361	6,053	834	2,975	3,833	2,315	17,670
'9 7	91,788	17,210	16,854	8,851	6,878	7,179	4,098	1,617	4,081	2,075	22,945
'9 8	79,562	9,905	14,585	2,411	9,192	2,877	6,456	1,325	2,862	3,472	26,477
'9 9	74,302	11,690	13,963	4,325	7,283	7,620	6,771	1,672	1,751	1,799	17,428
'0 0	77,103	15,939	20,982	2,468	7,281	4,149	5,795	818	1,572	1,430	16,669
'0 1	65,328	10,056	20,004	5,774	6,274	3,409	3,828	730	1,452	1,044	12,757
'0 2	57,336	7,950	14,758	6,730	7,193	3,464	3,500	1,555	702	1,704	9,780
'0 3	109,878	20,201	13,148	21,240	14,065	5,694	2,443	2,600	6,311	6,918	17,258
'0 4	100,180	25,690	12,902	13,433	9,507	3,363	2,471	2,101	5,456	6,860	18,397
'0 5	81,012	27,320	14,447	5,201	8,498	128	3,453	1,696	2,240	3,135	14,894
'0 6	80,434	31,016	7,559	7,597	7,496	612	5,409	1,434	854	4,490	13,967
'0 7	73,714	29,316	8,640	2,601	6,906	606	7,897	1,639	1,457	2,662	11,987

□ 갑각류

(단위 : 톤)

	계	붉은대게	젓새우	꽃게	꽃새우	중하	보리새우	대하	대게	닭새우	기타
'9 0	104,856	-	22,579	23,004	-	3,358	2,336	912	3	698	51,966
'9 1	99,107	-	16,512	18,300	-	6,145	2,488	998	2	1,107	53,555
'9 2	106,053	-	29,310	17,087	-	4,962	2,092	968	11	1,007	50,616
'9 3	117,292	24,440	24,324	10,419	8,594	3,834	2,531	897	94	375	41,784
'9 4	134,558	31,063	18,510	21,483	10,995	4,993	2,265	1,363	98	565	43,223
'9 5	117,161	33,155	16,495	17,651	5,414	2,168	2,399	1,406	79	1,242	37,152
'9 6	116,795	37,362	18,411	15,754	3,405	2,211	1,783	1,242	133	1,121	35,373
'9 7	109,405	38,896	15,624	11,430	2,729	1,976	2,102	1,911	815	918	33,004
'9 8	104,222	33,146	15,993	13,813	3,249	3,651	1,138	1,245	459	458	31,070
'9 9	90,038	22,366	19,389	11,819	4,620	3,633	480	814	1,134	485	25,298
'0 0	74,994	16,281	13,985	12,842	5,263	2,621	578	1,211	756	461	20,996
'0 1	67,070	12,973	11,705	13,016	3,145	2,385	513	582	1,001	415	21,335
'0 2	57,327	9,166	7,013	18,659	4,132	1,736	217	222	896	391	14,895
'0 3	66,002	19,262	12,885	9,478	3,988	325	240	148	1,889	393	17,394
'0 4	57,110	23,113	7,889	2,683	2,575	414	132	848	2,605	595	16,256
'0 5	62,075	21,926	7,352	3,714	3,364	834	282	989	3,240	742	19,632
'0 6	73,715	23,890	7,810	6,894	4,272	980	215	1,261	4,062	772	23,559
'0 7	85,297	25,388	12,553	13,606	3,885	1,010	315	704	4,817	734	22,285

□ 연체동물

(단위 : 톤)

	계	오징어류	낙지	문어	주꾸미	갑오징어류	꼴뚜기	기타
'90	109,236	74,172	9,264	5,962	4,422	12,395	2,391	630
'91	140,706	107,607	11,968	5,332	3,882	8,149	2,802	966
'92	167,282	136,928	11,546	5,990	3,976	5,207	2,758	877
'93	255,234	219,467	14,351	7,584	4,927	5,437	2,542	926
'94	220,690	189,572	12,446	7,899	4,138	2,964	2,285	1,386
'95	227,019	200,897	10,803	7,027	3,870	2,567	1,222	633
'96	277,415	252,618	11,611	6,064	3,709	1,484	1,380	549
'97	252,285	224,959	10,103	8,236	4,613	2,082	1,455	837
'98	198,089	163,016	6,395	12,038	7,999	2,563	4,119	1,959
'99	278,098	249,991	5,966	8,179	5,117	6,652	1,629	564
'00	248,047	226,309	5,861	8,718	4,569	1,267	885	438
'01	248,331	225,616	5,911	9,668	4,294	1,443	898	501
'02	251,411	226,656	5,297	12,408	3,911	1,920	836	383
'03	252,624	233,254	7,248	5,121	5,200	872	758	171
'04	232,588	212,760	7,023	5,953	5,048	905	793	106
'05	211,517	189,126	7,658	7,637	4,390	1,325	1,304	77
'06	219,792	197,084	7,397	7,894	4,032	1,988	1,354	43
'07	205,611	174,479	8,625	12,033	6,828	1,938	1,657	51



## □ 기타수산물

(단위 : 톤)

	계	성게	해삼	우렁챙이	미더덕	기타
'90	9,608	4,325	2,491	222	1,961	609
'91	8,959	3,749	2,025	222	2,207	756
'92	6,883	2,476	1,581	278	1,796	752
'93	7,327	3,944	1,750	241	59	1,333
'94	10,181	3,714	2,117	3,198	8	1,144
'95	8,706	3,707	1,891	2,067	25	1,016
'96	9,308	2,802	1,979	3,641	13	873
'97	8,752	2,771	2,217	2,780	35	949
'98	4,782	1,410	1,439	891	56	986
'99	4,558	1,182	1,204	1,142	29	1,001
'00	6,205	1,461	1,419	1,440	3	1,882
'01	4,709	1,454	900	1,004	49	1,302
'02	5,253	1,459	833	966	59	1,936
'03	6,340	1,607	1,281	836	994	1,622
'04	5,522	1,301	1,154	1,115	211	1,741
'05	5,278	2,035	1,135	1,485	62	561
'06	6,072	2,596	1,614	1,105	8	749
'07	7,518	2,651	2,936	1,127	1	803

□ 해조류

(단위 : 톤)

	계	톳	우무가사리	미역	청각	김	다시마류	파래	도박류	기타
'90	30,324	7,222	8,339	5,075	565	3,533	7	1,425	756	3,402
'91	23,244	6,614	5,399	4,243	1,555	1,128	144	510	169	3,482
'92	24,238	4,327	6,742	3,459	1,215	69	-	578	399	7,449
'93	22,186	6,458	4,476	5,271	455	42	511	597	761	3,615
'94	26,899	5,814	7,581	5,388	514	77	164	527	1,190	5,644
'95	22,368	6,179	7,798	3,868	530	62	979	497	-	2,455
'96	22,910	8,086	3,551	6,642	381	189	1,795	373	120	1,773
'97	23,233	7,783	6,182	4,490	92	90	761	490	70	3,275
'98	12,594	3,856	3,136	784	280	635	500	61	15	3,327
'99	12,895	7,423	2,307	600	391	418	577	183	24	972
'00	13,023	6,062	2,872	1,717	220	1	350	64	15	1,722
'01	14,933	7,024	3,768	2,664	404	11	357	40	13	652
'02	10,427	5,081	2,150	1,089	558	29	88	412	2	1,018
'03	5,154	2,744	467	942	27	122	37	182	7	626
'04	9,060	5,284	1,791	719	616	3	-	71	48	528
'05	15,212	3,520	3,079	4,740	3,083	13	9	246	128	394
'06	13,754	2,933	3,012	3,569	2,875	2	12	164	473	714
'07	18,189	2,672	2,859	6,384	3,950	24	28	167	446	1,659

## □ 연근해 주요 어법별 생산량

(단위 : 천톤)

	계	대형 기저	근해 트롤	중형 기저	대형 선망	기 권현망 (선인망)	근 해 채낚기	안강망	연승	통발	정치망	잠수기	기타
'70	724	114	4	45	37	21	70	99	30	-	14	28	262
'80	1,370	153	95	59	222	107	40	244	20	11	80	23	316
'90	1,472	121	173	61	359	86	51	244	33	40	16	22	266
'94	1,486	121	81	41	311	118	88	221	34	76	53	17	325
'95	1,425	128	104	26	228	140	94	174	33	77	65	17	339
'96	1,624	124	128	34	453	122	107	151	32	76	84	17	296
'97	1,367	115	152	29	184	128	97	147	32	76	86	22	299
'98	1,308	123	109	23	205	119	71	159	34	61	56	17	331
'99	1,334	118	141	16	230	94	92	130	33	51	69	18	342
'00	1,189	106	132	15	180	75	81	102	38	44	69	14	333
'01	1,252	97	160	11	232	98	75	95	32	41	72	13	326
'02	1,096	89	142	16	182	90	73	85	30	51	39	11	288
'03	1,097	69	144	22	159	134	74	70	15	54	49	11	296
'04	1,077	78	124	18	231	105	67	64	11	54	37	11	277
'05	1,097	86	102	22	192	132	63	43	15	61	49	12	320
'06	1,109	96	108	24	168	143	66	48	16	64	45	11	320
'07	1,152	76	99	29	236	108	63	73	17	75	40	12	324

#### 4. 품종별 천해양식 생산량

##### □ 어 류

(단위 : 톤)

	계	넙치류	조피볼락	송어류	참돔	농어	감성돔	기타돔류	기타볼락	방어	기타
'90	2,656	1,037	-	-	228	391	-	56	386	462	96
'91	3,905	1,815	-	8	356	377	-	5	312	893	139
'92	4,595	3,199	-	13	117	79	-	18	666	287	216
'93	5,471	4,029	679	4	142	205	8	39	166	153	46
'94	6,643	5,270	751	13	83	98	8	12	143	209	56
'95	8,360	6,733	985	34	25	193	9	16	174	159	32
'96	11,402	8,861	1,922	27	27	266	2	14	114	116	53
'97	39,121	26,274	11,069	201	115	703	12	30	245	302	170
'98	37,323	22,277	12,544	106	146	940	51	134	231	266	628
'99	33,453	21,368	9,459	347	176	797	92	186	721	236	71
'00	25,986	14,127	8,473	968	412	605	221	386	225	494	75
'01	29,297	16,426	9,254	1,415	641	873	275	94	76	95	148
'02	48,073	23,348	16,550	3,898	960	2,006	685	234	86	186	120
'03	72,393	34,533	23,771	4,093	4,417	2,778	1,084	1,287	167	114	149
'04	64,476	32,141	19,576	3,596	3,988	1,850	1,379	1,430	132	45	339
'05	81,437	40,075	21,297	5,500	5,816	2,600	2,671	2,048	339	57	1,034
'06	91,123	43,852	27,517	5,651	4,386	1,571	2,705	1,689	496	66	3,190
'07	97,663	41,171	35,564	4,921	7,213	2,361	2,841	1,109	415	5	2,063

## □ 패 류

(단위 : 톤)

	계	굴 류	홍합류	바지락	피조개	꼬막류	맛류	키조개	동죽	전복류	기타
'9 0	325,592	219,124	9,759	61,713	17,758	11,113	31	11	5,607	2	474
'9 1	308,409	215,418	9,495	45,537	16,702	16,325	24	441	3,546	7	914
'9 2	338,602	235,326	9,689	54,402	20,547	16,441	-	-	1,406	15	776
'9 3	345,696	258,212	55,183	10,046	11,613	3,290	5,373	13	1,061	83	822
'9 4	264,124	172,313	39,764	19,035	13,646	10,375	7,486	646	429	104	326
'9 5	312,252	191,156	75,353	15,260	9,357	13,027	7,169	51	478	61	340
'9 6	306,738	185,339	70,058	18,478	20,166	4,473	6,843	3	183	84	1,111
'9 7	301,873	200,973	63,572	13,958	13,156	2,843	6,585	22	19	7	738
'9 8	239,754	175,926	17,785	17,178	23,029	5,041	68	190	-	3	534
'9 9	221,031	177,259	15,042	16,135	8,550	2,511	-	1,104	-	-	430
'0 0	222,608	177,079	11,713	17,927	10,618	820	-	1,998	-	20	2,433
'0 1	217,078	174,117	13,653	16,433	7,359	3,842	-	1,240	-	29	405
'0 2	212,433	182,229	13,201	10,652	4,745	413	-	577	-	85	531
'0 3	291,063	238,326	15,785	27,494	4,696	2,440	2	783	-	1,065	472
'0 4	304,889	239,270	20,409	27,570	3,134	10,849	-	1,997	-	1,260	400
'0 5	326,255	251,706	43,953	17,401	2,548	3,226	-	4,950	-	2,062	409
'0 6	391,060	283,296	81,617	14,327	2,064	5,063	-	872	-	3,050	771
'0 7	478,646	321,276	98,121	18,819	3,015	28,372	-	3,870	3	4,350	820

□ 갑각류

(단위 : 톤)

	계	대하	보리새우	기타새우	흰다리새우
'90	312	257	55	-	-
'91	511	465	31	15	-
'92	592	562	30	-	-
'93	291	272	19	-	-
'94	575	517	58	-	-
'95	438	404	34	-	-
'96	382	377	5	-	-
'97	1,537	1,533	-	4	-
'98	846	846	-	-	-
'99	1,180	1,142	-	38	-
'00	1,158	1,158	-	-	-
'01	2,081	2,081	-	-	-
'02	1,403	1,403	-	-	-
'03	2,324	2,324	-	-	-
'04	2,426	2,426	-	-	-
'05	1,399	1,399	-	-	-
'06	1,683	1,022	-	-	661
'07	1,321	463	-	-	858

□ 기타 수산동물

(단위 : 톤)

	계	우렁쉥이	미더덕	기타(오만둥이)
'90	32,291	20,768	11,523	-
'91	16,968	6,994	9,972	2
'92	11,726	4,821	6,903	2
'93	22,343	13,923	8,102	318
'94	50,576	42,822	7,754	-
'95	26,302	22,626	3,675	1
'96	17,298	13,093	4,205	-
'97	24,760	22,318	2,442	-
'98	29,538	8,177	5,650	15,711
'99	35,916	11,845	11,292	12,779
'00	29,165	2,336	13,889	12,940
'01	33,833	4,603	15,084	14,146
'02	22,053	9,613	5,266	7,174
'03	8,411	3,116	2,047	3,248
'04	9,176	6,349	2,590	237
'05	10,827	9,334	1,412	81
'06	10,495	7,127	1,519	1,849
'07	15,221	9,318	2,309	3,594

□ 해조류

(단위 : 톤)

	계	미역	김	다시마류	툃	파래	청각	말	우무가사리	기타
'90	411,869	269,333	97,637	8,084	23,920	12,463	427	-	-	5
'91	445,626	266,966	143,945	8,938	11,408	14,367	-	-	-	2
'92	579,963	371,432	163,555	9,560	18,163	17,248	-	-	5	-
'93	664,318	372,182	235,272	17,180	27,621	12,053	-	-	10	-
'94	750,197	411,602	269,581	30,421	31,669	6,918	1	-	-	5
'95	649,099	386,819	192,960	27,295	37,679	4,344	2	-	-	-
'96	538,990	305,813	166,199	35,640	23,054	8,272	8	-	-	4
'97	647,843	431,872	140,236	33,466	34,470	7,794	-	-	-	5
'98	469,769	239,742	191,578	7,931	24,993	5,298	-	-	-	227
'99	473,672	213,706	205,706	25,447	22,679	5,873	43	-	16	202
'00	374,456	212,429	130,488	14,160	11,654	5,288	164	-	-	273
'01	373,538	175,490	167,909	17,506	6,865	5,760	7	-	-	1
'02	497,557	242,135	209,995	24,873	11,016	9,291	72	-	4	171
'03	452,054	198,172	193,553	25,259	33,661	1,355	53	-	-	1
'04	536,748	261,574	228,554	22,510	22,814	1,154	142	-	-	-
'05	621,156	281,871	197,610	108,327	30,058	814	1,597	877	-	2
'06	764,914	322,371	217,559	201,919	21,125	682	165	919	-	174
'07	792,953	309,097	210,956	250,049	20,909	684	158	490	-	610



## 5. 시·도별 해면어업 생산량

### □ 어류

(단위 : 톤)

년도	어종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3	가자미류	13,107	2,723	381	1,601	9	1,936	518	10	554	3,873	1,323	179
	갈치	62,861	26,650	808	28		0	12	675	6,829	0	9,570	18,289
	고등어류	122,044	106,045	86	71		14	0	39	2,667	218	9,507	3,397
	넙치류	1,801	126	191	5	9	202	387	74	248	23	430	106
	멸치류	250,106	33,543	8	3,968		5	4,741	4,849	52,602	2,483	139,924	7,983
	조피볼락	3,811	71	211	52	185	127	667	525	608	39	1,256	70
	삼치류	22,608	12,430	59	26	1	2	130	516	657	233	8,042	512
	송어류	7,877	2,924	282	33	11	599	375	133	1,549	377	1,594	0
04	참조기	7,098	665	344	2			0	507	3,222		774	1,584
	가자미류	12,038	1,774	303	1,226	4	1,757	1,312	62	490	3,685	1,270	155
	갈치	66,291	19,485	293	37		0	30	450	16,843	4	12,721	16,428
	고등어류	184,274	157,078	100	30		157	485	18	5,454	470	17,509	2,973
	넙치류	1,737	128	113	12	9	163	518	36	252	46	293	167
	멸치류	196,646	24,305	6	4,367		43	12,586	7,550	42,669	2,266	98,908	3,946
	조피볼락	3,774	42	146	45	58	89	761	376	604	107	1,480	66
	삼치류	26,622	13,445	58	446	1	7	95	280	1,135	1,478	9,093	584
05	송어류	8,023	1,989	306	54	6	426	519	134	2,581	589	1,419	
	참조기	17,570	1,308	585	1			18	824	9,365		1,941	3,528
	가자미류	15,319	1,931	762	1,835	18	1,690	1,780	153	602	3,782	2,611	155
	갈치	60,086	19,176	461	5	0	0	28	517	8,873	0	9,421	21,605
	고등어류	135,596	117,763	85	44		129	23	11	3,402	739	10,387	3,013
	넙치류	2,112	95	251	17	31	205	538	89	301	69	413	103
	멸치류	249,001	28,875	10	6,172	53	53	10,422	7,360	45,798	2,867	130,677	16,714
	조피볼락	3,000	0	185	8	90	86	509	201	409	188	1,249	75
06	삼치류	33,794	16,816	105	143	1	137	96	19	2,024	899	12,859	695
	송어류	9,774	279	931	49	18	335	307	710	5,204	434	1,507	
	참조기	15,272	780	476	1	0		19	1,082	6,988		913	5,013
	가자미류	19,879	2,631	635	3,816	4	1,857	3,417	173	807	3,361	2,747	431
	갈치	63,739	24,678	853	99		0	95	576	9,865	0	8,865	18,708
	고등어류	101,427	89,909	53	15		176	582	16	1,520	580	6,919	1,657
	넙치류	2,298	109	324	37	22	178	619	176	240	100	369	124
	멸치류	265,346	31,375	6	5,874	23	14	11,474	4,944	53,791	2,636	144,911	10,298
07	조피볼락	3,713	10	204	23	90	110	549	393	481	96	1,656	101
	삼치류	36,484	21,525	131	173	1	5	284	145	3,343	1,374	9,043	460
	송어류	8,835	304	815	43	12	383	178	743	4,572	340	1,445	0
	참조기	21,428	1,914	1,687	0			35	1,008	7,936		1,389	7,459
	가자미류	24,340	3,426	916	5,856	15	2,449	1,984	405	700	4,877	3,357	355
	갈치	66,029	29,428	858	127		0	103	558	7,831	36	4,405	22,683
	고등어류	143,776	126,983	125	9		221	2,730	1	2,362	640	7,969	2,736
	넙치류	3,074	143	291	66	67	154	781	600	428	105	294	145
07	멸치류	221,110	26,846	2	1,856	8	36	11,588	6,999	45,839	1,483	120,982	5,471
	조피볼락	4,037	1	123	32	57	38	845	429	692	119	1,550	151
	삼치류	42,199	26,573	150	546	0	64	73	103	3,490	1,728	8,577	895
	송어류	11,312	276	1,099	23	11	240	105	2,604	4,840	406	1,708	
	참조기	34,221	3,134	1,410	0			20	1,289	18,173		1,849	8,346

## □ 패류

(단위 : 톤)

년도	어종명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3년	굴 류	20,201	65	2,053		460		7,337	4,892	4,342		1,052	
	소라고둥	14,065	68	463	52	989	28	3,523	5,491	656	1,221	92	1,482
	전 북 류	73	0	6	9		7	0	9	4	27	11	0
	꼬 막 류	5,267	1					11	5,052	165		38	
	바 지 락	13,148	78	2,277	0	152		4,528	2,530	2,278		1,305	
	키 조 개	2,443	27	0				1,706	203	356		151	
	피 조 개	509				13		58	437	0		1	
	홍 합 류	817	110				1	69	30	2	6	599	
개 조 개	2,680	512					50		673		1,445		
04년	굴 류	25,690	15	2,250		593	0	10,987	5,345	4,642	3	1,855	
	소라고둥	9,507	177	513	12	556	10	3,112	2,380	554	314	74	1,805
	전 북 류	82	0	4	5		7	0	17	8	31	10	0
	꼬 막 류	2,571	0					44	2,431	96		0	
	바 지 락	12,902	1	1,515		216		6,248	2,856	1,305		761	
	키 조 개	2,471	113	0				1,863	112	272		111	
	피 조 개	257				8		37	204	2		6	
	홍 합 류	588	31	1			5	64	6			481	
개 조 개	5,380	1,064					178		1,156		2,982		
05년	굴 류	27,320	2	2,747		1,301	0	8,411	1,453	4,351		9,054	1
	소라고둥	8,498	101	543	0	398	49	2,396	653	1,343	695	141	2,179
	전 북 류	136	0	5	7		7	0	0	25	76	14	2
	꼬 막 류	1,827		0				4	363	1,460		0	
	바 지 락	14,447	11	1,132		3,883		3,272	701	4,598		839	11
	키 조 개	3,453	140	6				2,650	21	463		173	
	피 조 개	230	1	0		6		14	144	65		0	
	홍 합 류	724	19				71	116	285	0	11	135	87
개 조 개	6,534	984					52	2,326	913		2,259		
06년	굴 류	31,016	2	3,512		1,496	0	10,650	1,301	4,893		9,151	11
	소라고둥	7,496	52	546	39	249	13	2,081	633	1,284	464	170	1,965
	전 북 류	116	1	6	4		3	0	0	7	81	12	2
	꼬 막 류	4,366				1		6	10	4,349			
	바 지 락	7,559	42	1,206		984		3,219	43	1,173		885	7
	키 조 개	5,409	84	0		1	0	3,391	406	1,434		93	
	피 조 개	148		2		10		21	66	49		0	
	홍 합 류	1,184	22				54	143	554	39	33	95	244
개 조 개	3,399	866					96	535	576		1,326		
07년	굴 류	29,316	2	3,260		1,899	0	6,954	1,163	7,160	0	8,876	2
	소라고둥	6,909	104	642	1	250	7	1,762	672	1,402	482	141	1,446
	전 북 류	197	2	7	1	0	0	0	19	5	140	22	1
	꼬 막 류	481						16	6	459		0	
	바 지 락	8,640		457		1,693		4,342	184	766		1,198	
	키 조 개	7,897	93	2		0		2,903	4,021	817	0	61	
	피 조 개	152		0		7		7	99	39		0	
	홍 합 류	1,620	155	0			16	8	926	93		336	86
개 조 개	3,422	605					85	604	655		1,473		

## 6. 시·도별 양식어업 생산량

### □ 어 류

(단위 : 톤)

년도	어종명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3년	넙 치 류	33,646	403	49	1,050		146			8,833	3,585	3,385	16,195
	농 어	2,245						45		352		1,848	
	감 성 돔	981						309		70		602	
	참 돔	4,206								46		4,145	15
	기타돔류	1,165						400		53	66	641	5
	조피볼락	17,874			22	15	29	1,970	3	5,322	982	9,530	1
	기타볼락	142						23		5		114	
	송 어 류	3,081		35		43		743	126	357		1,777	
	고등어류	50										50	
04년	넙 치 류	31,688	434	65	705		128		8	8,545	2,546	1,342	17,915
	농 어	1,429						28	7	125	10	1,259	
	감 성 돔	1,111			28			191		36	14	842	
	참 돔	3,718								43		3,650	25
	기타돔류	1,224			32			343		247	95	433	74
	조피볼락	15,623				54	4	2,094	7	3,824	786	8,853	1
	기타볼락	116								9	6	101	
	송 어 류	2,343		26		106		483	271	330		1,127	
	전 어	181		5					104	72			
고등어류	80									16	64		
05년	넙 치 류	39,538	639		911		102			12,246	2,598	2,671	20,371
	농 어	2,371						63	2	443	39	1,824	
	감 성 돔	2,252						302		307	20	1,623	
	참 돔	5,691								256		5,414	21
	기타돔류	1,938	33		4		78	221		454	97	816	235
	조피볼락	18,978	19		2	29		1,320		4,409	1,358	11,841	
	기타볼락	292	1							66	3	220	2
	송 어 류	3,736		3		35		354	148	80		3,116	
	전 어	576		15				379	75	84		23	
고등어류	184										184		
06년	넙 치 류	43,299	701		755		141			15,413	2,368	2,011	21,910
	농 어	1,402						3		341		1,058	
	감 성 돔	2,310						252		379		1,679	
	참 돔	4,182						11		277		3,869	25
	기타돔류	1,381	30				32	157	17	538	64	389	154
	조피볼락	24,853	19			8	3	1,033		4,590	1,706	17,484	10
	기타볼락	422								68		354	
	송 어 류	3,755		15		1		257	551	90		2,841	
	전 어	2,519		115		210		762	403	962		67	
고등어류	301										301		
07년	넙 치 류	40,242	608		537		322			13,963	2,383	1,625	20,804
	농 어	2,095						45	4	304		1,742	
	감 성 돔	2,405						185		546	15	1,659	
	참 돔	6,968						2		128	25	6,770	43
	기타돔류	1,009	85				38	24		162	21	361	318
	조피볼락	32,258	46		55	25	2	1,349		4,830	2,439	23,512	
	기타볼락	400								132		268	
	송 어 류	2,650						411	196	219		1,824	
	전 어	1,225		77		2		337	199	545		65	

## □ 패류

(단위 : 톤)

년도	어종명	총계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3년	굴 류	115,275		148		7,461		72,813		34,853	
	전 북 류	1,054	0	0				1,024	0	0	30
	가 리 비	23			23						
	가 무 락	169				169					
	꼬 막 류	2,139				3		2,136			
	맛 류	2						2			
	바 지 락	24,613		86		14,565	9,226	307		429	
	백 합 류	1				1					
	키 조 개	6						6			
	피 조 개	4,472	4,472								
홍 합 류	14,129						3,600		10,529		
04년	굴 류	144,855		208	21	9,933		49,256		85,437	
	전 북 류	1,245		0	4			1,211	0	2	28
	가 리 비	167			167						
	가 무 락	77				77					
	꼬 막 류	10,747						10,747			
	바 지 락	25,452	3	25		14,196	10,096	776		356	
	키 조 개	443						443			
	피 조 개	3,050	2,861							189	
홍 합 류	15,881						3,251		12,630		
05년	굴 류	130,340		328	18	7,989		42,883		79,122	
	전 북 류	2,043		0				1,997	1	2	43
	가 리 비	203			203						
	가 무 락	57				57					
	꼬 막 류	3,054						3,054			
	바 지 락	15,623		692		6,717	7,219	489		506	
	키 조 개	2,475						2,475			
	피 조 개	2,383	2,377							6	
홍 합 류	37,254						16,174	40	21,040		
06년	굴 류	115,285		534	9	8,894		39,144		66,704	
	전 북 류	2,933		0				2,883	2	9	39
	가 리 비	264			264						
	가 무 락	216				216					
	꼬 막 류	4,629						4,629			
	바 지 락	11,638		320		6,348	3,911	350		709	
	키 조 개	181						181			
	피 조 개	1,990	1,628							362	
홍 합 류	75,742						29,112		46,630		
07년	굴 류	146,301	1	654		8,589		28,408		108,649	
	전 북 류	4,251		2	2	4		4,199	0	9	35
	가 리 비	286			285			1			
	가 무 락	115				115					
	꼬 막 류	27,535						27,535		0	
	동 죽	3				3					
	바 지 락	16,792		882		5,804	9,056	473		577	
	키 조 개	2,970						2,970			
피 조 개	2,988	1,867							1,121		
홍 합 류	90,522						13,305		77,217		

## 7. 품종별 내수면어업 생산량

### □ 어 류

(단위 : 톤)

	계	항어	뱀장어	송어류	붕어	메기	잉어	기타어류	미꾸라지	피라미	기타
'90	31,612	9,926	1,271	1,542	6,146	606	2,875	3,187	1,092	2,228	2,739
'91	27,174	7,577	2,496	1,263	4,985	711	2,522	2,207	858	1,973	2,582
'92	31,866	12,463	3,249	1,440	4,441	786	2,402	1,729	881	1,614	2,861
'93	28,361	11,462	2,546	2,148	3,554	1,036	1,609	1,336	704	1,463	2,503
'94	29,498	12,781	2,681	2,561	3,161	1,381	1,312	1,108	590	1,063	2,860
'95	28,057	10,918	2,471	2,799	2,790	2,150	1,687	898	493	982	2,869
'96	29,049	11,481	1,706	3,173	2,541	2,490	1,973	818	547	879	3,441
'97	30,746	12,323	2,351	3,667	2,324	2,576	1,991	798	580	715	3,421
'98	25,624	7,077	2,257	4,018	2,122	2,346	2,636	951	535	540	3,142
'99	16,300	1,273	2,051	3,147	2,180	2,205	1,486	995	463	471	2,029
'00	19,614	1,838	2,739	2,808	2,432	2,966	1,716	1,347	644	386	2,738
'01	16,932	1,222	2,661	2,834	2,065	2,669	1,325	1,250	644	233	2,029
'02	16,280	991	2,978	2,869	1,659	2,634	1,166	1,285	398	247	2,053
'03	17,399	920	4,332	3,521	1,107	1,708	1,137	1,387	974	120	2,193
'04	20,415	702	5,205	3,502	1,503	1,916	1,661	1,713	1,837	51	2,325
'05	21,760	975	5,810	3,320	1,321	2,575	1,640	1,628	1,953	21	2,517
'06	21,395	706	8,012	1,878	1,223	2,985	1,281	1,703	1,138	46	2,423
'07	23,424	800	10,597	2,882	1,495	2,266	1,094	1,539	798	47	1,906

□ 패 류

(단위 : 톤)

	계	재첩	개량조개	우렁이	다슬기	기타
'90	2,601	1,450	508	-	-	643
'91	3,057	1,546	9	-	-	1,502
'92	2,204	1,151	2	-	-	1,051
'93	1,678	757	-	15	-	906
'94	1,162	712	39	20	-	391
'95	933	664	3	5	-	261
'96	1,019	702	-	32	-	285
'97	806	414	-	4	-	388
'98	1,040	710	-	45	-	285
'99	1,302	1,055	-	18	-	229
'00	675	370	36	31	-	238
'01	1,027	493	-	40	-	494
'02	2,049	1,465	-	80	-	504
'03	2,016	1,283	-	64	-	669
'04	4,670	4,149	-	53	-	468
'05	1,883	1,034	18	72	-	759
'06	2,879	816	37	1,254	531	241
'07	3,027	523	-	1,813	445	246

## 8.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 □ 수출현황

#### ○ 품목별

(단위 : 톤, 천\$,%)

구 분	'05		'06		'07		'07/'06	
	수량	금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b>합 계</b>	<b>411,878</b>	<b>1,193,117</b>	<b>367,498</b>	<b>1,088,948</b>	<b>536,009</b>	<b>1,225,832</b>	<b>89.2</b>	<b>91.3</b>
활 어	8,514	89,695	6,238	74,712	5,281	62,965	73.3	83.3
신선·냉장	24,237	136,795	21,648	128,473	18,896	111,870	89.3	93.9
냉 동	278,865	595,113	252,891	538,462	419,623	741,135	90.7	90.5
기 타	100,262	371,514	86,721	347,301	92,209	309,862	106.3	89.2

#### ○ 국가별

(단위 : 천\$, %)

구 분	'04	'05	'06	'07	'07/'06
<b>합 계</b>	<b>1,278,638</b>	<b>1,193,117</b>	<b>1,088,948</b>	<b>1,225,832</b>	<b>112.6</b>
일 본	834,649	741,062	659,523	572,908	86.9
미 국	81,130	88,174	95,613	98,876	103.4
중 국	124,102	108,031	75,414	156,565	207.6
태 국	37,565	57,383	61,688	87,678	142.1
뉴 질 랜드	44,544	60,478	39,383	68,293	173.4
스 페 인	36,702	31,519	28,167	58,655	208.2
대 만	20,177	13,196	18,453	17,540	95.1
홍 콩	15,334	8,895	12,514	11,331	90.5
이 탈 리 아	14,030	11,253	11,620	25,346	218.1
러 시 아	4,249	4,468	8,015	11,072	138.1
캐 나 다	6,172	9,025	7,247	7,065	97.5
멕시코	1,006	1,644	6,834	6,336	92.7
인도네시아	4,337	5,869	6,466	9,011	139.4
베 트 남	6,551	4,570	5,194	8,812	169.7
기 타	53,345	47,550	52,817	86,344	163.5

## ○ 어종별

(단위 : 천\$, %)

구 분	'04	'05	'06	'07	'07/'06
<b>합 계</b>	<b>1,278,638</b>	<b>1,193,117</b>	<b>1,088,948</b>	<b>1,225,832</b>	<b>112.6</b>
참 치	249,915	226,399	227,964	275,153	120.7
김	45,031	54,244	61,730	59,728	96.8
굴	76,641	61,204	55,508	40,145	72.3
넙 치	55,423	63,684	51,969	44,154	85.0
오징어	113,020	102,131	47,399	123,768	261.1
캐비아(대용)	46,817	56,741	44,019	13,097	29.8
붕장어	51,939	49,161	43,009	37,938	88.2
게 살	46,426	41,163	36,210	32,275	89.1
툰	30,614	23,939	23,773	24,525	103.2
미역	35,885	29,868	21,761	17,667	81.2
한천	8,550	15,529	18,535	10,784	58.2
바지락	24,998	18,040	17,766	12,662	71.3
전복	3,375	9,024	17,123	15,040	87.8
삼치	16,465	21,086	15,535	26,869	172.9
피조개	19,729	19,054	14,379	13,998	97.4
새우	4,162	5,836	14,012	8,340	59.51
이빨고기	9,565	6,607	11,653	13,471	115.6
전갱이	17,712	11,848	11,035	12,946	117.3
돔	7,392	9,005	10,940	21,250	194.2
새꼬리민태	11,829	15,315	9,565	13,281	138.8
기타	403,150	353,239	335,063	408,741	122.0

## ○ 총수출 대비 수산물 구성비

(단위 : 백만\$, %)

구 분	'04	'05	'06	'07	'07/'06
총 수출	253,845	284,419	325,465	371,489	114.1
수산물	1,279	1,193	1,089	1,226	112.6
구성비	(0.5)	(0.4)	(0.3)	(0.3)	-



□ 수입현황

○ 품목별

(단위 : 톤, 천\$, %)

구분	'05		'06		'07		'07/'06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56,142	2,383,574	1,377,101	2,769,348	1,391,506	3,056,368	101.0	110.4
활 어	38,363	176,449	43,108	197,501	44,384	224,675	102.9	113.8
신선냉장	120,772	330,782	146,220	374,837	142,379	408,278	97.4	108.9
냉 동	897,493	1,406,323	977,301	1,660,663	1,007,531	1,872,942	103.1	112.8
기 타	199,514	470,020	210,472	535,135	197,212	550,473	93.7	102.9

○ 국가별

(단위 : 천\$, %)

구분	'04	'05	'06	'07	'07/'06
합 계	2,261,356	2,383,574	2,769,348	3,056,368	110.4
중 국	909,536	936,351	1,034,192	1,070,862	103.5
러 시 아	276,783	277,216	347,079	423,392	122.0
일 본	180,620	173,140	224,311	273,477	121.9
베 트 남	143,524	163,642	206,482	267,964	129.8
미 국	136,225	152,555	150,544	144,242	95.8
태 국	106,521	125,147	144,463	149,270	103.3
대 만	61,668	63,533	85,698	83,342	97.3
칠 레	43,935	57,076	83,513	80,050	95.9
캐 나 다	46,582	42,474	50,157	52,544	104.8
노 르 웨 이	35,226	29,146	41,609	61,615	148.1
페 루	23,809	23,910	36,977	37,416	101.2
인도네시아	29,008	33,630	35,645	55,280	155.1
인 디 아	24,035	19,981	27,350	21,497	78.6
필 리 핀	28,097	21,800	26,788	21,729	81.1
영 국	25,543	30,182	23,594	21,543	91.3
기 타	190,244	233,791	250,946	292,145	116.4

## ○ 어종별

(단위 : 천\$, %)

구 분	'04	'05	'06	'06	'06/'05
<b>합 계</b>	<b>2,261,356</b>	<b>2,383,574</b>	<b>2,769,348</b>	<b>3,056,368</b>	<b>110.4</b>
명 태	274,119	277,687	289,204	363,836	125.8
새 우	159,014	167,451	219,122	246,759	112.6
조 기	130,173	142,713	147,873	164,644	111.3
갈 치	101,903	100,306	102,892	109,767	106.7
오징어	48,916	64,144	85,971	86,192	100.3
꽃 게	89,928	67,717	82,359	82,249	99.9
낙 지	63,278	67,029	81,993	125,526	153.1
어 란	76,887	53,749	79,405	70,231	88.4
아 귀	52,504	60,101	72,062	77,425	107.4
새우살	43,412	46,553	60,496	83,003	137.2
참 치	34,349	48,333	60,455	93,633	154.9
돔	37,700	41,666	57,941	58,464	100.9
연 어	27,204	36,000	56,853	71,509	125.8
문 어	40,716	43,004	51,775	6,191	12.0
계	25,696	35,533	49,068	49,033	99.9
캐비아(대용)	30,751	56,714	43,210	34,483	79.8
고등어	47,856	25,839	42,358	56,609	133.6
꽂 치	29,719	28,344	37,938	36,509	96.2
쥐 치	29,206	27,697	34,778	38,113	109.6
대 게	36,289	31,148	33,782	42,888	127.0
기 타	881,736	961,846	1,079,813	1,159,304	107.4

## ○ 총수입대비 수산물 구성비

(단위 : 백만\$, %)

구 분	'04	'05	'06	'07	'06/'05
총 수 입	224,463	261,238	309,383	356,846	115.3
수 산 물	2,261	2,384	2,769	3,056	110.4
구 성 비	(1.0)	(0.9)	(0.9)	(0.9)	-

## 9.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단위 : 천\$, %)

구 분	국가전체(A)	수산물(B)	수산물 비중(B/A)
'60	32,827	5,755	17.5
'70	835,185	82,324	9.9
'80	17,504,862	759,524	4.3
'90	65,015,731	1,513,094	2.3
'95	125,057,988	1,721,748	1.4
'97	136,164,204	1,492,588	1.1
'98	132,313,143	1,369,014	1.0
'99	143,685,459	1,520,534	1.1
'00	172,267,510	1,504,470	0.9
'01	150,439,144	1,273,619	0.8
'02	162,470,528	1,160,435	0.7
'03	194,325,000	1,129,385	0.6
'04	253,844,672	1,278,638	0.5
'05	284,418,743	1,193,117	0.4
'06	325,464,848	1,088,948	0.3
'07	317,489,086	1,225,832	0.3

수산물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까지 15억\$ 내외 수출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2007년도 수산물 수출은 12억 2천만\$로 전체 수출액 3,175억\$ 중 0.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12.5%의 증가를 보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첨단산업 발전의 영향으로 국가전체 수출액 대비 수산물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액도 수산업 여건의 악화와 국제무역질서 재편의 영향을 받아 2001년 이후 11~12억\$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음.

## 10.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단위 : 천\$, %)

	국가전체(A)	수산물(B)	수산물 비중(B/A)
'80	22,291,663	37,284	0.2
'85	31,135,655	83,229	0.3
'90	69,843,678	368,095	0.5
'95	135,119,933	842,808	0.6
'97	144,616,374	1,045,474	0.7
'98	93,281,754	587,481	0.6
'99	119,752,282	1,178,968	1.0
'00	160,481,018	1,410,598	0.9
'01	141,097,821	1,648,372	1.2
'02	152,126,153	1,884,417	1.2
'03	178,826,657	1,961,145	1.1
'04	224,462,687	2,261,356	1.0
'05	261,238,264	2,383,574	0.9
'06	309,382,632	2,769,348	0.9
'07	356,845,733	3,056,368	0.9

수산물 수입은 1999년 12억\$의 수입실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도는 국내수산물 소비증가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입 수산물의 수입단가가 낮아져 전년보다 10.3% 수입이 증가하여 약 31억\$의 수입을 기록하였음.

## 11. 수산물 수입 현황

### □ 연도별 주요 국가별

(단위 : 천\$)

	계	중 국	러시아	일 본	베트남	미 국	기 타
'93	542,489	44,466	143,638	40,397	8,706	138,396	166,886
'94	726,267	111,831	176,275	42,323	15,074	135,489	245,275
'95	842,808	128,874	209,928	46,053	14,660	143,814	299,479
'96	1,080,457	217,354	213,727	58,875	12,906	175,902	678,764
'97	1,045,474	271,543	176,108	71,650	18,306	130,163	667,770
'98	587,481	197,120	106,178	37,637	11,446	83,977	436,358
'99	1,178,968	413,270	205,033	107,206	39,549	129,816	894,874
'00	1,410,598	486,841	125,031	185,109	72,240	145,366	1,014,587
'01	1,648,372	634,449	153,756	139,129	101,486	158,520	1,187,340
'02	1,884,417	719,314	215,638	146,497	121,733	173,774	1,376,956
'03	1,961,145	713,538	299,252	148,699	129,878	152,677	517,101
'04	2,261,356	909,536	276,783	180,620	143,524	136,225	614,668
'05	2,383,574	936,351	277,216	173,140	163,642	152,555	680,670
'06	2,769,348	1,034,192	347,079	224,311	206,482	150,544	806,740
'07	3,056,368	1,070,862	423,392	273,477	267,964	144,242	876,431

우리나라의 2007년도 수산물 수입 대상 국가는 100여개 국가로 이중 연간 1억불이상 수입 대상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미국, 태국 등 6개국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산물 수입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최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입 중 35%를 차지하고 있음

## □ 연도별 제품별 수입

(단위 : 천\$)

	계	활어	신선·냉장	냉동	훈제	건조	염장, 염수장	밀폐용기	기타
'93	542,489	25,616	13,819	407,056	982	2,139	19,659	9,698	63,520
'94	726,267	23,919	36,054	541,693	445	908	22,683	12,672	87,893
'95	842,808	28,575	48,307	592,373	659	3,076	22,652	16,506	130,660
'96	1,080,457	46,425	64,082	734,030	486	9,272	29,393	2,104	194,665
'97	1,045,474	43,231	65,431	717,062	687	10,045	29,631	1,698	177,689
'98	587,481	21,351	25,427	431,353	562	9,944	14,028	1,401	83,415
'99	1,178,968	73,327	70,795	859,932	1,495	20,681	22,308	1,276	129,154
'00	1,410,598	118,592	117,739	928,040	2,333	46,252	21,670	3,073	172,899
'01	1,648,372	132,325	149,743	1,110,844	1,961	50,694	22,607	6,128	174,070
'02	1,884,417	152,662	241,611	1,207,193	2,596	55,345	25,861	5,330	190,819
'03	1,961,145	159,029	270,779	1,239,212	2,183	43,663	26,850	8,768	210,661
'04	2,261,356	201,175	318,305	1,337,986	2,124	73,604	30,669	13,211	284,282
'05	2,383,574	176,449	330,782	1,406,323	2,761	87,579	31,002	13,925	334,753
'06	2,769,348	197,501	374,837	1,660,663	1,848	97,168	35,268	13,158	387,692
'07	3,056,368	224,675	408,278	1,872,942	3,953	92,352	32,737	18,512	402,919

제품별 수산물 수입은 냉동품, 냉장품, 활어, 건조품의 순이며 냉동품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냉동품의 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냉동품은 2006년에 비해 13% 증가

건조, 염장·염수장, 밀폐용기 품목은 전년대비 10% 이상 수입 증가

## □ 연도별 주요 품종별 수입

(2007년 기준 순위별, 단위 : 천\$)

	'01	'02	'03	'04	'05	'06	'07
합 계	1,648,372	1,884,417	1,961,145	2,261,356	2,383,574	2,769,348	3,056,368
명 태	126,822	200,540	295,157	274,119	277,687	289,204	363,836
새 우	98,705	103,541	125,597	159,014	167,451	219,122	246,759
조 기	146,833	137,877	127,760	130,173	142,713	147,873	164,644
갈 치	79,050	100,671	82,879	101,903	100,306	102,892	109,767
오 징 어	39,420	38,657	33,382	48,916	64,144	85,971	86,192
꽃 계	31,879	62,742	58,452	89,928	67,717	82,359	82,249
낙 지	36,782	40,337	48,096	63,278	67,029	81,993	125,526
어 란	105,965	87,541	75,942	76,887	53,749	79,405	70,231
아 귀	62,460	73,848	56,725	52,504	60,101	72,062	77,425
새 우 살	31,039	32,354	33,716	43,412	46,553	60,496	83,003
참 치	32,707	35,284	36,994	37,279	51,913	67,484	93,633
돔	25,978	33,958	30,948	37,700	41,666	57,941	58,464
연 어	19,911	18,382	19,247	27,204	36,000	56,853	71,509
문 어	25,645	32,446	39,864	40,716	43,004	51,775	6,191
계	7,516	42,013	15,915	25,696	35,533	49,068	49,033
기 타	777,660	844,226	880,471	1,052,627	1,128,008	1,264,850	1,367,906

명태, 새우, 조기 등 대중성 어종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는 낙지와 참치 품종이 전년 대비 각각 53%, 55% 증가하였음.

## 12.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02		'03		'04		'05		'06		'07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합 계	1,160	1,884	1,129	1,961	1,279	2,261	1,193	2,384	1,089	2,769	1,226	3,056
일 본	823	146	740	149	835	181	741	173	660	224	573	273
미 국	78	174	80	153	81	136	88	153	96	151	99	144
중 국	48	719	71	714	124	910	108	936	75	1,034	157	1,071
태 국	34	85	38	96	38	107	57	125	62	144	88	149
뉴 질 랜 드	21	118	30	10	45	12	60	17	39	18	68	19
베 트 남	1	122	3	130	5	144	5	164	5	286	9	268

대중성 냉동 수산물 및 횡감용 활어에 대한 국민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품목별로는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냉동고등어가 일본, 대만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였고, 활 바지락 및 염장새우는 중국 현지 생산량 증가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냉동새우는 국내 소비증가로 베트남, 중국, 태국 등지로부터 수입이 증가



### 13. 주요 품종별 중국 수입 현황

(2006년 기준 순위별, 단위 : 천\$)

	'01	'02	'03	'04	'05	'06	'07
합 계	634,449	719,314	713,538	909,536	936,351	1,034,192	1,070,863
조 기	146,530	137,497	126,975	129,637	142,343	147,616	164,512
낙 지	34,117	35,081	40,429	53,277	56,387	68,263	104,522
꽃 계	20,912	42,652	39,808	68,348	53,812	67,570	67,660
새 우	24,836	24,986	27,929	45,708	48,610	67,183	60,107
갈 치	45,794	72,366	53,520	56,012	53,733	49,201	49,907
아 귀	16,821	19,199	16,146	23,769	29,766	46,872	59,933
명 태	14,945	25,851	28,059	49,281	39,942	38,187	38,277
새 우 살	14,316	15,725	16,705	22,172	23,827	30,464	37,232
오 징 어	4,125	1,758	2,675	10,886	19,922	29,650	29,962
복 어	23,853	19,411	14,738	21,006	24,997	29,068	34,482
농 어	17,295	16,649	24,091	34,049	20,632	26,883	30,358

지리적으로 가깝고 어장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은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의 35%를 차지하며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06년도 대비 낙지, 새우살, 돔, 미꾸라지, 주꾸미, 쥐치 등이 수입이 증가

## 14. 주요 품종별 일본 수출 현황

(단위 : 천\$)

	'01	'02	'03	'04	'05	'06	'07
합 계	924,873	823,118	740,447	834,649	741,062	659,523	572,908
참 치	226,053	243,274	192,561	219,373	169,432	153,152	139,533
넙 치	39,209	39,081	47,047	54,609	61,699	50,386	41,419
붕 장 어	73,208	56,992	51,242	51,271	48,178	42,137	31,174
캐비아대용	48,282	52,170	48,350	45,986	55,196	41,496	10,323
계 살	17,987	18,806	29,870	39,592	33,928	29,819	26,039
굴	83,328	39,039	35,046	39,842	31,136	24,901	14,144
툫	30,178	32,449	35,601	29,863	23,217	23,278	23,327
김	14,586	11,946	14,748	17,374	17,517	17,112	15,461
한 천	5,901	6,382	7,194	7,741	14,952	16,630	9,621
전 복	281	14	958	3,358	8,976	16,526	14,973
피 조 개	41,698	28,485	24,865	19,396	18,885	14,352	13,368
미 역	16,432	14,954	16,392	29,333	20,043	14,321	10,952
바 지 락	26,611	22,235	18,415	21,518	15,352	13,661	7,511
삼 치	9,034	9,828	10,099	15,890	18,209	12,412	15,118

일본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약 47%(2007년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국가임.

2000년까지만 해도 매년 10억\$ 이상 수출해 왔으나, 중국, 동남아국가 등의 시장 잠식으로 일본내 시장점유율이 감소 추세 (2000년도 7.21% → 2005년도 4.98%)이며, 2007년도에는 엔화약세의 영향으로 약 5.7억\$ 수출 실적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13% 감소

대 일본 주요 수출품종은 참치 및 넙치가 전체 수산물 수출품목 중 24%, 7%를 차지

## V. 소 관 법 령

1. 원양어업발전법
2. 원양어업발전법시행령
3. 원양어업발전시행규칙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해외수역"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公海)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8. "연안국"이란 해안선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의 설치·운영) 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 제6조 (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정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제4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선령(선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

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 (원양어업허가의 폐지 등) 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휴업의 신고) 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2.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전재(전재)·공동조업·지원·재보급 금지
3.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하선 등 임무수행에 따른 안전확보
4. 항만국 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안전한 승·하선 및 숙식 등 편의제공과 선박 검색 및 통신 허용
5.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전재절차 규정의 준수
6. 관리어종의 어획제한
7.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항만국 검색) ①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양륙)·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제2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연안국에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그 밖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 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양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개발
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 제22조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물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물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명예해양수산물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 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공동신고 등) ①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당해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당해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 (보조 및 용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보칙

- 제29조 (과징금 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협회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1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장 벌칙

- 제3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제34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 (몰수)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626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허가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명의로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임직원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4> 까지 생략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7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에 대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
2.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

##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 위원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산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 심의회는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원양산업

제7조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주소
3. 어선의 선명·톤수·길이·너비 및 깊이
4. 기관의 마력

제8조 (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제9조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3.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화재·폐기·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0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제12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제13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원양어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보관·배송·포장 등 물류 사업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3.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4. 그 밖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물류단지 시설 및 지원시설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2.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4조 (보조 및 용자)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하려면 그 규모·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4.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원양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6. 원양수산물 및 원양산업 홍보
7. 원양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장 보칙

제17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9조제1항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제19조 (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향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의 보고에 관한 사항(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보고의 수리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 제20조 (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 제5장 과태료

- 제21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농림수산물부장은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축산물, 수산물"을 "농·축산물"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중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영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4항제4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59> 까지 생략

별표1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1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원양어업

### 제1절 원양산업의 허가 등

제2조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등기부 등본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하거나 용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 해소로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세 종류까지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

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3.3>

제4조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제5조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수역에서 입어(入漁)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

제6조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2.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7조 (양륙항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물의 수급 등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획물 양륙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8조 (조업해역 등의 구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참치 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의 경우에는 태평양·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3.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수산자원보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9조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0조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3.3>

제11조 (원양어업허가 번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2조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4조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조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 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 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 어획물 처리 계획
5. 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8. 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④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6조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③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17조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8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원양어업 폐지 등 신고)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해당권의 실행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락받은 자 등이 그 어선에 대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에 대하여 중

전의 원양어업에 대한 폐지등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 (행정처분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이하 "원양어업 행정처분"이라 한다)와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 ③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정지처분 개시일부터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업수역의 여건 등 지정된 날까지 지정된 항구에 계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류 개시일과 계류항을 변경하여 계류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⑤ 제4항에 따라 어선을 계류한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와 함께 계류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제21조 (휴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휴업기간의 연장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양어업 개시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제22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어선에 표지를 설치할 것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어선에 설치할 것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를 할 것
-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업종사자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수산기구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실은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증명서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③ 항만국검색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양륙(揚陸) 또는 전재(轉載)를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일지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적인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⑥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2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자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제수산기구 또는 입어국 등에 보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선명, 호출부호, 국적, 총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지리적 위치
  3. 어선 위치의 측정 일시
- ② 어선위치추적장치는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 정보의 입·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안테나는 가려지거나 덮여 있으면 아니 되고, 장치에 대한 전력은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양어선의 선장은 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그 장치를 신속히 수리하거나



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25조 (양륙량 등 보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반일시·장소·위반사항·위반사유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제1항에 따른 양륙량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26조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7조 (시험어업)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1부
2.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4.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시험연구기관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시험어업의 지도·감독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8조 (연구어업·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 제2절 국제협력

제29조 (명예수산관의 자격 등 <개정 2008.3.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2.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3.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4.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5.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2.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3.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③ 명예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명예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3.3>

##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30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사업계획서 1부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보칙

제31조 (수수료)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 : 건당 4천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승인 신청 : 건당 2천원

제3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이의제기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408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II. 개별기준 제3호가목·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어업생산 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해어업·원양어업"을 각각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해어업·원양어업"을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근해어업 또는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0 나목을 삭제한다.

⑦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77조제2항 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을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4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단서, 제3조제1항 전단·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제7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23조제1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4항, 제30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9조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명예해양수산관"을 각각 "명예수산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별지 제21호서식 제목·앞쪽 및 뒤쪽 중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명예수산관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원양어업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으로 한다.

<50> 부터 <63> 까지 생략

별표1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원양어업허가 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

별표3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4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제22조 관련)

서식1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서식2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서

서식3 원양어업허가증

서식4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서식5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서식6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서식7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서

- 서식8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
- 서식9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
- 서식10 경 고 장
- 서식11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
- 서식12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
- 서식13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 서식14 원양어업 휴업신고서
- 서식15 원양어업 휴업연장신고서
- 서식16 원양어업 개시신고서
- 서식17 항만국검색관 신분증명서(제23조제4항 관련)
- 서식18 원양어업 허가대장
- 서식19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
- 서식20 시험어업 신청서
- 서식21 명예해양수산물관증(제29조제4항 관련)
- 서식22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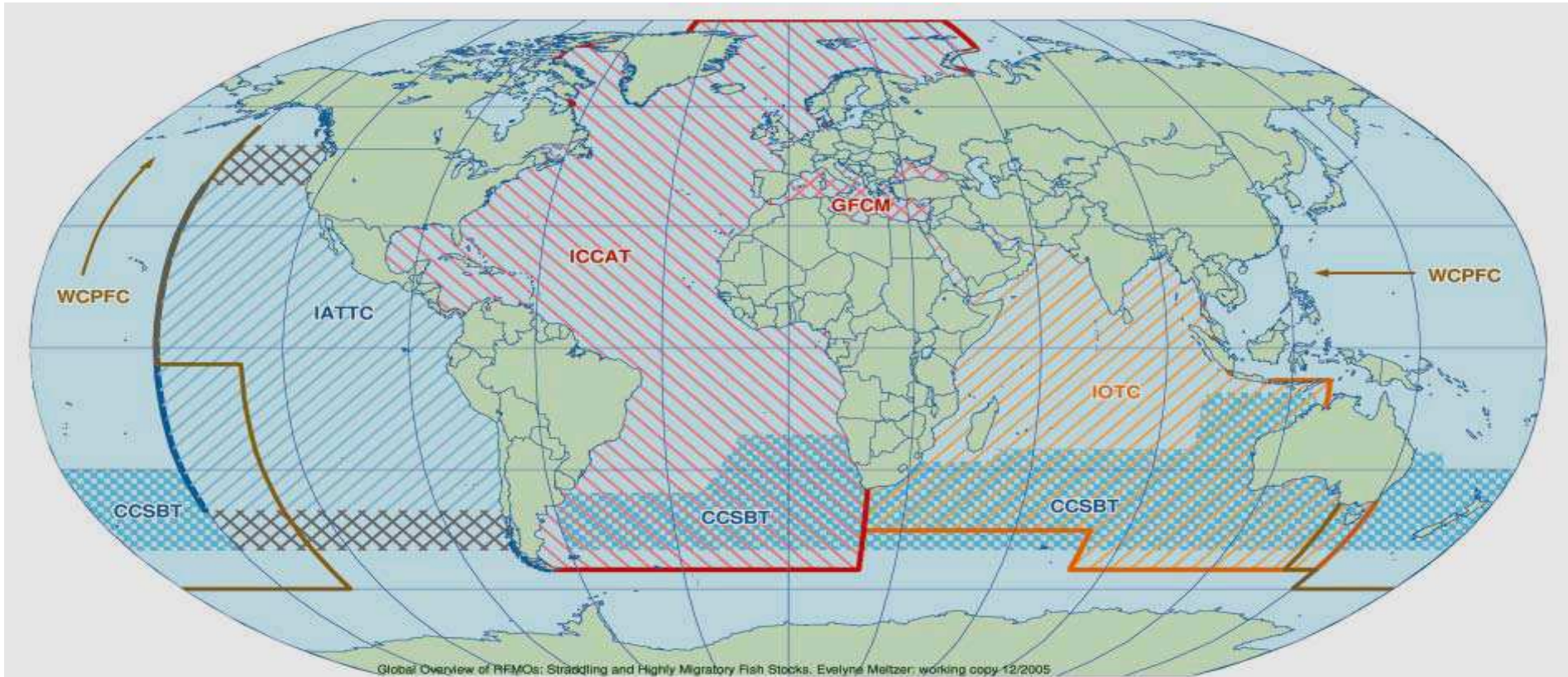
## VI. 수역도

1. 지역기구도(1)
2. 지역기구도(2)
3. 원양어업어장도
4. 한중일 어업협정수역도





# Maps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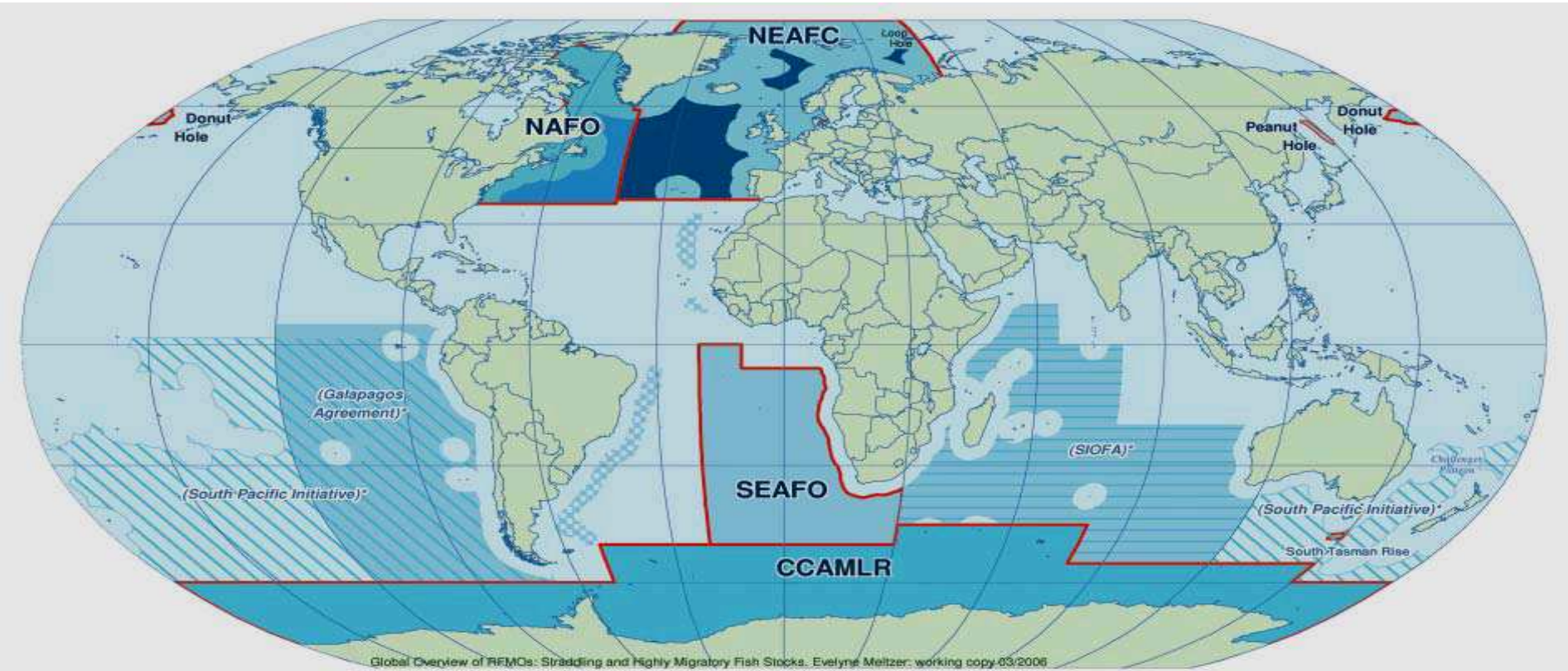
Global Overview of RFMOs: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Evelyn Meltzer; working copy 12/2005  
 For illustration purposes only.  
 Map Projection : Robinson

## Global Overview of RFMOs: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Tuna and Tuna-Like)

-  IATTC
-  Antigua Convention (not yet in force)
-  GFCM
-  CCSBT
-  ICCAT
-  IOTC
-  WCPFC

WCPFC Note : Northern boundary and most of Western boundary for RFMO are not defined, and Area is not intended to include waters in South-East Asia which are not part of the Pacific Ocean; nor is it intended to include waters of the South China Sea.

# Maps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 Global Overview of RFMOs: Straddling Fish Stocks

— RFMO Boundary

(\*) RFMO area under negotiation, not yet adopted or not yet in force.

SEAFO

CCAMLR

NEAFC Convention Area

NEAFC Regulatory Area

NAFO Convention Area

NAFO Regulatory Area

Donut Hole Arrangement

(SIOFA)\* (Not yet adop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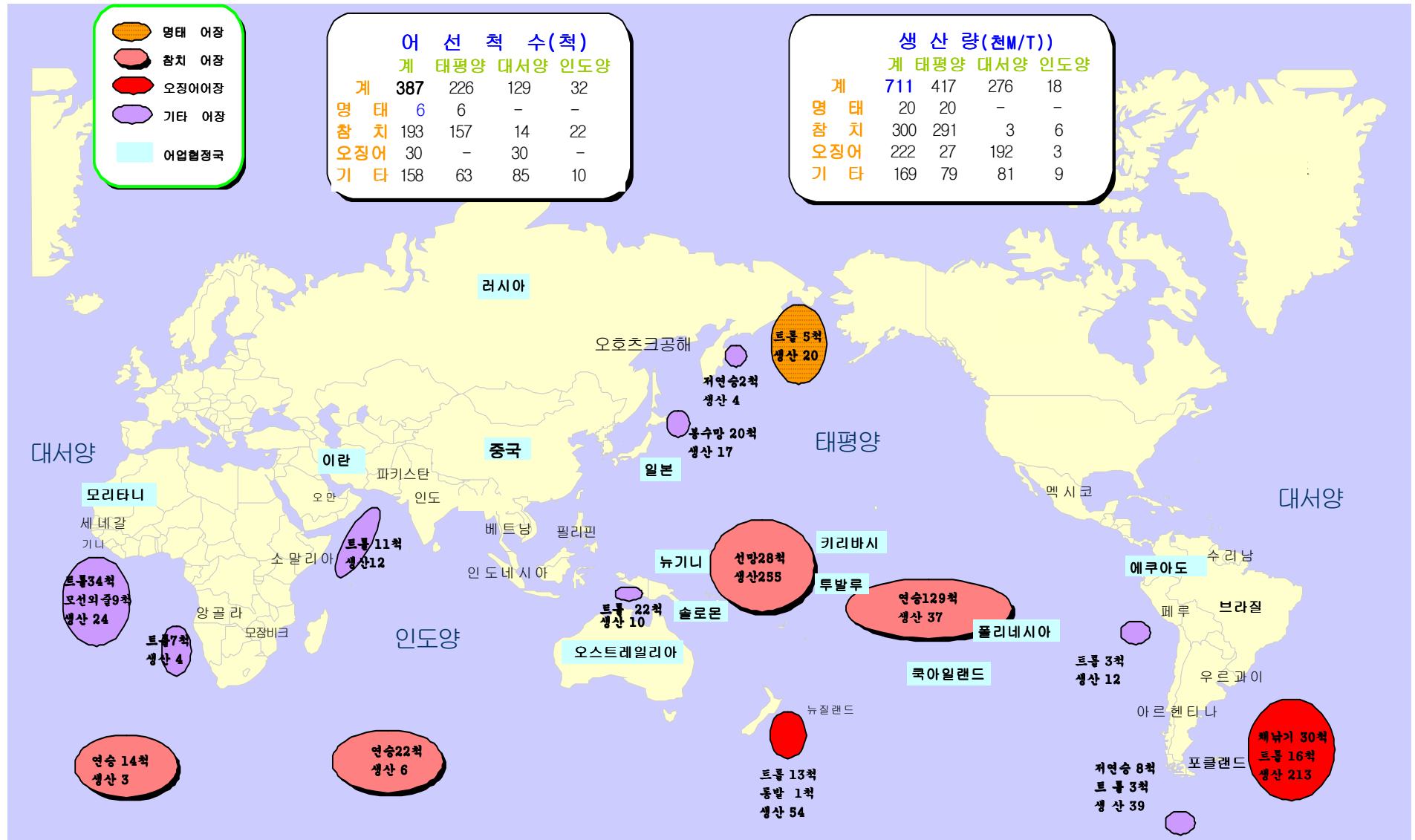
(Galapagos Agreement)\* (Not yet in force)

(South Pacific Initiative)\* (Under negotiation - preliminary bound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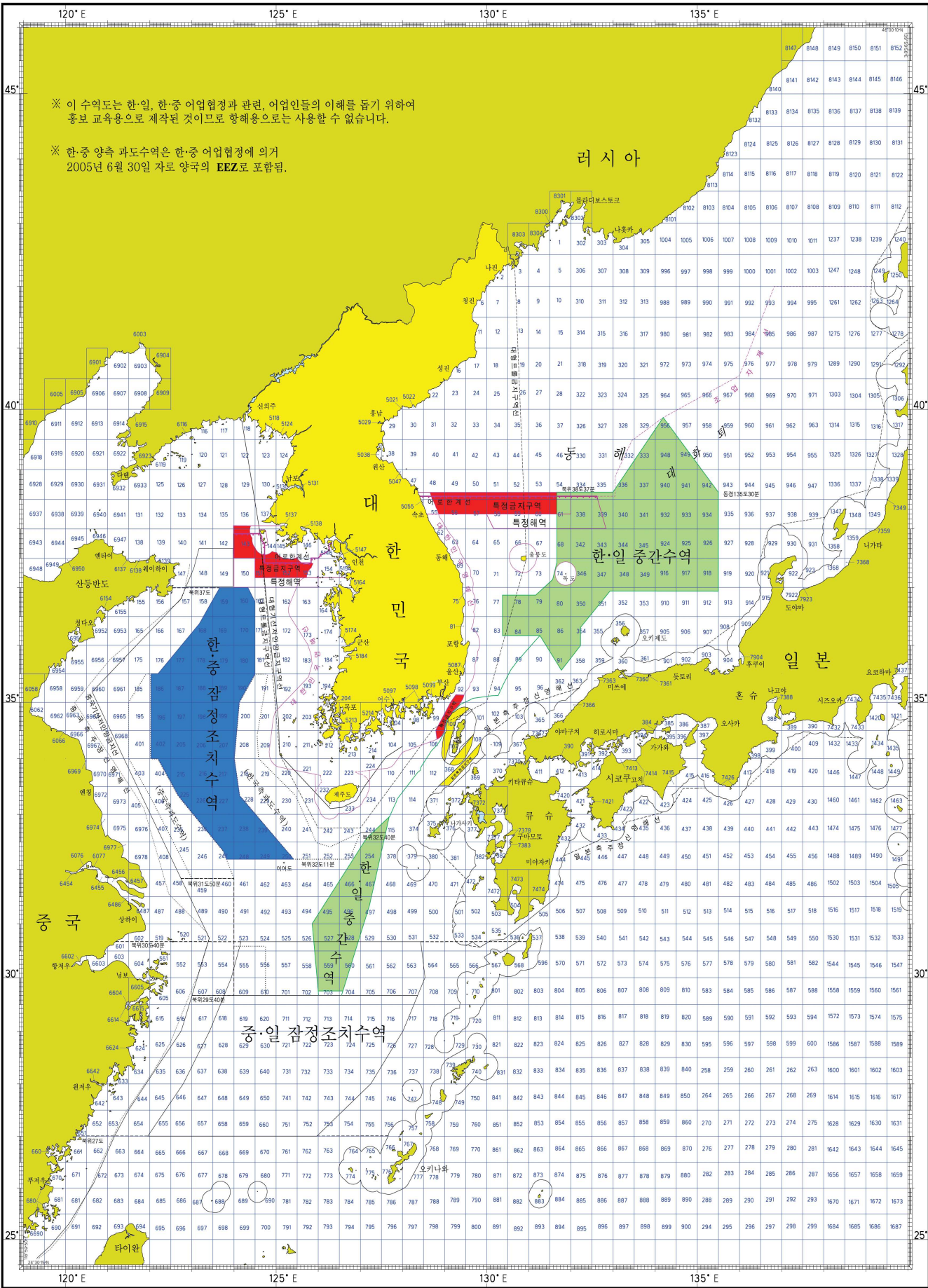
Other Unregulated High Seas Areas where Straddling Fish Stocks occur

# 遠洋漁業漁場圖

2007.12.31 현재



# 한·일, 한·중 어업협정수역도



## 국제수산물실 직원현황

직 위	성 명	휴대폰	사무실 (500~)	직 위	성 명	휴대폰	사무실 (500~)
수산물정책 실장	배종하	010-3156-7322	1509	원양산업 과장	조강현	011-9938-2951	2451
국제수산물관	하영효	011-9472-7283	1524	관리담당	박희수	010-5670-4922	2452
부속실	김춘미	019-281-1678	1524		김영배	016-9292-0592	2453
국제기구 과장	정영훈	011-9797-7352	2422		정윤정	010-3123-2083	2454
기획담당	권오덕	016-295-0432	2423	개발담당	박성우	019-503-3851	2455
	김성희	011-271-7843	2424		양호섭	010-9969-6955	2456
	김기원	011-895-0714	2425		생산담당	임태훈	017-558-6343
일반기구	하지은	019-9150-9546	2427	장옥진		010-9012-6647	2458
	정효정	019-686-0410	2428	수입관리		배은정	018-357-0778
일반기구	안치국	016-755-1701	2429		윤기섭	010-3115-4812	2460
	박정석	016-560-3985	2430		수출진흥	박형구	016-862-6898
지역기구 (1)	이연숙	016-241-9336	2431	어업교섭 과장		장철호	010-5065-1923
	안종관	010-9769-3945	2432		기획담당	김옥식	017-332-3370
지역기구 (2)	김귀수	011-9425-9303	2433	김용득		010-7193-6309	2463
	수산물통상 과장	최병국	010-5566-7429	2435		협력1담당	최경삼
FTA(1)	조일환	010-2047-0594	2436	박천일	016-434-1702		2466
	신주영	010-5778-2887	2437	이정	이정	011-9138-2579	2467
	김은경	011-9894-2022	2438		협력2담당	이상목	019-639-7788
FTA(1)	이규선	016-743-5590	2439	손외학		011-9515-0041	2469
	이창희	016-9669-5011	2440	교섭관		정동근	010-7141-3597
WTO(1)	권현욱	010-7795-6103	2441				
	김정희	010-8458-0957	2442				
WTO(2)	임선정	016-691-7315	2443				
국내대책	최창석	016-399-7947	2445				
	손경문	019-697-0893	2446				

## 국제수산물실 업무편람

---

인 쇄 일 2008년 5월  
발 행 일 2008년 5월  
발 행 인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편 집 인 농림수산물식품부 국제기구과장  
발 행 처 농림수산물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중앙동 1번지  
전 화 (02)500-2424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인 쇄 처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

비매품